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731-6111

# 서울시보

선 람	기관의장

제2915호 2009. 6. 25.(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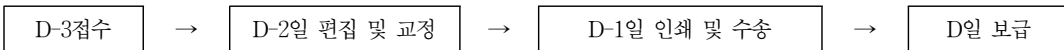
제366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  
제3668호 서울특별시통계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 ..... 7

-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1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	--	--	--	--	--	--	--	--	--

제3669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	13
제3670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5
제367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4
제3672호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 폐지규칙 .....	24

## [입법예고]

제2009-1107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5
제2009-1117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	26
제2009-1121호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27
제2009-1136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7
제2009-1155호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8

## ◆ 고 시

제2009-246호 도시계획사업(하천)실시계획변경인가 .....	29
제2009-247호 하천예정지 지정의 고시 .....	29
제2009-248호 하천예정지 지정의 고시 .....	39
제2009-249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수수료 추가 .....	43
제2009-250호 양재동(102, 212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	43
제2009-251호 서울 장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52
제2009-252호 전농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108
제2009-253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 .....	110
제2009-254호 도시관리계획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 형도면 .....	110
제2009-2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	151
제2009-256호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 .....	157
제2009-257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 .....	165
제2009-259호 도시관리계획 『성신여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165

## ◆ 공 고

제2009-1109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	198
제2009-1115호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198
제2009-1122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	198
제2009-1128호 재해영향평가대행자 업무 폐지 .....	199
제2009-1129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업자 청문통지 공시송달 .....	199
제2009-113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재공람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202
제2009-1140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	202
제2009-1144호 대부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	204
제2009-1147호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	206

제2009-1149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	206
제2009-1152호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사업 공모	207
◆ 구 고 시	
제2009-33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중구) .....	209
제2009-40호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성동구) .....	211
제2009-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광진구) .....	211
제2009-3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광진구) .....	215
제2009-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노원구) .....	219
제2009-36호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은평구) .....	228
제2009-55호 흥은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서대문구) .....	233
제2009-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구로구) .....	235
제2009-5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와룡소공원) 실시계획인가(구로구) .....	236
제2009-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갈매소공원) 실시계획인가(구로구) .....	239
제2009-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갯절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구) .....	241
제2009-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동작구) .....	247
◆ 구 공 고	
제2009-6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광진구) .....	250
제2009-540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제열람(서초구) .....	250
◆ 사업소고시	
제2009-96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255
◆ 사업소공고	
제2009-34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광진소방소) .....	256
제2009-26호 소방시설업 등록(강남소방서) .....	256
제2009-16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송파소방서) .....	256
제2009-18호 소방시설업 등록(송파소방서) .....	257
제2009-19호 소방시설업 등록(송파소방서) .....	257
◆ 정 정 .....	258

**자 치 법 규**

**[규 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9년 6월 25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366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서울 디자인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14. 디자인 창작스튜디오 설치운영

제12조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위원회관리 업무 총괄
- 14.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0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관광진흥담당관·문화산업담당관·기업지원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생활경제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을 “산업지원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문화산업담당관·생활경제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관광진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광진흥담당관·문화산업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을 “일자리정책담당관·문화산업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관광진흥담당관”으로, “기업지원담당관”을 “산업

지원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지원”을 “산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산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분석 및 경제정보에 관한 사항
2.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 등 국내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5.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6. 지역혁신협의회운영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자치단체 업무의 총괄
7.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9.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11. 지방공단 및 지역산업육성계획의 수립·조정
12. 공장입지, 공장설치, 공업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13. 공장총량 수요판단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4. 지식경제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15.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17. 중소기업 애로상담 모니터링 관리에 관한 사항
1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19.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20. 일반공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1. 품질분임조경진대회,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22.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

<p>후관리에 관한 사항</p> <p>23. 전기사업·전기공사업 및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p> <p>24.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p> <p>⑥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용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조정</li> <li>2. 신산업 인력양성 시책에 관한 사항</li> <li>3. 직업안정시책 및 취업알선계획의 수립·조정</li> <li>4.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근로자합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6. 직업훈련계획의 수립·조정</li> <li>7. 직업훈련시설의 지도·감독</li> <li>8.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항</li> <li>9.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명장추천에 관한 사항</li> <li>10. 노동조합설립·변경 및 해산신고 수리</li> <li>11. 노동조합규약의 변경 및 보완명령</li> <li>12. 노사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 화합 지원</li> <li>13.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지도·감독</li> <li>14. 실업대책의 수립 및 추진총괄</li> <li>15. 실업대책추진에 따른 조정 및 평가</li> <li>16.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li> <li>17.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li> <li>18. 창업교육 및 대학생창업동아리 지원 등</li> <li>19. 창업보육센터 운영</li> <li>20. 기업 애로해소 총괄·조정</li> <li>21. 기업민원 접수 및 처리</li> </ol> <p>⑦ 문화산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li> <li>2. 디지털콘텐츠펀드 조성 및 운용</li> <li>3.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li> <li>4. 영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사무</li> <li>5.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원</li> <li>6. 관광 축제의 발굴 및 기획</li> <li>7. 한류 콘텐츠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li> </ol>	<p>8. 서울 패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p> <p>⑧ 생활경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li> <li>2.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지원·육성</li> <li>3.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물가보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공공요금 총괄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li> <li>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지도, 시장·대형점 등 유통업에 관한 사항</li> <li>6.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7. 상업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관리</li> <li>8. 제조담배에 관한 사항</li> <li>9. 상거래질서 확립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li> <li>10. 상품권업무에 관한 사항</li> <li>11. 다단계판매업 및 통신판매·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등에 관한 사항</li> <li>12.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사항</li> <li>13.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4.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li> <li>15.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관한 사항</li> <li>17.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li> <li>1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지도단속에 관한 사항</li> <li>19.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li> <li>20.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21. 농수축산물도매시장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ol>
---	---

- 22. 정부양곡관리 및 양곡유통에 관한 사항
- 23.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24. 사료품질·우유수급·축산물 수출입 등 축정관리에 관한 사항
- 25. 가축방역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 26. 환경농업육성발전 등 농정관리에 관한 사항
- 27. 농산물 생산·안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28. 농업기술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및 농업인력·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 29. 농수산자원의 조사관리 및 동원에 관한 사항
- 30.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 ⑨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제협력·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 2. 국제통상환경의 조사·분석
  - 3.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사항
  - 4.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 5.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6. 외국도시와의 협정체결 및 교류사업 시행
  - 7. 국제기구 가입, 국제회의 참가·유치·행사 개최
  - 8. 주한 외국인 및 외국 공관의 지원
  - 9. 시민·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 10. 국제 의전에 관한 사항
  - 11. 외국인 상훈에 관한 사항
- ⑩ 관광진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광객 1,200만명 유치대책 총괄·조정
  - 2.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3.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지도 및 지원
  - 4. 2010년 “서울방문의 해” 유치 관련 사항

- 5. 서울관광대상에 관한사항
- 6.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 7. 관광특구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8.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추진
- 9. 관광기념품 산업 육성 지원
- 10. 중저가 관광숙박대책 등 관광환경 개선
- 11.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안내체계 등 개선 및 관리
- 12.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관한 사항
- 13. 일반여행업 등록 및 관광불편신고 처리
- 14. 관광사업체 관리 및 관광관련 단체 지도·지원
- 15. 국내·외 관광마케팅 총괄기획·조정
- 16.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17. 관광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 18.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 19.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관리
- 20. 서울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관리
- 21. 문화유산해설사 등 관광자원봉사자 육성 지원
- 22. 서울관광사진전 개최 및 우수사진작품 개발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상수도연구원에 총무과·수질연구부 및 기술개발부를 두며,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수질연구부장 및 기술개발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5조제1항 중 “보도부·아나운서부”를 “보도부·영어뉴스부·아나운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어뉴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영어뉴스 취재·편집, 제작 및 특집 뉴스프로그램 제작
  - 2. 해외 방송사와의 업무협조

- 3. 국내 주재 재외공관 업무협조
  - 4. 영어뉴스부 제작예산 및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 별표 3 제4호 중 심사평가관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전문적인 영어FM방송 제공을 위해 교통방송 보도제작국에 영어뉴스부를 신설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상수도연구원의 심사평가관 관련 내용을 삭제함
  - 나. 일부 실·국간의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시민고객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직무발명’ 업무 이관 : 조직담당관 ⇒ 창의담당관
    - ‘정책실명제’ 및 ‘위원회관리’ 업무 지정 : 조직담당관
    - ‘산업디자인’ 관련 업무 이관 : 경쟁력강화본부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 다. 경쟁력강화본부 내 서울형 신산업 육성 등 산업경제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간 직제순을 변경하고, 업무소관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지원담당관의 부서 명칭을 산업지원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9년 6월 25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3668호**

**서울특별시통계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통계사무처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통계작성 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있어서는 “각 과 및 담당관”, 직속기관 및 과(부) 설치사업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부)”, 과(부)직제가 없는 사업소와 소방서는 해당 기관을 말한다.
3. “소관통계”란 제2호의 “통계 작성부서”에서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통계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통계사무의 원칙) 통계사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1. 통계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2. 통계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  
 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 2 장 통계직위 및 임무

제5조(통계책임관 등의 지정) ①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계책임관과 그 임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통계관 및 통계작성 부서별 분임통계책임관(이하 “분임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시의 통계책임관 및 통계관은 각각 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담당관이 되고 분임책임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 본청 : 각 과장(담당관)
2. 직속기관 및 과(부)설치 사업소 : 주무과(부)장
3. 소방서 : 소방행정과장
4. 과(부) 직제 없는 사업소 : 사업소장

③ 통계책임관 등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통계책임관 등의 임무)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시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 통계관은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통계의 작성·집계·보관·관리함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통계책임관의 사무를 보조한다.

③ 분임책임관은 소관통계의 작성·집계·보관·관리 및 소속부서(기관)의 통계에 대한 자체심사를 담당한다.

제 3 장 통계의 작성·공표·보급 등  
 제7조(통계의 작성)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시 정책의 수립·평가 등과 관련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 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표준분류)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접수하면 이에 대하여 협



의여부를 결정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의 사전협의를 마친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변경·중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조사·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이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통보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변경이나 중지 여부를 결정한 후, 통계작성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의 공표 등)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대외기관에 제출(통보)할 때에는 매 작성 시마다 분임책임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통계책임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분임책임관과 통계책임관이 제1항에 따라 각각 “자체심사” 및 “사전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와 분석 등의 적정성 여부
2. 작성된 통계가 제7조제3항에서 정한 통계책임관의 협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통계결과가 이미 공표된 다른 유사통계의 결과와 상충되는지 여부
4. 공표하려는 통계가 시정 불신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통계의 품질과 관련하여 통계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해당 통계의 수정·보완

및 공표나 제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통계의 보급 및 관리)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신속·정확한 통계정보의 제공과 원활한 통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통계를 시 통계시스템 등 통계책임관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조사·작성된 통계표 등의 통계문서에는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작성자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계책임관과 사전협의를 마치지 않은 통계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분임책임관 및 통계책임관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계를 임의로 대외에 공표하거나 대외기관 등에 제출 할 수 없다.

제11조(통계관리책임자) ① 분임책임관은 소관통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통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통계의 작성·관리·보급 등과 관련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분임책임관은 제1항에서 정한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을 때는 즉시 그 내용을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의 경우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통계법」 등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시정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신뢰성 등의 통계품질 확보 및 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정통계의 ‘정의’를 명확히 함
  - 시 정책의 수립, 평가, 사회현상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수량적 정보
- 나. 통계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위, 임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
- 다. 신뢰성(품질)제고를 위해 시 정책의 수립·평가 등과 관련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책임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 함
- 라. 통계의 보급과 이용활성화 및 원활한 통계관리를 위해 작성된 통계를 통계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함
- 마. 조사·작성된 통계표 등에 작성자를 표시하도록 하여 시정통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및 책임성을 부여함

[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통 계 작 성 부 서 명**

처리기간
14일

수신자 : 통계책임관  
 제 목 :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합니다.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통계 <input type="checkbox"/> 지정통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③ 통계작성 목적 (근거 법률)				
④ 통계작성 사항				
⑤ 통계작성 대상	대 상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사업체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대상( )		
	모 집 단			
	대상 범위 및 규모			
	대상 지역			
⑥ 통계작성 기준 시점(기간)		⑦ 조사(보고) 기 간		⑧ 작성 주기
⑨ 통계작성 방법	작 성 형 태	<input type="checkbox"/> 조 사 <input type="checkbox"/> 보고(업무) <input type="checkbox"/> 가 공		
	조사(보고)대상 선정	<input type="checkbox"/> 전수 <input type="checkbox"/> 확률표본 <input type="checkbox"/> 유의표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자 료 수 집 방 법	<input type="checkbox"/> 면접조사 <input type="checkbox"/> 전화조사 <input type="checkbox"/> 우편조사(팩스) <input type="checkbox"/> 배포(유치)조사 <input type="checkbox"/> 집합조사 <input type="checkbox"/> 조직(행정망)이용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방법( )		
⑩ 통계작성 체계		⑪ 통계작성 분류체계		
⑫ 통계결과 공표				
첨부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통계작성부서의 장          성명          인

## &lt;작성요령&gt;

- ① 통계의 명칭 : 새롭게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③ 통계작성 목적(근거 법률) : 협의요청인 경우 통계작성의 근거 법률을 함께 적습니다.
  - ④ 통계작성 사항 : 조사 또는 보고 항목 등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 수를 적습니다.  
(예: 사업체 일반사항 ○개 항목, 고용 관련 ○개 항목, 급여 관련 ○개 항목 등)
  - ⑤ 통계작성 대상
    - 가. 모집 단: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 모집단명을 적습니다.(예: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07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 등)
    - 나. 대상 범위 및 규모
      -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범위 (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F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25개 자치구의 근로자 가구 등)를 적고, 규모는 조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 조사 대상이 되는 개인·가구·사업체 등의 수를 적으며, 보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 최초로 보고 서식을 작성하는 기관이나 부서수를 적습니다.
    - 다. 대상 지역 : 조사 또는 보고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전역”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명(예 “종로구” 등)을 적습니다.
  - ⑩ 통계작성 체계: 조사표나 보고서식 등이 작성되어 통계작성부서까지 수집되는 계통입니다. (예 : 동 주민센터 → 자치구(과/팀) →시(과/팀))
  - ⑪ 통계의 작성에 사용하는 분류로 「통계법」 제22조의 표준분류를 적습니다.
  - ⑫ 통계작성결과의 공표예정일과 공표방법(언론보도자료·통계간행물·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 ※ 첨부서류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에는 조사대상이나 항목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 구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9년 6월 25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3669호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허가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사용료 기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장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광장 사용 시, 시민의 안전과 시설 보호 등을 위한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료 기준을 정함으로써 서울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질서 및 청결 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 서울광장 사용자 준수사항을 정함  
나. 서울광장 사용료 기준을 정함  
- 광장사용료 기준

구 분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기 본 사 용 료	1시간, 1㎡당	10원	
기 ·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별표]

## 광장사용료 기준

구 분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기 본 사 용 료	1시간, 1㎡당	10원	
기 타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야간사용료(18:00 ~ 다음날 06:00)는 기본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 4. 초과사용료는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3할,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5할을 가산한다. ※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9년 6월 25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3670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  
에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관한규칙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명

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지급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 1. 상위계급의 공무원
-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 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을 명문화하여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을 명문화 함

1) 신청기간

- 정기명예퇴직
  - 5급 이상 : 매월 말일까지
  - 6급 이하 : 매월 10일까지
- 수시명예퇴직 : 명예퇴직 희망일 20일 이전까지

2) 명예퇴직 예정일

- 정기명예퇴직
  - 5급 이상 : 다음달 말일
  - 6급 이하 : 해당월 말일
- 수시명예퇴직 : 희망일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재직기간 및 지급액 계산방법 등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됨에 따라 중복하여 규정된 내용을 삭제함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조기퇴직원 등 일부서식을 변경함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제3조제1항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5급 이상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 말일
6급 이하	매월 10일까지	해당월 말일

비고 :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 인 기 재 란	①소 속		③공무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⑤성명	한 글 한 자	⑥주민등록번호				
	⑧전화번호(자택)		⑦주 소	□□□-□□□			
소속 기 관 기 재 란	⑩ 정년일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소속 기 관 기 재 란	⑫ 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⑬ 정 년	(세, 년)			
	⑭ 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년 월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확인	인사담당	(인)	
	⑮정년남은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소속 기 관 기 재 란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확인	인 사 담 당	(인)	연 금 담 당	(인)	감 사 담 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⑰란은 해당기관의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직접 기재함  
(⑭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자가 기재)
7. ⑮란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 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함  
다만, 월 단위이하 남은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8. ⑰란의 확인은 동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 1. 소 속 :
- 2. 직 위 :
- 3. 직(계)급 :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b>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b>					
소 속		공무원 구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직급 또는 상당계급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 소	□□□-□□□		
전화번호(자택)		최초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9년 6월 25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367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동개발”을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로 하고, 제2조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공동개발(특별지정)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공동개발하는 경우에 상한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의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9년 6월 25일

◆ **서울특별시규칙 제3672호**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수행중의 안전사고방지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소방방재청훈령)이 제정·발령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07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중수도 설치시 공제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하수도 사용 원인자부담금 운용과 관련하여 중수도 설치시 설치한 용량만큼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여 경제적 혜택과 함께 중수도 보급을 유도함.
- 나. 종전에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원인자부담금의 개산액을 부과토록 하였으나, 사업 준공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현행 업무처리 방식에 맞게 개정함.
- 다. 종전에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하수도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설치 및 관리토록 하였으나 시장의 업무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

부사업(종합정비사업, 2개구에 걸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설치 또는 개량할 수 있도록 정비함.

라.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이 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11-1(예장동 산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재생계획과(전화 : 02)2115-7913, FAX:02)2115-7929, E-mail: civil0218 @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17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  
**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에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를 포함시키고 선정요건 및 융자범위를 정함
- 시설자금 융자대상에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사업, 증·개축 사업 및 입주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선정요건 및 융자범위를 정함
-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를 신설함

지 원 사 업	용 자 기 간	용 자 비 율	용 자 도 한
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 건설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설비의 75% 이내	100억원 이내
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시설 증·개축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증·개축 사업비의 75% 이내	10억원 이내
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입주지원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시설매입 비 또는 임차보증 금의 75% 이내	8억원 이내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기업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5 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담당관[전화 : 02)3707-9318, FAX : 02)3707-9369, E-mail : lcw1024i@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21호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  
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  
행규칙」 개정에 따른 노사정협의회  
관련 부서명칭 변경(고용창업담당관  
→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따라 서울특  
별시 노사정협의회 간사를 노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  
행령」 상의 구성인원과 조례상 인원  
을 일치(15명 이하 → 30명 이내)시키  
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담당관(전화:  
02)3707-9375, FAX : 02)3707-9387,  
E-mail : kimgigon@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36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일  
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 6.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  
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연생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  
의집길 11-1(예장동 산5-85) 서울시  
청 남산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과 [전화: (02)2115-7550, FAX: (02)2115-7569, E-mail: khs0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공고 제2009-1155호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가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 및보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심의대상에 간행물 외에 홍보물과 영상물을 추가함.

다. 영상물소위원회와 디자인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라. 시정간행물 판매·보급의 총괄 담당부서를 홍보담당관에서 조직담당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홍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전화 : 02)731-6111, E-mail : [jwonsin@seoul.go.kr](mailto:jwonsi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6호  
도시계획사업(하천)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5호(1985.1.14)로 도시 계획시설(하천)결정 및 지적승인,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8-94호(2008.10.30.)로 도시계획시설(하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9호(2006.6.15)로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448호(2006.12.28.), 제2007-402호(2007.11.1.), 제2008-400호(2008.11.13.), 제2009-39 호(2009. 2. 5.)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정릉 천 복개지상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 하천정 비를 위한 「정릉천 복원공사(2단계)」에 대 해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제88조와 같은법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성북구 정릉동 966-1번지 정릉천 복개지상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하천)
- 다. 사업의 명칭 : 정릉천 복원공사(2단계)
- 라.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하천복원 B=17~30m, L=400m
  - 정릉상가 2개동 및 주변 건축물 정비
-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인가고시일로부터 2009.06.30.까지

변 경 : 인가고시일로부터 2009.12.31.까지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자.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치수방재과 ☎920-3415, 건설관리과☎920-3400)에 관련도서 및 서류를 비치하고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7호  
하천예정지 지정의 고시**

-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87번지의외 52필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20번지의외 2필지에 대하여 하천법 제 11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나.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02-2115-7896), 강동구 치수방재과(☎ 02-480-1327)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하천명칭	하천예정지의 구간			면적(m <sup>2</sup> )	지정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고덕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87번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60번지	1.310	5,394	수해예방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20번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25-4번지	0.075	330	

- 열람서류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1부.  
2. 하천예정지의 지형도면 1부.

[별지 제3호서식]

고시 제 2009-247 호

**하천예정지의 지정 고시**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하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강동구 치수방재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시장 (인) [인]

하천명칭	하천예정지의 구간			면적(㎡)	지정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고덕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87번지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60번지선	1.310	5,394	수해예방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20번지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25-4번지선	0.075	330	수해예방
첨부서류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하천예정지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조서

소재지: 서울시 강동구

토 지 소 개 지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번호	동	지 번				주 소	성 명
1	고덕	360	잡	13,707	20	서울시 강동구	강동구
2	고덕	358	잡	990	4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시범아파트 16동52호	신복현
3	고덕	358-1	도	3,596	12	서울시 강동구	강동구
4	고덕	357-1	전	1,450	9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160 현대아파트 21동604호	장필희
5	고덕	85-2	잡	16	1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27-5	노성진
6	고덕	87-2	전	1,516	93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84 현대아파트 310-1305	이진형외 3인
7	고덕	89-8	구	214	42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1-5 한양아파트 42동1105호	박만송
8	고덕	88-1	답	2,644	164	서울시 중구 신당동 52-224	강한석
9	고덕	90-2	답	2,099	131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506-2	조희숙
10	고덕	91-2	답	1,322	1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67-1	이병수
11	고덕	93-1	답	1,591	202	서울시 마포구 창천동 437 삼성아파트104-1602	홍기창
12	고덕	93-2	잡	5,136	11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시범아파트 16동52호	신복현
13	고덕	94-1	잡	1,231	20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535	어경순
14	고덕	95-1	잡	143	6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535	어경순
15	고덕	99-1	도	3,051	18	서울특별시	서울시
16	고덕	41-12	잡	72	12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535	어경순
17	고덕	40-11	잡	59	8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535	어경순
18	고덕	39-10	잡	79	25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535	어경순
19	고덕	39-9	전	30	27	서울시 영등포구 5가 24-510	이종후
20	고덕	38-9	전	641	5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8-1205	황선영외 1인
21	고덕	37-7	전	65	6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8-1205	황선영외 1인
22	고덕	38-1	도	7	7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97-70	한원옥
23	고덕	107	답	783	280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59-5	김동석
24	고덕	106	답	1,006	306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194-55	박정근
25	고덕	105	답	744	3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63-9	박영숙
26	고덕	105-2	답	728	292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80성원아파트101-101	이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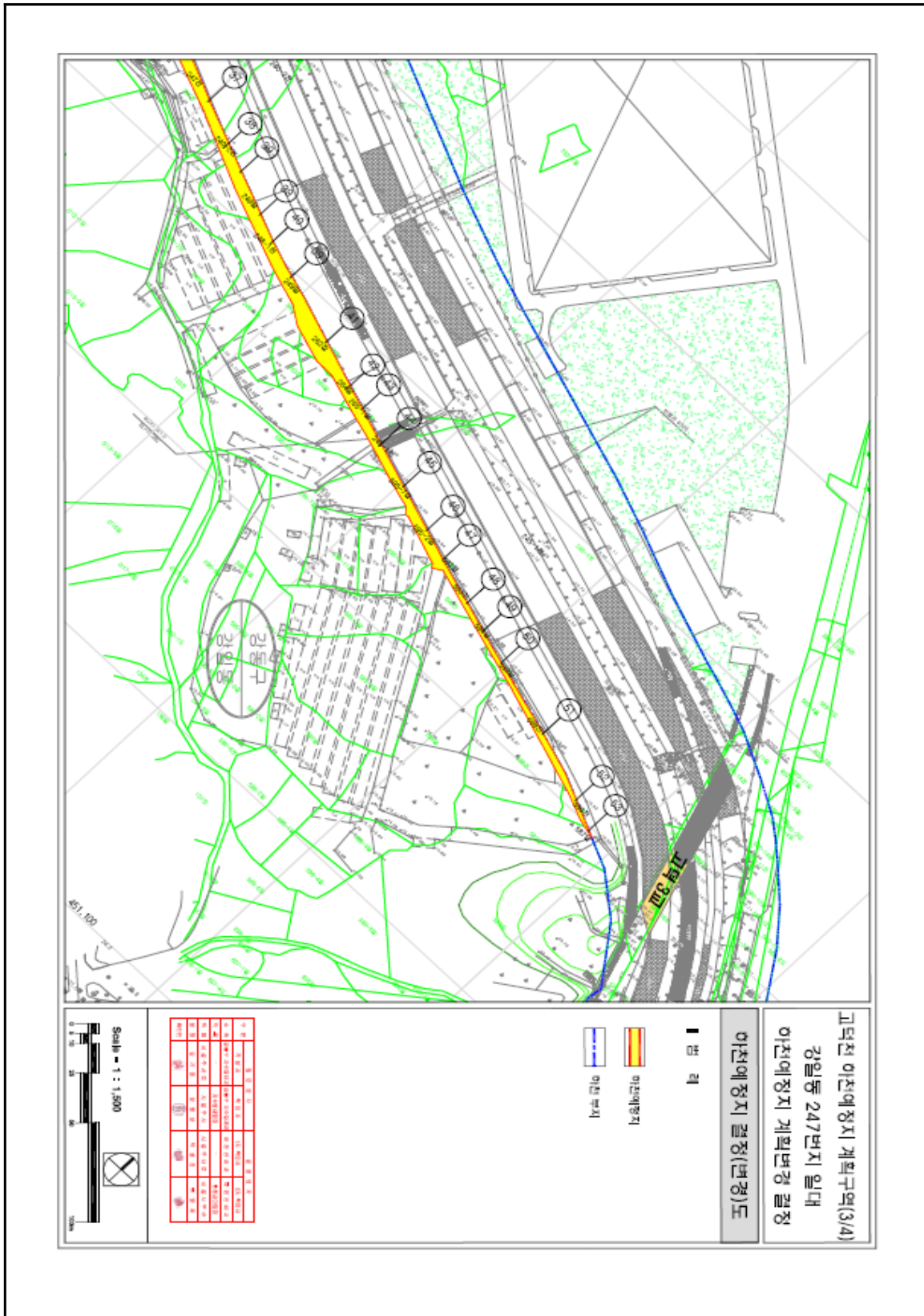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번호	동	지 번				주 소	성 명
27	고덕	104-1	답	1,879	40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53-57	한희승
28	고덕	127	답	377	27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1-16	염완길
29	고덕	129	답	1,399	386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17-15	박복연
30	고덕	산11-1	임	11,207	80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98-6	강항규
31	고덕	130	답	477	17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159-5	김동석
32	고덕	123-3	답	479	114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1-16	염완길
33	고덕	123-4	답	791	80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1-16	염완길
34	고덕	122-2	전	72	72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88-101	이한경
35	고덕	123-5	답	1,037	143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1-16	염완길
36	강일	240-3	도	453	26	서울시 강동구	강동구
37	강일	247	전	1,136	303	서울시 동대문구 전능동 127-47	맹주옥외 1인
38	강일	240-2	천	2,632	75	서울시 강동구	강동구
39	강일	249	답	1,553	417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4가 985-77	안복남
40	강일	248-1	천	1,696	89	서울특별시	서울시
41	강일	262	잡	330	29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2-3 4층	박지현
42	강일	264	답	359	39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75-1 마이다스오피스텔 403호	함동훈
43	강일	265-1	답	47	47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75-1 마이다스오피스텔 403호	함동훈
44	강일	245-1	천	41,396	149	서울특별시	서울시
45	강일	595-7	잡	1,853	73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3가 1-223	서재금외 3인
46	강일	595-2	답	1,322	153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12-602	전성욱
47	강일	592	전	3	3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257 고덕주공아파트 913-1202	김중희
48	강일	593	전	548	95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257 고덕주공아파트 913-1202	김중희
49	강일	594	답	1,025	32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198-2	심규설
50	강일	589	답	89	47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2 주공아파트 271-403	이미숙
51	강일	588	전	684	154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2 주공아파트 271-403	이미숙
52	강일	586	전	148	53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250	홍종화
53	강일	587	답	1,160	3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78 대림빌라 7-202	박정남
54	강일	425-4	구	72	4	서울시 강동구	강동구
55	상일	425	답	2,092	319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84 현대아파트 307-402	강성은
56	상일	420	답	3,993	7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287-5	김억만

○ 하천예정지 지형도면 (S=1/1,5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8호**  
**하천예정지 지정의 고시**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57-1번지 외 9필지에 대하여 하천법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나.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02-2115-7896), 강남구 치수방재과(☎ 02-2104-2160)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하천명칭	하천예정지의 구간			면적(m <sup>2</sup> )	지정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세곡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57-1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48-2번지	0.70	1,530.31	수해예방

- 열람서류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1부.  
 2. 하천예정지의 지형도면 1부.

[별지 제3호서식]

고시 제2009-248호

**하천예정지의 지정 고시**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하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강남구 치수방재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시장      (인) [인]

하천명칭	하천예정지의 구간			면적(m <sup>2</sup> )	지정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세곡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57-1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48-2번지	0.70	1,530.31	수해예방
첨부서류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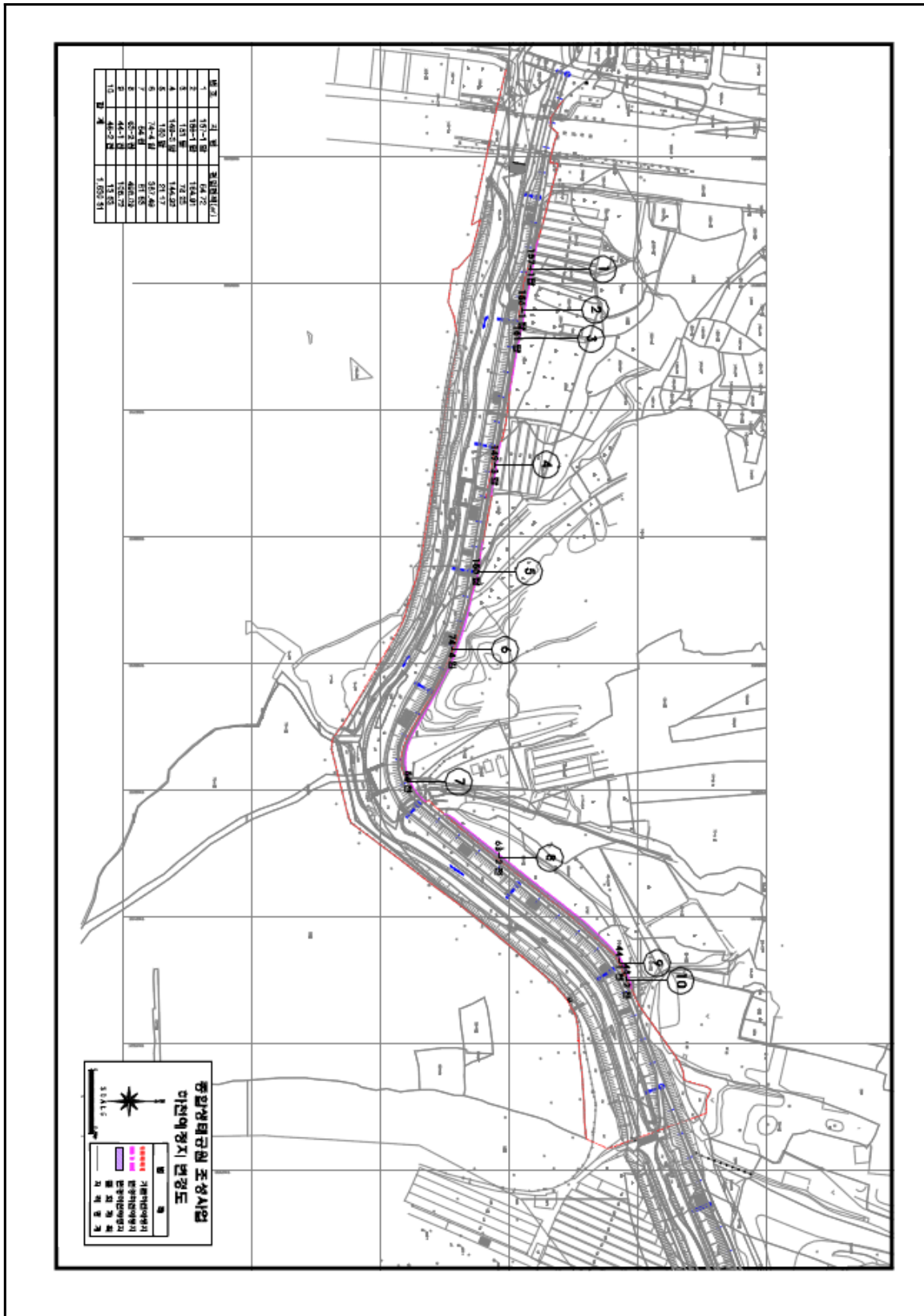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 하천예정지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조서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번호	동	지번				주소	성명
1	세곡	157-1	답	2,958	64.72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170-29	임창섭외 1인
2	세곡	156-1	답	1,675	164.9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9 대교아파트 3동 911호	권봉선외 2인
3	세곡	151	답	1,278	78.23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434-27	김종현
4	세곡	149-3	답	3,149	144.92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73-14 청솔아파트 701	이계용
5	세곡	150	답	780	21.17	서울시 역삼동 854-15	이귀원외 1인
6	세곡	74-4	임	60,312	387.49	서울시 역삼동 663-30	이건홍외 17인
7	세곡	54	천	43,101	51.5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8	세곡	63-2	전	3,120	498.09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357	현준갑
9	세곡	44-1	전	834	105.72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47-486	이은재
10	세곡	48-2	전	141	13.53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357	현준갑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49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수수료 추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추가시험 항목 대한 품질시험 확인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가. 추가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 : 별첨  
 나. 납부방법 : 서울특별시 발행 수입증지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02-3462-6716)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

연번	시험구분	시험항목	KS	단위	시험비용 (원)	처리기한 (일)	비 고
1	보차도 포장용 판석	치 수	F 2530-1	조	12,350	4	추가(신규)
2		휨 강 도	F 2530-1	"	43,250	5	추가(신규)
3		흡 수 율	F 2530-1	"	40,950	7	추가(신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0호**  
**양재동(102, 212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양재동 102, 212외 3필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1. 사업명 : ① 양재동 102번지 임대아파트 건설공사  
 ② 양재동 212번지 임대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성 명 : SH공사 사장 유민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2번지, 212번지 외 3필지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4. 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 고
		양재동 102	양재동 212	
① 대 지 위 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2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2외 3필지	
② 대 지 면 적(m <sup>2</sup> )		14,105.50	21,774.40	
③ 건 축 면 적(m <sup>2</sup> )		1,383.26	2,830.48	
④ 건 축 연면적(m <sup>2</sup> )		33,846.16	56,331.97	
⑤ 건 폐 율(%)		11.72	13.00	
⑥ 용 적 륜(%)		202.69	186.35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아파트 2동, 230세대 (지하2층, 지상22~30층)	아파트 3동, 389세대 (지하1층, 지상25~35층)	
	주택형별	국민임대	59(m <sup>2</sup> ) : 154(세대)	59(m <sup>2</sup> ) : 228(세대)
		공공임대	84(m <sup>2</sup> ) : 55(세대) 114(m <sup>2</sup> ) : 21(세대)	84(m <sup>2</sup> ) : 113(세대) 114(m <sup>2</sup> ) : 48(세대)
⑧ 사업기간		2009.10. ~ 2011.11.	2009.10. ~ 2012.02.	
⑨ 부대 시설 현황	경로당	117.16(m <sup>2</sup> )	149.35(m <sup>2</sup> )	
	관리사무소	114.21(m <sup>2</sup> )	124.81(m <sup>2</sup> )	
	보육시설	120.78(m <sup>2</sup> )	170.36(m <sup>2</sup> )	
	문고	62.34(m <sup>2</sup> )	77.18(m <sup>2</sup> )	
	휘트니스	209.67(m <sup>2</sup> )	403.13(m <sup>2</sup> )	
	멀티프로그램실	-	75.62(m <sup>2</sup> )	
	주민공동시설	92.57(m <sup>2</sup> )	344.35(m <sup>2</sup> )	
	입주자 창고	92.42(m <sup>2</sup> )	122.02(m <sup>2</sup> )	
	경비실	9.99(m <sup>2</sup> )	19.98(m <sup>2</sup> ) : 2개소	
	어린이놀이터	590.00(m <sup>2</sup> )	630.00(m <sup>2</sup> )	
	운동시설 (배드민턴장)	240.00(m <sup>2</sup> )	280.00(m <sup>2</sup> )	
	펌프, 전기, 발전기실	424.47(m <sup>2</sup> )	446.62(m <sup>2</sup> )	
	MDF실	32.80(m <sup>2</sup> )	40.87(m <sup>2</sup> )	
	동통신실	11.55(m <sup>2</sup> ) : 2개소	19.23(m <sup>2</sup> ) : 3개소	
	방재실	19.65(m <sup>2</sup> )	34.65(m <sup>2</sup> )	
	지열공조실, 공조실	-	200.63(m <sup>2</sup> )	
	주차장	8,403.21(m <sup>2</sup> ) [292대 (지하: 292대)]	13,454.31(m <sup>2</sup> ) [467대 (지하: 467대)]	
⑩ 공동저수조시설		408(t)	637.5(t)	

## 5.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변경결정

##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양재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3,067,09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08호 (2004.12.10)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변경사유
기정	-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3,067,090	· 면적에 대한 증가 및 감소는 없으며, 양재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 나. 토지의 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총괄표(102번지, 212번지)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067,090	-	3,067,090	100.0	
주거지역	1,542,249	-	1,542,249	50.3	
제1종일반주거지역	260,175	감33,579.9	260,175	8.5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698,105	-	698,105	22.8	
제2종일반주거지역	174,336	-	174,336	5.7	
제3종일반주거지역	320,938	증33,579.9	354,517.9	10.5	
준주거지역	88,695	-	88,695	2.9	유통업무설비
일반상업지역	412,892	-	412,892	13.5	유통업무설비, 개포지구중심
자연녹지지역	1,111,949	-	1,111,949	36.2	

##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02번지	합 계	14,105.5	-	14,105.5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05.5	감)11,805.5	2,300	16.3	도서관 부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1,805.5	11,805.5	83.7	공동주택 부지
212번지 일대	합 계	31,067.30	-	31,067.30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774.4	감)21,774.4	-	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21,774.4	21,774.4	70.0	공동주택 부지
	자연녹지지역		9,292.9	-	9,292.9	30.0	완충녹지 및 도로

## (3) 용도지역별 변경결정(세분)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양재동 102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805.5	250이하	· 공동주택(장기전세주택 등)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②	양재동 212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21,774.4	250이하	· 공동주택(장기전세주택 등) 건립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주) 1. 상기 용도지역 변경사항 이외의 사항은 변경없음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1) 도로

## • 도로 총괄표

구 분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계	259	44,833	696,604	33	14,502	396,380	19	4,794	51,106	207	25,537	181,700	
광로	4	5,194	243,040	4	5,194	261,500	-	-	-	-	-	-	
대로	2	483	15,875	1	380	13,300	-	-	-	1	103	2,575	
중로	기정	18	9,509	145,702	4	3,266	65,320	4	1,822	27,330	10	4,421	53,052
	변경	19	9,707	148,278							11	4,619	55,628
소로	기정	235	29,611	206,109	24	5,626	56,260	15	2,972	23,776	196	21,013	126,073
	변경	234	29,413	204,129	23	5,428	54,280				-	-	-
도로 모퉁이등	-	-	47,418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7	10	국지 도로	198	중1-234	소3-184	일반 도로		88.12.31	폭원확 장
변경	중로	3	A	13	국지 도로	198	중1-234	소3-184	일반 도로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7	중로 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원확장</li> <li>- B=10→13m</li> <li>- L=19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장기전세주택 등) 건설에 따른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 폭원 확장</li> </ul>

나) 공간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 녹지	경부고속도로 중심선에서 50m이내	134,156.5	-	134,156.5	96.05.22 (서고 77)	구역내 면적
기정	②	녹지	완충 녹지	강남대로변	13,705	-	13,705	96.05.22 (서고 77)	
기정	③	녹지	완충 녹지	양재대로변	21,170	-	21,170		
기정	④	녹지	완충 녹지	논현로변	2,923	-	2,923		
기정	⑤	녹지	완충 녹지	양재동 213-8번지	2,770	-	2,770		
기정	⑥	녹지	완충 녹지	양재동 217-14일대	2,160	-	2,160		
기정	⑦	녹지	완충 녹지	양재천변	11,610	-	11,610	88.12.31	
기정	⑧	녹지	완충 녹지	양재동 232일대	4,460	-	4,460		
신설	①	녹지	완충 녹지	양재동 213	-	증)7,042.4	7,042.4		
신설	②	녹지	완충 녹지	양재동 213-9, 213-10	-	증)1,654.3	1,654.3		

• 완충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완충녹지 (양재동 213)	• 완충녹지 신설 - 증)7,042.4m <sup>2</sup>	• 진입로 확보 및 지장물 정리에 의하여 완충녹지 시설계획
㉡	완충녹지 (양재동 213-9, 양재동 213-10)	• 완충녹지 신설 - 증)1,654.3m <sup>2</sup>	• 진입로 확보 및 지장물 정리에 의하여 완충녹지 시설계획

다) 공공문화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학교

• 학교 총괄표(102번지, 212번지)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언남고등학교	양재동309	17,665	-	17,665	85.06.14 (건고 253)	제2종일반주거지 역(7층이하)
기정	②	학교	고등학교	양재동212	22,729	-	22,729	83.09.07 (건고 296)	제1종 일반주거지역
폐지	②	학교	고등학교	양재동212	22,729	감)22,729	-		
기정	③	학교	중학교	양재동102	14,105	-	14,105	97.10.30 (건고 757)	제1종 일반주거지역
폐지	③	학교	중학교	양재동102	14,105	감)14,105	-		
기정	④	학교	언남중학교	양재동310	13,886	-	13,886	85.06.14 (건고 253)	제2종일반주거지 역(7층이하)
기정	⑤	학교	양재초등학교	양재동101	16,461	-	16,461	83.09.07 (건고 296)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⑥	학교	초등학교	양재동311	4,000	-	4,000		제2종일반주거지 역(7층이하)
기정	⑦	학교	유치원	양재동 249-6	1,001	-	1,001		제2종일반주거지 역(7층이하)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12 번지	기정	②	학교	고등학교	양재동 212	22,729	-	22,729	83.09.07 (건고 296)
	폐지	②	학교	고등학교	양재동 212	22,729	감)22,729	-	
102 번지	기정	③	학교	중학교	양재동 102	14,105	-	14,105	97.10.30 (건고 757)
	폐지	③	학교	중학교	양재동 102	14,105	감)14,105	-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 폐지</li> <li>- 위치 : 양재동 212</li> <li>- 면적 : 22,72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장기전세주택 등)건설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li> </ul>
③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시설 폐지</li> <li>- 위치 : 양재동 102</li> <li>- 면적 : 14,10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장기전세주택 등)건설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li> </ul>

(2) 도서관

•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도서관	양재동 102	-	증)2,300	2,3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도서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신설</li> <li>- 위치 : 양재동 102</li> <li>- 면적 : 2,3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의 문화시설 요구에 따른 도서관 신설</li> </ul>

(3) 기타사항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102번지 일원	-	가구	14,105.5	①	양재동 102	11,805.5	공동주택
				②	양재동 102-A	2,300.0	도서관
212번지 일원	-	가구1	29,410.11	①	양재동 212	21,774.4	공동주택
				②	양재동 213	7,042.4	완충녹지
				③	양재동 213	596.2	도로
				④	양재동 213-9 양재동 213-10	1,654.3	완충녹지
	-	가구 2	1,654.3				

-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1) 계획기준  
 • 불허용도

구분	용도		불허용도
102번지 212번지	기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li> <li>•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li> <li>• 판매 및 영업시설</li> <li>• 공장 / 창고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li> <li>• 동식물관련시설</li> <li>•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시설 제외)</li> </ul>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아파트(블록단위 공동건축시에 한해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관람장</li> <li>• 의료시설중 정신병원</li> <li>• 운동시설중 철타이 있는 골프 연습장</li> <li>• 공장 / 창고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li> <li>• 동식물관련시설</li> <li>•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시설 제외)</li> </ul>

- 나) 건축물 개발밀도에 관한 계획  
 (1) 용적률에 관한 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102번지 212번지	기준용적률	130%	220%	기정 :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150%	250%	
	상한용적률	-	250%	

- (2) 건폐율에 관한 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102번지 212번지	60%	50%	기정 :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다)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 (1) 높이계획

구 분		높 이 계 획		비 고
		기정	변경	
공동주택 용지	102번지	-	30층(88.4m) 이하	• 건축위원회 및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름
	212번지	-	35층(104.4m) 이하	

주) 양재동 102번지 및 212번지는 기정 양재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부지임

## 라)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1) 계획방향

- 양재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기준에 적합한 계획
- 자연요소와 지형 및 거주자의 활용성을 고려한 공공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
-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친환경 프로그램 제공으로 거주자의 건강한 삶을 지향
- 자연 순응형 배치시스템(바람길 확보)
- 생활동선과 일체화된 그린 네트워크 체계 구축
- 가로변의 휴먼스케일과 가로경관 수준 제고

## (2) 건축한계선

구 분		제 어 목 표	계 획 내 용	비 고
102번지	10m 도로변	주거환경개선	3m	공공조경
	12m 도로변	주거환경개선	3m	공공조경
	인접대지 경계부	주거환경개선	3m	공공조경
	완충녹지 경계부	주거환경개선	3m	공공조경
212번지	6m 도로변	주거환경개선	6m	공공조경
	20m 도로변	주거환경개선	3m	공공조경
	인접대지 경계부	주거환경개선	3m	공공조경
	완충녹지 경계부	주거환경개선	3m	공공조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102번지	전면공지 ①	신설(폭 3m)	-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주변식생의 단지유입을 위한 공공조경 설치
	전면공지 ②	신설(폭 3m)	-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조경 설치
	전면공지 ③	신설(폭 3m)	-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조경 설치
	전면공지 ④	신설(폭 3m)	- 인접대지와의 프라이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조경 설치
212번지	전면공지 ①	신설(폭 3m)	-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주변식생의 단지유입을 위한 공공조경 설치
	전면공지 ②	신설(폭 3m)	- 가로환경개선을 위해 인접한 완충녹지와 연계하여 공공조경 설치
	전면공지 ③	신설(폭 3m)	- 가로환경개선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조경 설치
	전면공지 ④	신설(폭 3m)	-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조경 설치
	전면공지 ⑤	신설(폭 3m)	- 쾌적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조경 설치
	전면공지 ⑥	신설(폭 6m)	- 가로환경개선 및 인접대지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폭 6m의 공공조경 설치

- 라. 기타사항 : 변경없음
-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 계획의 인가.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주택공급과(☎ 02-3707-8287) 및 SH공사 사업2본부 건축설계팀(☎ 02-3410-733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1호  
 서울 장기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83호(2002.12.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85호(2003.10.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418호(2003.12.18)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5-158호(2005.05.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36호(2006.01.0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69호(2007.03.2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12호(2007.11.0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01호(2008.11.1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서울장지택지개발예정 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 법률 제 8370호) 제3조 및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3조4항

및 제8조2항, 제9조3항,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공급과(전화:3707-8285) 및 송파구 도시계획과(전화:410-3150), SH공사(전화:3410-796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1.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 장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2.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
3.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변경없음)
  - 면 적 : 648,157㎡

4. 예정지구의 변경 조서(변경분)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지 분	소 유 자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기정	장지동	23-5	답	27	26	1/1	김갑수	서울시 도봉구 창동26 동아아파트 6-603	
변경	장지동	23-5	답	27	27	1/1	김갑수	서울시 도봉구 창동26 동아아파트 6-603	토지조서 편입면적 정정

5. 예정지구지정(변경) 지형도(S=1/3,000) 및 예정지구 지정(변경) 지적도(S=1/1,200) : 별 첨(생략)

□ 택지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시행자의 명칭 : SH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최 영  
변경 - 유 민 근
3. 개발계획의 개요

- 가. 개발 목적(변경없음)
  - 서울시 임대주택 10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부응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주택난 해소
  -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
  -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되고, 계획적·합리적인 개발계획으로 지역 균형 개발에 기여
-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 인구 : 17,031인

○ 수용 호수 : 5,677호

- 수용인구 및 수용호수 계획

구 분	면적(m <sup>2</sup>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계	241,879	5,677	17,031	3.0인/호
공 동 주 택	241,879	5,677	17,031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변압기설비용량은 13,634KW로 추정됨

- 45,449KW × 0.3(수요율 및 부등을 감안) = 13,634KW

구 분	규 모	단위수요량 (KW)	총전력수요량 (KW)	비 고
계	-	-	45,449	
가정용	5,677호	40	22,708	공동주택(아파트)
상업용	22,080m <sup>2</sup>	0.12	2,650	근린생활시설
공공용	199,547m <sup>2</sup>	0.10	19,955	교육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자족시설
기 타	224,544m <sup>2</sup>	0.0006	135	도로, 주차장, 공원, 차고지

주) 1. 단위수요량은 「서울장지구택지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제시된 수치임.

2. 용적률 : 근린생활시설(400%), 교육시설·공공청사·종교시설·영유아보육시설·자족시설  
(200%), 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250%), 교육연구시설(150%) 적용

(2)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 난방용 도시가스

구 분	대 상	열수요량 (Gcal/y)	가스수요량 (천Nm <sup>3</sup> 주)
난 방 용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75,582	8,468

주)

$$\frac{75,582 \text{Gcal} \times 103}{10,500 \text{Kcal/Nm}^3 \times 0.85 \text{ (보일러 효율)}}$$

- 취사용 도시가스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  
 - 도시가스사용계획

구 분	규 모	건축연면적 (㎡)	적용원단위 (Nm <sup>3</sup> /㎡·년)	가스수요량 (Nm <sup>3</sup> /년)
계	-	-	-	987,447
공 동 주 택	5,677호	-	134.4(Nm <sup>3</sup> /년·호)	762,989
근린생활시설	-	22,080	1.69	37,315
교육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171,764	1.02	175,199
영유아보육시설	-	1,348	1.02	1,375
공 공 청 사	-	5,392	0.40	2,157
사회복지시설	-	16,458	0.40	6,583
문 화 시 설	-	1,650	0.27	446
종 교 시 설	-	2,520	0.27	680
자 족 시 설	-	416	1.69	703

주) 1. 적용원단위는 「서울장지지구택지개발사업 에너지사용계획서」에 제시된 수치임.

2. 용적률 : 근린생활시설(400%), 교육시설·영유아보육시설·공공청사·종교시설·가족시설  
 (200%), 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250%), 교육연구시설(150%) 적용

○ 도시가스 수요량

구 분	수 요 량
난 방 용	8,468 천Nm <sup>3</sup> /년
취 사 용	985 천Nm <sup>3</sup> /년
계	9,453 천Nm <sup>3</sup> /년

## (3)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 난방면적 산정

구 분	세대수 (호)	부지면적 (m <sup>2</sup> )	용적율 (%)	연면적 (m <sup>2</sup> )	난방 비율 (%)	난방면적 (m <sup>2</sup> )
공 동 주 택	-	241,879	-	511,839	80	409,471
60m <sup>2</sup> 이하	3,253	112,749	150~240	244,525	80	195,620
60m <sup>2</sup> ~ 85m <sup>2</sup>	2,424	129,130	150~240	267,314	80	213,851
근 린 생 활 시 설	-	5,520	400	22,080	80	17,664
교 육 시 설	-	50,979	200	101,958	80	81,556
공 공 청 사	-	2,696	200	5,392	80	4,314
사 회 복 지 시 설	-	6,583	250	16,458	80	13,166
문 화 시 설	-	660	250	1,650	80	1,320
종 교 시 설	-	1,260	200	2,520	80	2,016
교 육 연 구 시 설	-	46,537	150	69,806	80	55,845
영 유 아 보 육 시 설	-	674	200	1,348	80	1,078
자 족 시 설	-	208	200	416	80	333
계	-	-	-	733,467	-	586,773

## ○ 열부하산정 기준

## - 설계기준 외기온도

○ 난방설계기준 외기온도 : -11.3℃ DB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4호의 별표6의 서울지역기준)

## - 설계기준 실내온도

○ 난방설계기준 실내온도 : 20.0℃

## - 단위 열부하

○ 본 계획에서와 같이 설계기준 외기온도 -11.3℃, 설계기준 실외온도 20.0℃를  
기준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시설기준(2002. 1)” 원단위를 참고



## - 단위 열부하

구 분		단위난방부하 (Kcal/h.m <sup>2</sup> )	단위급탕부하 (Kcal/h.m <sup>2</sup> )	단위열부하 (Kcal/h.m <sup>2</sup> )
주택 건설 용지	아 파트 (60m <sup>2</sup> 이하)	51.4	15	66.4
	아 파트 (60m <sup>2</sup> 이상)	49	15	64.0
	근 린 생 활 시 설	86	5	91
공공 시설 용지	교 육 시 설	89	5	94
	공 공 청 사	86	7	93
	사 회 복 지 시 설	86	5	91
	문 화 시 설	115	2	117
	종 교 시 설	115	2	117
	교 육 연 구 시 설	89	5	94
	영유아보육시설	89	5	94
자 족 시 설	86	5	91	

## - 급탕부하율 및 시간대별 사용율

- 단위 급탕부하에 대한 급탕사용량은 월별, 시간별로 변화한다. 즉, 급탕사용량은 외기온도에 따라 변화되고, 또한 하루동안의 급탕사용은 시간대별로 달라지는데 각각 다음과 같이 기준하였음.

## - 월별 급탕부하율

월 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부하율(%)	100	99	87	76	63	51	35	31	40	54	63	98

주) 에너지사용계획수립 실무지침서('98. 11, 에너지관리공단)

## - 시간대별 사용율

구 분	0-3	3-6	6-9	9-12	12-18	18-21	21-24
공 동 주 택	10%	40%	100%	60%	50%	100%	10%
근 린 생 활 시 설	-	-	-	100%	100%	50%	-
교 육 시 설	-	-	-	100%	100%	-	-
공 공 청 사	-	-	-	100%	100%	-	-
사 회 복 지 시 설	-	-	-	100%	100%	-	-
문 화 시 설	-	-	-	100%	100%	-	-
종 교 시 설	-	-	-	100%	100%	-	-
교 육 연 구 시 설	-	-	-	100%	100%	-	-
영 유 아 보 육 시 설	-	-	-	100%	100%	-	-
자 족 시 설	-	-	-	100%	100%	50%	-

주) 에너지사용계획수립 실무지침서('98. 11, 에너지관리공단)

## - 난방 및 급탕시간

구 분	난 방	급 탕	월간난방일수	비 고
공동주택	24시간	"	30(31일)	전 일 수
근린생활시설	12시간(9-21시)	"	28 일	격주 1회 휴무
교육시설	9시간(9-18시)	"	25 일	주 1회 휴무 (12.20~2.10방학)
공공청사	9시간(9-18시)	"	25 일	주 1회 휴무
사회복지시설	9시간(9-18시)	"	25 일	주 1회 휴무
문화시설	9시간(9-18시)	"	25 일	주 1회 휴무
종교시설	9시간(9-18시)	"	25 일	주 1회 휴무
교육연구시설	9시간(9-18시)	"	25 일	주 1회 휴무
영유아보육시설	9시간(9-18시)	"	25 일	주 1회 휴무
자족시설	12시간(9-21시)	"	28 일	격주 1회 휴무

주) 에너지사용계획수립 실무지침서('98. 11, 에너지관리공단)

## - 열수요예측 프로그램

## • 난방 부하량

$$- \Sigma \left\{ \frac{\text{난방단위열부하량} \times \text{난방시간} \times \text{난방면적} \times (\text{설계실내온도} - \text{외기온도})}{(\text{설계실내온도} - \text{설계외기온도})} \right\}$$

단, 외기온도 > 16℃ 이면 난방부하량은 = 0

## • 급탕 부하량

$$- \Sigma (\text{단위급탕부하} \times \text{급탕시간} \times \text{급탕면적} \times \text{월별급탕부하율} \times \text{시간대별사용율})$$

단, 급탕면적은 난방면적과 동일함.

## ○ 난방부하량

구 분	난방면적 (㎡)	열 수 요 량 (Gcal/년)			최 대 열 부 하(Gcal/년)		
		난 방	급 탕	계	난 방	급 탕	계
공 동 주 택	409,471	47,999	18,713	66,712	17.5	6.1	23.6
근린생활시설	17,664	1,380	209	1,589	1.2	0.1	1.3
교 육 시 설	81,566	2,110	478	2,588	5.0	0.4	5.4
공 공 청 사	4,314	216	53	269	0.3	-	0.3
사 회 복 지 시 설	13,166	636	116	752	0.9	0.1	1.0
문 화 시 설	1,320	148	6	154	0.1	-	0.1
종 교 시 설	2,016	130	7	137	0.2	-	0.2
교육연구시설	55,845	2,793	492	3,285	3.8	0.3	4.1
영유아보육시설	1,078	52	10	62	0.1	-	0.1
자 족 시 설	333	30	4	34	-	-	-
계	586,773	55,494	20,088	75,582	23.0	6.2	27.5

## ○ 열밀도 산정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계 획 면 적	m <sup>2</sup>	733,467	
가 구 수	호	5,677	공동주택 호수임
총 난 방 면 적	m <sup>2</sup>	586,773	
최 대 열 부 하	Gcal/h	27.5	
열 밀 도	Gcal/h·km <sup>2</sup>	37.6	최대열부하 ÷ 계획면적
열 수 요 량	Gcal/년	75,582	

## ○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 사업지구는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 ('2002. 12)에 의거 판단할 때 인근의 열공급시설을 이용할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열공급시설 용량이 포화상태로써 공급여유량 부족으로 열공급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 곤란을 통보함으로 개별난방방식으로 함.

## -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타당성 검토

구 분	최대열부하 (Gcal/h)	열 밀 도 (Gcal/km <sup>2</sup> , h)	열사용량 (Gcal/년)	종합의견
기 준	30 이상	30 이상	60,000	적 합
본 지 구	27.5	37.6	75,582	
관 정	×	-	-	

주) 5km이내에 가용열원시설이 있는 경우

##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	29	7,011	101,146		
일 반 도 로	대 로(3류)	25	2	1,113	27,825		
	중 로	소계	-	7	3,048	47,903	
		1류	20	2	1,238	24,760	
		2류	15	2	428	6,424	
		3류	12	3	1,382	16,719	
	소 로	소계	-	8	1,384	7,746	
		1류	10	2	453	4,530	
		2류	8	5	843	2,996	
		3류	8미만	1	88	220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 로	소계	-	12	1,466	10,682
2류			8	6	922	7,437	
3류			6이하	6	544	3,245	
가각 및 기타		-	-	-	6,990		

## (2) 철도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421	
도시철도(환기구)	1	송파구 장지동 219-7 일원	421	• 존치

## (3)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3,974	
노외주차장	1	송파구 장지동 89-9 일원	798	
	2	송파구 장지동 217-7 일원	3,176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m<sup>2</sup>)

구 분	계	1차년도 ( '03)	2차년도 ( '04)	3차년도 ( '05)	4차년도 ( '06)	5차년도 ( '07)	6차년도 ( '08 이후)
용지 보상	650,063.6	107.0	426,245.9	105,767.0	78,134.9	39,808.8	-
조성 공사	648,157.0	11,310.4	17,400.0	36,539.9	147,031.6	422,824.9	13,050.2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 원)

구 분	계	1차년도 ( '03)	2차년도 ( '04)	3차년도 ( '05)	4차년도 ( '06)	5차년도 ( '07)	6차년도 ( '08 이후)
계	6,885	14	4,046	1,041	907	862	15
용지 보상	6,140	1	4,026	999	738	376	-
조성 공사	745	13	20	42	169	486	15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SH공사 택지개발사업비

사. 유관부서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별첨(생략)

4. 사업 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 승인일(2003. 9. 27) ~ 2009. 12. 31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648,157	100.0	
주택건설용지	247,399	38.2	
공 동 주 택	241,879	37.3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5,520	0.9	
공공시설용지	400,758	61.8	
도 로	101,146	15.6	
공 원	81,796	12.6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녹 지	53,312	8.2	완충녹지4, 경관녹지 5개소, 저류지 2개소(3,914㎡) 포함
하 천	13,281	2.0	장지천
교 육 시 설	50,979	7.9	유2개소, 초1개소, 중1개소, 고1개소, 특수2개소
공 공 청 사	2,696	0.5	소방파출소1개소,파출소1개소, 주민자치센터1개소
사회복지시설	6,583	1.0	2개소
문 화 시 설	660	0.1	1개소
종 교 시 설	1,260	0.2	2개소
주 차 장	3,974	0.6	노외주차장 2개소
차 고 지	37,628	5.8	버스차고지 1개소, 택시차고지 1개소
교육연구시설	46,537	7.2	1개소
영유아보육시설	674	0.1	1개소
가스가압장	24	0.0	2개소
자 족 시 설	208	0.0	1개소
(저 류 지)	(3,914)	-	완충녹지 3, 4와 중복지정

##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 주택건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m <sup>2</sup>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계		241,879	5,677	17,031	3.0인/호
공동 주택	소 계	241,879	5,677	17,031	
	60m <sup>2</sup> 이하	112,749	3,253	9,759	
	60m <sup>2</sup> ~85m <sup>2</sup> 이하	129,130	2,424	7,272	

## (2) 근린생활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5,520	
근린생활 시 설	1	송파구 장지동 92 일원	1,924	
	2	송파구 장지동 259-9 일원	3,596	

## (3) 공동주택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sup>2</sup>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층수	용적률 (%)
계	-	241,879	5,677	17,031	-	-
A-1BL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16,741	221	663	15층이하	150
A-2BL	소 계	21,112	374	1,122	-	-
	60m <sup>2</sup> 이하	12,667	263	789	15층이하	150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8,445	111	333		
A-3BL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28,910	625	1,875	25층이하	240

구 분		면 적(m <sup>2</sup>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층수	용적률 (%)
A-4BL	소 계	12,186	181	543	-	-
	60m <sup>2</sup> 이하	4,326	75	225	15층이하	150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7,860	106	318		
A-5BL	소 계	16,911	455	1,365	-	-
	60m <sup>2</sup> 이하	6,629	225	675	25층이하	240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10,282	230	690		
A-6BL	소 계	22,744	564	1,692	-	-
	60m <sup>2</sup> 이하	8,847	225	675	25층이하	240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13,897	339	1,017		
A-7BL	소 계	20,174	537	1,611	-	-
	60m <sup>2</sup> 이하	9,320	300	900	25층이하	240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10,854	237	711		
A-8BL	60m <sup>2</sup> 이하	20,553	700	2,100	25층이하	240
A-9BL	60m <sup>2</sup> 이하	23,459	796	2,388	25층이하	240
A-10BL	60m <sup>2</sup> 이하	21,598	545	1,635	20층이하	200
A-11BL	소 계	16,770	333	999	-	-
	60m <sup>2</sup> 이하	5,350	124	372	20층이하	200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11,420	209	627		
A-12BL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8,559	149	447	20층이하	200
A-13BL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12,162	197	591	20층이하	200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m <sup>2</sup> )	비고		
합 계		-	29	7,011	101,146			
일 반 도 로	대 로(3류)	25	2	1,113	27,825			
	중 로	소계	-	7	3,048	47,903		
		1류	20	2	1,238	24,760		
		2류	15	2	428	6,424		
		3류	12	3	1,382	16,719		
	소 로	소계	-	8	1,384	7,746		
		1류	10	2	453	4,530		
		2류	8	5	843	2,996		
		3류	8미만	1	88	220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 로	소계	-	12	1,466	10,682	
			2류	8	6	922	7,437	
			3류	6이하	6	544	3,245	
가각 및 기타		-	-	-	6,99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65-2	25	주간선 도로	49 (682)	1,225 (17,050)	대로3-65 (장지지구 북측경계)	대로2-33 (공원1, 장지동93-3)	일반 도로		건고331호 (81.9.29)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1,064	26,600	광로1-29	대로3-65-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 선도로	354	7,080	대로3-1	중로3-1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1	2	20	보조간 선도로	884	17,680	대로3-1	중로1-1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255	3,825	대로3-1	중로1-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173	2,599	중로1-2	장지지구동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930	11,160	광로1-29	중로2-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248	3,111	중로2-2	차고지, 장지동310	일반 도로		서고436호 (06.1.5)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204	2,448	중로3-3	장지지구동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36호 (06.1.6)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16	1,160	대로3-1	장지지구서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337	3,370	중로2-2	장지지구동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7	296	대로3-1	소로2-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72 (172)	380 (1,376)	대로3-65-2	소로2-1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44 (159)	594 (1,152)	소로3-3	중로1-29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 ( ) 안은 지구의 부분을 포함한 연장 및 면적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면적(m <sup>2</sup>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363 (363)	1,215 (2,878)	소로1-1	중로2-22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5	8	특수 도로	36	285	광로1-29	중로1-1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6	8	특수 도로	213	1,706	중로1-1	중로2-1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7	8	특수 도로	311	2,486	중로2-1	중로1-2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8	8	특수 도로	119	952	대로3-1	소로2-7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9	8	특수 도로	125	1,004	중로1-2	소로2-7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10	8	특수 도로	118	1,004	대로3-1	어린이공원, 장지동202-10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27 (220)	511 (1,760)	장지지구북측경계	장지지구서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36호 (06.1.5)
기정	소로	3	1	45	특수 도로	26 (90)	117 (405)	중로3-1	중로3-3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88 (101)	220 (528)	소로2-3	소로2-19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4	6	특수 도로	127	762	대로3-1	소로2-4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5	6	특수 도로	103	616	대로3-1	소로3-3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6	6	특수 도로	96	576	대로3-1	근린공원1, 장지동산26-1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78	477	중로1-2	어린이공원4, 장지동321-10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114	697	중로1-2	중로3-1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 ( ) 안은 지구의 부분을 포함한 연장 및 면적임

## (나) 철도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421	
도시철도(환기구)	1	송파구 장지동 219-7 일원	421	• 존치

## (다)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3,974	
노외주차장	1	송파구 장지동 89-9 일원	798	
	2	송파구 장지동 217-7 일원	3,176	

## (라)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81,796	
근린공원	계	-	75,393	
	1	송파구 장지동 산25 일원	65,392	
	2	송파구 장지동 280-5임 일원	10,001	
어린이 공 원	계	-	6,403	
	1	송파구 장지동 90-7 일원	1,500	
	2	송파구 장지동 202-9 일원	1,525	
	3	송파구 장지동 270-1 일원	1,500	
	4	송파구 장지동 321-5 일원	1,878	

## ○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53,312	
완충녹지	1	송파구 장지동 260-13 일원	3,446	• 송파대로변
	2	송파구 장지동 319-44 일원	7,084	• 장지천남측
	3	송파구 장지동 303 일원	14,088	• 중3-1호선변 • 저류지1(3,181m <sup>2</sup> ) 포함
	4	송파구 장지동 31 일원	12,715	• 고속도로 동측 장지천 주변 • 저류지2(733m <sup>2</sup> ) 포함
경관녹지	1	송파구 장지동 327 일원	309	• 공동주택용지(12BL) 서측 주변
	2	송파구 장지동 325-1 일원	311	• 공동주택용지(12BL) 동측 주변
	3	송파구 장지동 66-10 일원	5,493	• 교육연구시설 주변
	4	송파구 장지동 51 일원	8,471	• 고속도로 서측 주변
	5	송파구 장지동 35-1 일원	1,395	• 고속도로 동측 주변

## (마) 하천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적 (m <sup>2</sup> )	비 고
계	-	-	-	-	13,281	
하 천	1	송파구 장지동 245-2천 일원	20~25	500	13,281	• 장지천 - 폭 원 : 10~40m - 총연장 : 3.9km - 송파구내 연장 : 2.5km

## (바)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50,979	
유 치 원	소계	-	1,602	
	1	송파구 장지동 90-1 일원	802	
	2	송파구 장지동 336-15 일원	800	
초등학교	1	송파구 장지동 185-2 일원	10,020	
중 학 교	1	송파구 장지동 204-7 일원	10,033	
고등학교	1	송파구 장지동 204-5 일원	10,884	
특수학교	소계	-	18,440	
	1	송파구 장지동 45-4 일원	9,900	• 한국육영학교(존치)
	2	송파구 장지동 87-5 일원	8,540	• 한림중 · 실업고등학교(존치)

## (사)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2,696	
공공청사	1	송파구 장지동 215-5 일원	1,046	• 소방파출소
	2	송파구 장지동 261-4 일원	660	• 파출소
	3	송파구 장지동 261-10 일원	990	• 주민자치센터

## (아)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1,260	
종교시설	1	송파구 장지동 87 일원	660	
	2	송파구 장지동 293 일원	600	

## (자) 문화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660	
문화시설	1	송파구 장지동 87 일원	660	

## (차)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6,583	
사회복지 시설	1	송파구 장지동 214-2 일원	3,938	• 존치
	2	송파구 장지동 92-1 일원	2,645	

## (카) 차고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37,628	
버스차고지	1	송파구 장지동 40-2 일원	25,330	
택시차고지	1	송파구 장지동 32-1 일원	12,298	

## (타) 교육연구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46,537	
교육연구시설	1	송파구 장지동 45 일원	46,537	• 존치

## (파) 영유아보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674	
영유아보육시설	1	송파구 장지동 291-1 일원	674	

## (하) 자족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208	
자족시설	1	송파구 장지동 168번지	208	

## (거) 저류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3,914	
저 류 지	1	송파구 장지동 327-3 일원	3,181	•완충녹지3과 중복지정
	2	송파구 장지동 310번지 일원	733	•완충녹지4과 중복지정

## (너) 가스가압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24	
가스가압장	1	송파구 장지동 278-7 일원	12	
	2	송파구 장지동 254-10 일원	12	



##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

○ 면 적 : 648,157m<sup>2</sup>

##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sup>2</sup> )		지 분	소 유 자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기정	장지동	23-5	답	27	26	1/1	김갑수	서울시 도봉구 창동26 동아아파트 6-603	
변경	장지동	23-5	답	27	27	1/1	김갑수	서울시 도봉구 창동26 동아아파트 6-603	토지조서 편입면적 정정

## 8. 개발계획도 및 지적도 : 별첨(생략)

## □ 실시계획(변경)

##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

○ 면 적 : 648,157m<sup>2</sup>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택지개발사업

○ 명 칭 : 서울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

## 3.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SH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기 정 - 최 영  
변 경 - 유 민 근

##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가. 시행기간(변경없음)

○ 착공일 : 실시계획 승인일 (2003. 12. 16)

○ 준공일 : 2009. 12. 31

## 나. 공종별 시행계획(변경없음)

구분	사업량	기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6	7~12	1~6	7~12	1~6	7~12	1~6	7~12	1~6	7~12	1~6	7~12	1~6	7~12
1. 용지매입 보상	650,063.6㎡	'03.9 ~ '04.4														
2. 조사설계	실시설계 등	'03.1 ~ '07.12														
3. 택지조성 공사	-	'04.4 ~ '09.12														
토공사	절토 : 89천㎡ 성토 : 316천㎡	'04.4 ~ '08.8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도로 : 863a	'05.1 ~ '08.8														
상수도 공사	상수도 : 5,061m	'05.9 ~ '08.7														
하수도 공사	우수관거 : 7,211m	'05.7 ~ '08.7														
	오수관거 : 6,821m	'05.7 ~ '08.7														
조경공사	공원, 녹지 : 134천㎡	'05.5 ~ '08.12														
전기공사	가로등외 1식	'06.1 ~ '08.8														
구조물 공사 및 기타	교량, 환기구 및 방음벽 등	'04.7 ~ '09.12														

## 5.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서울시 임대주택 10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부응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주택난 해소
-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
-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되고, 계획적·합리적인 개발계획으로 지역균형 개발에 기여

##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계	648,157	100.0	
주택건설용지	247,399	38.2	
공 동 주 택	241,879	37.3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5,520	0.9	
공공시설용지	400,755	61.8	
도 로	101,146	15.6	
공 원	81,796	12.6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녹 지	53,312	8.2	완충녹지4, 경관녹지 5개소, 저류지 2개소(3,914m <sup>2</sup> ) 포함
하 천	13,281	2.0	장지천
교 육 시 설	50,979	7.9	유2개소, 초1개소, 중1개소, 고1개소, 특수2개소
공 공 청 사	2,696	0.5	소방파출소1개소,파출소1개소, 주민자치센터1개소
사 회 복 지 시 설	6,583	1.0	2개소
문 화 시 설	660	0.1	1개소
종 교 시 설	1,260	0.2	2개소
주 차 장	3,974	0.6	노외주차장 2개소
차 고 지	37,628	5.8	버스차고지 1개소, 택시차고지 1개소
교 육 연 구 시 설	46,537	7.2	1개소
영 유 아 보 육 시 설	674	0.1	1개소
가 스 가 압 장	24	0.0	2개소
자 족 시 설	208	0.0	1개소
(저 류 지)	(3,914)	-	완충녹지 3, 4와 중복지정

## (2)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m <sup>2</sup>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계		241,879	5,677	17,031	3.0인/호
공동 주택	소 계	241,879	5,677	17,031	
	60m <sup>2</sup> 이하	112,749	3,253	9,759	
	60m <sup>2</sup> ~85m <sup>2</sup> 이하	129,130	2,424	7,272	

## ○ 근린생활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5,520	
근린생활 시 설	1	송파구 장지동 92 일원	1,924	
	2	송파구 장지동 259-9 일원	3,596	

## ○ 공동주택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sup>2</sup>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층수	용적률(%)
계	-	241,879	5,677	17,031	-	-
A-1BL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16,741	221	663	15층이하	150
A-2BL	소 계	21,112	374	1,122	-	-
	60m <sup>2</sup> 이하	12,667	263	789	15층이하	150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8,445	111	333		
A-3BL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28,910	625	1,875	25층이하	240

구 분		면 적(m <sup>2</sup>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층수	용적률(%)	
A-4BL	소 계	당초	12,186	181	543	-	-
	60m <sup>2</sup> 이하	당초	4,326	75	225	15층이하	150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당초	7,860	106	318		
A-5BL	소 계	당초	16,911	455	1,365	-	-
	60m <sup>2</sup> 이하	당초	6,629	225	675	25층이하	240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당초	10,282	230	690		
A-6BL	소 계	당초	22,744	564	1,692	-	-
	60m <sup>2</sup> 이하	당초	8,847	225	675	25층이하	240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당초	13,897	339	1,017		
A-7BL	소 계	당초	20,174	537	1,611	-	-
	60m <sup>2</sup> 이하	당초	9,320	300	900	25층이하	240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당초	10,854	237	711		
A-8BL	60m <sup>2</sup> 이하	당초	20,553	700	2,100	25층이하	240
A-9BL	60m <sup>2</sup> 이하	당초	23,459	796	2,388	25층이하	240
A-10BL	60m <sup>2</sup> 이하	당초	21,598	545	1,635	20층이하	200
A-11BL	소 계	당초	16,770	333	999	-	-
	60m <sup>2</sup> 이하	당초	5,350	124	372	20층이하	200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당초	11,420	209	627		
A-12BL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당초	8,559	149	447	20층이하	200
A-13BL	60m <sup>2</sup> 초과~85m <sup>2</sup> 이하	당초	12,162	197	591	20층이하	200

## (3)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m <sup>2</sup> )	비고		
합 계		-	29	7,011	101,146			
일 반 도 로	대 로(3류)	25	2	1,113	27,825			
	중 로	소계	-	7	3,048	47,903		
		1류	20	2	1,238	24,760		
		2류	15	2	428	6,424		
		3류	12	3	1,382	16,719		
	소 로	소계	-	8	1,384	7,746		
		1류	10	2	453	4,530		
		2류	8	5	843	2,996		
		3류	8미만	1	88	220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 로	소계	-	12	1,466	10,682	
			2류	8	6	922	7,437	
			3류	6이하	6	544	3,245	
가각 및 기타		-	-	-	6,99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65-2	25	주간선 도로	49 (682)	1,225 (17,050)	대로3-65 (장지지구 북측경계)	대로2-33 (공원1, 장지동93-3)	일반 도로		건고331호 (81.9.29)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1,064	26,600	광로1-29	대로3-65-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 선도로	354	7,080	대로3-1	중로3-1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1	2	20	보조간 선도로	884	17,680	대로3-1	중로1-1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255	3,825	대로3-1	중로1-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173	2,599	중로1-2	장지지구동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930	11,160	광로1-29	중로2-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248	3,111	중로2-2	차고지, 장지동310	일반 도로		서고436호 (06.1.5)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204	2,448	중로3-3	장지지구동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36호 (06.1.6)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16	1,160	대로3-1	장지지구서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337	3,370	중로2-2	장지지구동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7	296	대로3-1	소로2-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72 (172)	380 (1,376)	대로3-65-2	소로2-1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44 (159)	594 (1,152)	소로3-3	중로1-29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 ( ) 안은 지구의 부분을 포함한 연장 및 면적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면적(m <sup>2</sup>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363 (363)	1,215 (2,878)	소로1-1	중로2-22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5	8	특수 도로	36	285	광로1-29	중로1-1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6	8	특수 도로	213	1,706	중로1-1	중로2-1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7	8	특수 도로	311	2,486	중로2-1	중로1-2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8	8	특수 도로	119	952	대로3-1	소로2-7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9	8	특수 도로	125	1,004	중로1-2	소로2-7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10	8	특수 도로	118	1,004	대로3-1	어린이공원, 장지동202-10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27 (220)	511 (1,760)	장지지구북측경계	장지지구서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36호 (06.1.5)
기정	소로	3	1	45	특수 도로	26 (90)	117 (405)	중로3-1	중로3-3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88 (101)	220 (528)	소로2-3	소로2-19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4	6	특수 도로	127	762	대로3-1	소로2-4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5	6	특수 도로	103	616	대로3-1	소로3-3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6	6	특수 도로	96	576	대로3-1	근린공원1, 장지동산26-1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78	477	중로1-2	어린이공원4, 장지동321-10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114	697	중로1-2	중로3-1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 ( ) 안은 지구의 부분을 포함한 연장 및 면적임



## (나) 철도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421	
도시철도(환기구)	1	송파구 장지동 219-7 일원	421	• 존치

## (다)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3,974	
노외주차장	1	송파구 장지동 89-9 일원	798	
	2	송파구 장지동 217-7 일원	3,176	

## (라)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 공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81,796	
근린공원	계	-	75,393	
	1	송파구 장지동 산25 일원	65,392	
	2	송파구 장지동 280-5임 일원	10,001	
어린이 공 원	계	-	6,403	
	1	송파구 장지동 90-7 일원	1,500	
	2	송파구 장지동 202-9 일원	1,525	
	3	송파구 장지동 270-1 일원	1,500	
	4	송파구 장지동 321-5 일원	1,878	

## ○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53,312	
완충녹지	1	송파구 장지동 260-13 일원	3,446	• 송파대로변
	2	송파구 장지동 319-44 일원	7,084	• 장지천남측
	3	송파구 장지동 303 일원	14,088	• 중3-1호선변 • 저류지1(3,181㎡) 포함
	4	송파구 장지동 31 일원	12,715	• 고속도로 동측 장지천 주변 • 저류지2(733㎡) 포함
경관녹지	1	송파구 장지동 327 일원	309	• 공동주택용지(12BL) 서측 주변
	2	송파구 장지동 325-1 일원	311	• 공동주택용지(12BL) 동측 주변
	3	송파구 장지동 66-10 일원	5,493	• 교육연구시설 주변
	4	송파구 장지동 51 일원	8,471	• 고속도로 서측 주변
	5	송파구 장지동 35-1 일원	1,395	• 고속도로 동측 주변

## (마) 하천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폭원 (m)	연장 (m)	면적 (㎡)	비 고
계	-	-	-	-	13,281	
하 천	1	송파구 장지동 245-2천 일원	20~25	500	13,281	• 장지천 - 폭 원 : 10~40m - 총연장 : 3.9km - 송파구내 연장 : 2.5km

## (바)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50,979	
유 치 원	소계	-	1,602	
	1	송파구 장지동 90-1 일원	802	
	2	송파구 장지동 336-15 일원	800	
초등학교	1	송파구 장지동 185-2 일원	10,020	
중 학 교	1	송파구 장지동 204-7 일원	10,033	
고등학교	1	송파구 장지동 204-5 일원	10,884	
특수학교	소계	-	18,440	
	1	송파구 장지동 45-4 일원	9,900	• 한국육영학교(존치)
	2	송파구 장지동 87-5 일원	8,540	• 한림중 · 실업고등학교(존치)

## (사)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계	-	-	2,696	
공공청사	1	송파구 장지동 215-5 일원	1,046	• 소방파출소
	2	송파구 장지동 261-4 일원	660	• 파출소
	3	송파구 장지동 261-10 일원	990	• 주민자치센터

## (아)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1,260	
종교시설	1	송파구 장지동 87 일원	660	
	2	송파구 장지동 293 일원	600	

## (자) 문화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660	
문화시설	1	송파구 장지동 87 일원	660	

## (차)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6,583	
사회복지 시 설	1	송파구 장지동 214-2 일원	3,938	• 존치
	2	송파구 장지동 92-1 일원	2,645	

## (카) 차고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37,628	
버스차고지	1	송파구 장지동 40-2 일원	25,330	
택시차고지	1	송파구 장지동 32-1 일원	12,298	

## (타) 교육연구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46,537	
교육연구시설	1	송파구 장지동 45 일원	46,537	• 존치

## (파) 영유아보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674	
영유아보육시설	1	송파구 장지동 291-1 일원	674	

## (하) 자족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208	
자족시설	1	송파구 장지동 168번지	208	

## (거) 저류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3,914	
저 류 지	1	송파구 장지동 327-3 일원	3,181	• 완충녹지3과 중복지정
	2	송파구 장지동 310번지 일원	733	• 완충녹지4과 중복지정

## (너) 가스가압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계	-	-	24	
가스가압장	1	송파구 장지동 278-7 일원	12	
	2	송파구 장지동 254-10 일원	12	

## 다. 사업시행방법

- 모든 공사는 도급으로 시행하며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준법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실시설계도서 등에 의해 시행함.
- 전기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함.
- 통신공사는 한국통신공사에서 시행함.
- 확정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 위탁 시행함.

##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계	1차년도 ( '03)	2차년도 ( '04)	3차년도 ( '05)	4차년도 ( '06)	5차년도 ( '07)	6차년도 ( '08이후)
계	6,885	14	4,046	1,041	907	862	15
용지보상	6,140	1	4,026	999	738	376	-
조성공사	745	13	20	42	169	486	15

-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SH공사 택지개발사업비

나. 사업비 내역(변경없음)

(1) 용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량	금 액	비 고
계	-	613,997	
용지보상비	면적 : 650,063.6㎡	568,598	
지장물보상비	1식	30,830	
영업권보상비	1식	9,528	
이주대책비	1식	377	
농지조성비 등	1식	2,256	
부 대 비	1식	2,408	

(2) 택지조성비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사 업 량	공 사 비
계		66,920
1. 조사설계비	1식	1,637
2. 토공사	· 본단지, 추가부지 및 군진입도로 - 절토 : 89천㎡, 성토 : 316㎡	1,630
3. 포장공사	· 본단지, 추가부지 및 군진입도로 - 차도포장 : 702a, 보도포장 : 161a	2,346
4. 상수도 공사	· 본단지 및 추가부지 - 상수관 D150~D500mm L=5,061m	671
5. 하수도 공사	· 본단지, 추가부지 및 군진입도로 - 우수관로, 저류지, 농수로이설 포함 1식	3,632
	· 본단지, 추가부지 및 군진입도로 - 오수관 D3000~D450mm L=6,821m	876
6. 구조물공 및 기타	· 환경교, 환기구이설, 방음벽설치, 부대공, 자재대 포함 1식 · 상하수관 이전비 및 통신, 한전선로 이설비 1식	23,566
7. 조경공사	· 근린공원 및 완충녹지 등 :136천㎡	9,283
8. 전기공사	1 식	3,245
9. 기반시설분담금 등	1 식	20,034

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 생략
8.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별첨 (생략)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으므로 생략
10.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관계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함.
  - 토지소유자들이 일정한 요건(보상대상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을 구비하여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1인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수용함.

나. 용지의 취득 및 보상계획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1,262(7)	650,063.6		
토 지	사 유 지	882(7)	540,411.0		
	국공유지	소 계	446(7)	109,652.6	
		유상귀속	229(6)	60,645.0	
		무상귀속	217(1)	49,007.6	
지장물 및 기타		-	-		

- 주) 1. 공동지분 필지 : 총 7필지(248-8전,248-9답,255-1답,255-2도,255-3답,255-4답,274임)
2. ( )은 국공유지 및 사유지 공동지분 필지수임
3. 국공유지 필지수 : 총 216필지가 사업지구내로 편입되며, 동일 지번이 유·무상귀속분으로 분할 협의된 66개 필지는 중복 계상

다. 이주대책

(1)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 (2) 대상자  
○ 서울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3) 이주방법  
○ 사업시행자가 동지구내 건설하는 아파트 특별분양
- (4) 분양가 산정  
○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아파트 분양가격
- (5) 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시행방안 별도 수립
- (6) 기타  
○ 기 타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별도 협의 조치
11.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가.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 나.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에 각1회 이상 공시송달(안)과 같이 공고
12.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 개발계획(변경) 내용과 동일
13.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가. 주택건설용지  
○ 주택건설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 2, 제1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매각  
○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하여 공급
- 나. 공공시설용지  
○ 도로, 공원, 녹지, 하천, 저류지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을 관리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 교육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주차장, 차고지, 교육연구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자족시설, 가스가압장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해당기관 또는 실수요자에게 유상공급
1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별첨 (도면생략)
15. 공원시설 결정도서 : 별첨 (생략)
16.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별첨 (도면생략)



17. 농지전용 협의도서 : 별첨 (생략)  
 18. 산지전용 협의도서 : 별첨 (생략)  
 19.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서 : 별첨 (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장기택지개발사업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합계	648,157	100.0	
주거지역	447,143	69.0	
제1종 일반주거지역	75,293	11.6	
제 2 종 일반주거지역	138,617	21.4	
7층이하	72,223	11.1	
12층이하	66,394	10.2	15층이하 : 66,014㎡
제3종 일반주거지역	229,635	35.4	
준주거지역	3,598	0.6	
자연녹지지역	201,014	31.0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가) 도로

## ■ 도로 총괄조서

구 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m <sup>2</sup> )	비고		
합 계		-	29	7,011	101,146			
일 반 도 로	대 로(3류)	25	2	1,113	27,825			
	중 로	소계	-	7	3,048	47,903		
		1류	20	2	1,238	24,760		
		2류	15	2	428	6,424		
		3류	12	3	1,382	16,719		
	소 로	소계	-	8	1,384	7,746		
		1류	10	2	453	4,530		
		2류	8	5	843	2,996		
		3류	8미만	1	88	220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 로	소계	-	12	1,466	10,682	
			2류	8	6	922	7,437	
			3류	6이하	6	544	3,245	
가각 및 기타		-	-	-	6,990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3	65-2	25	주간선 도로	49 (682)	1,225 (17,050)	대로3-65 (장지지구 북측경계)	대로2-33 (공원1,장지동93-3)	일반 도로		건고331호 (81.9.29)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1,064	26,600	광로1-29	대로3-65-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 선도로	354	7,080	대로3-1	중로3-1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1	2	20	보조간 선도로	884	17,680	대로3-1	중로1-1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255	3,825	대로3-1	중로1-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173	2,599	중로1-2	장지지구동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930	11,160	광로1-29	중로2-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248	3,111	중로2-2	차고지, 장지동310	일반 도로		서고436호 (06.1.5)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204	2,448	중로3-3	장지지구동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36호 (06.1.6)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16	1,160	대로3-1	장지지구서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337	3,370	중로2-2	장지지구동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7	296	대로3-1	소로2-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72 (172)	380 (1,376)	대로3-65-2	소로2-1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44 (159)	594 (1,152)	소로3-3	중로1-29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 ( ) 안은 지구의 부분을 포함한 연장 및 면적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면적(m <sup>2</sup>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363 (363)	1,215 (2,878)	소로1-1	중로2-22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5	8	특수 도로	36	285	광로1-29	중로1-1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6	8	특수 도로	213	1,706	중로1-1	중로2-1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7	8	특수 도로	311	2,486	중로2-1	중로1-2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8	8	특수 도로	119	952	대로3-1	소로2-7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9	8	특수 도로	125	1,004	중로1-2	소로2-7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10	8	특수 도로	118	1,004	대로3-1	어린이공원, 장지동202-10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27 (220)	511 (1,760)	장지지구북측경계	장지지구서측경계	일반 도로		서고436호 (06.1.5)
기정	소로	3	1	45	특수 도로	26 (90)	117 (405)	중로3-1	중로3-3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88 (101)	220 (528)	소로2-3	소로2-192	일반 도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4	6	특수 도로	127	762	대로3-1	소로2-4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5	6	특수 도로	103	616	대로3-1	소로3-3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6	6	특수 도로	96	576	대로3-1	근린공원1, 장지동산26-1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7	6	특수 도로	78	477	중로1-2	어린이공원4, 장지동321-10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기정	소로	3	8	6	특수 도로	114	697	중로1-2	중로3-1	보행자 도 로		서고418호 (03.12.26)

※ ( ) 안은 지구의 부분을 포함한 연장 및 면적임

## 나) 철도(변경없음)

##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421	-	421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환기구)	송파구 장지동 219-7 일원	421	-	421	송고41호 (94.8.30)	

## 다) 주차장(변경없음)

##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3,974	-	3,974		
기정	1	노외주차장		송파구 장지동 89-9 일원	798	-	798	서고418호 (03.12.26)	
기정	2	노외주차장		송파구 장지동 217-7 일원	3,176	-	3,176	서고418호 (03.12.26)	

##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가) 공원(변경없음)

##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개소			602,035 (81,796)	-	602,035 (81,796)		
기정	1	장 지 근린공원	근린공원	송파구 장지동 산25 일원	585,631 (65,392)	-	585,631 (65,392)	건고243호 (84.7.4)	
기정	2	장지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송파구 장지동 280-5 일원	10,001	-	10,001	서고418호 (03.12.26)	
기정	1	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송파구 장지동 90-7 일원	1,500	-	1,500	서고418호 (03.12.26)	
기정	2	2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송파구 장지동 202-9 일원	1,525	-	1,525	서고418호 (03.12.26)	
기정	3	3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송파구 장지동 270-1 일원	1,500	-	1,500	서고418호 (03.12.26)	
기정	4	4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 원	송파구 장지동 321-5 일원	1,878	-	1,878	서고418호 (03.12.26)	

※ ( )는 지구내 사항임

## 나) 녹지(변경없음)

##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개소			53,312	53,312	-	53,312		
기정	1	송파대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260-13 일원	3,446	-	3,446	서고418호 (03.12.26)	
기정	2	장지천 남측 완충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19-44 일원	7,084	-	7,084	서고418호 (03.12.26)	
기정	3	중로3-1호선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03 일원	14,088	-	14,088	서고418호 (03.12.26)	
기정	4	고속도로 동측 장지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1 일원	12,715	-	12,715	서고418호 (03.12.26)	
기정	1	공동주택용지(12BL) 서측 주변 경관녹지	경관녹지	송파구 장지동 327 일원	309	-	309	서고418호 (03.12.26)	
기정	2	공동주택용지(12BL) 동측 주변 경관녹지	경관녹지	송파구 장지동 325-1 일원	311	-	311	서고412호 (07.11.8)	
기정	3	교육연구시설 주변 경관녹지	경관녹지	송파구 장지동 66-10 일원	5,493	-	5,493	서고412호 (07.11.8)	
기정	4	고독도로 서측변 경관녹지	경관녹지	송파구 장지동 51 일원	8,471	-	8,471	서고418호 (03.12.26)	
기정	5	고독도로 동측변 경관녹지	경관녹지	송파구 장지동 35-1 일원	1,395	-	1,395	서고418호 (03.12.26)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가) 학교(변경없음)

##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개소				49,377	-	49,377		
기정	1	초등학교1	초등학교	송파구 장지동 185-2 일원	10,020	-	10,020	서고418호 (03.12.26)	
기정	2	중학교1	중학교	송파구 장지동 204-7 일원	10,033	-	10,033	서고418호 (03.12.26)	
기정	3	고등학교1	고등학교	송파구 장지동 204-5 일원	10,884	-	10,884	서고418호 (03.12.26)	
기정	4	한국육영 학교	특수학교	송파구 장지동 45-4 일원	9,900	-	9,900	서고309호 (91.10.29)	
기정	5	한림중·실업고등학교	각종학교	송파구 장지동 87-5 일원	8,540	-	8,540	서고418호 (03.12.26)	

##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1,706	-	2,696		
기정	1	소방파출소	공공청사	송파구 장지동 215-5 일원	1,046	-	1,046	서고418호 (03.12.26)	
기정	2	파출소	공공청사	송파구 장지동 261-4 일원	660	-	660	서고418호 (03.12.26)	
기정	3	주민자치센터	공공청사	송파구 장지동 260-1 일원	990	-	990		

## 다) 문화시설(변경없음)

##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660	-	660		
기정	1	문화시설	문화시설	송파구 장지동 87 일원	660	-	660		

## 라)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6,583	-	6,583		
기정	1	사회복지 시설1	사회복지 시설	송파구 장지동 214-2 일원	3,938	-	3,938	서고332호 (92.10.29)	
기정	2	사회복지 시설2	사회복지 시설	송파구 장지동 92-1 일원	2,645	-	2,645	서고418호 (03.12.26)	

## (4) 방재시설

## 가) 하천(변경없음)

##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장지천	소하천	장지동 319-2일원	장지동 245-2일원	장지동 248-1일원	0.5	13,281		지구내 하천사향 결정

## 나) 우수지(변경없음)

## ■ 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3,914	-	3,914		
기정	1	우수지	저류시설	송파구 장지동 327-3 일원	3,181	-	3,181	서고158호 (05.5.21)	완충녹지3과 중복결정
기정	2	우수지	저류시설	송파구 장지동 310 일원	733	-	733	서고436호 (06.1.6)	완충녹지4와 중복결정

3. 용도지역결정(변경)도 : 별첨 (생략)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별첨 (생략)

## □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장지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일원	648,157	-	648,157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별첨 (생략)

3.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 다. 가구 및 획지구모의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공동 주택 용지	A1	A1	16,741	장지동 94-6 일원	16,741	
	A2	A2	21,112	장지동 170 일원	21,112	
	A3	A3	28,910	장지동 80-1 일원	28,910	
	A4	A4	12,186	장지동 188-4 일원	12,186	
	A5	A5	16,911	장지동 278-2 일원	16,911	
	A6	A6	22,744	장지동 297-3 일원	22,744	
	A7	A7	20,174	장지동 334-4 일원	20,174	
	A8	A8	20,553	장지동 257-1 일원	20,553	
	A9	A9	23,459	장지동 267-7 일원	23,459	
	A10	A10	21,598	장지동 339-3 일원	21,598	
	A11	A11	16,770	장지동 321-1 일원	16,770	
	A12	A12	8,559	장지동 327 일원	8,559	
	A13	A13	12,162	장지동 253-5 일원	12,162	

##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근린 생활 시설 용지	C	C	1,924	-	장지동 92 일원	1,924	
	D-1	D	3,596	-1	장지동 259-4 일원	600	공동개발 2필지 이내 허용
	D-2			-2	장지동 259-9 일원	600	
	D-3			-3	장지동 257-4 일원	600	공동개발(지정)
	D-4			-4	장지동 257-1 일원	600	
	D-5			-5	장지동 254-10 일원	600	공동개발 2필지 이내 허용
	D-6			-6	장지동 247-1 일원	596	

## 3)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교육 시설 용지	E1	E1	10,020	-	장지동 185-2 일원	10,020	초등학교
	E2	E2	10,033	-	장지동 204-7 일원	10,033	중학교
	E3	E3	10,884	-	장지동 204-5 일원	10,884	고등학교
	E4	E4	9,900	-	장지동 45-4 일원	9,900	특수학교
	E5	E5	8,540	-	장지동 87-5 일원	8,540	각종학교
	E6	E6	802	-	장지동 90-1 일원	802	유치원
	E7	E7	800	-	장지동 336-15 일원	800	유치원

## 4)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공공 청사 용지	F1	F1	1,046	-	장지동 215-5 일원	1,046	소방파출소
	F2	F2	660	-	장지동 261-4 일원	660	파출소
	F3	F3	990	-	장지동 260-1 일원	990	주민자치센터

## 5)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문화시설 용지	M1	M	660	-	장지동 87 일원	660	

## 6)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사회 복지 시설 용지	G1	G1	3,938	-	장지동 214-2 일원	3,938	
	G2	G2	2,645	-	장지동 92-1 일원	2,645	

## 7)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종교시설 용지	H1	H1	660	-	장지동 87 일원	660	
	H2	H2	600	-	장지동 293 일원	600	

## 8)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주차장 용지	I1	I1	798	-	장지동 89-9 일원	798	
	I2	I2	3,176	-	장지동 217-7 일원	3,176	

## 9) 차고지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차고지 용지	J1-1	J1	25,330	-1	장지동 39-4 일원	8,456	
	J1-2			-2	장지동 21 일원	14,914	
	J1-3			-3	장지동 38-3 일원	1,960	
	J2-1	J2	12,298	-1	장지동 28-4 일원	1,866	
	J2-2			-2	장지동 30-1 일원	1,730	
	J2-3			-3	장지동 32-1 일원	1,885	
	J2-4			-4	장지동 34-7 일원	2,520	
	J2-5			-5	장지동 34-10 일원	2,416	
J2-6	-6	장지동 307 일원	1,881				

## 10)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교육연구 시설용지	EE	EE	46,537	-	장지동 45 일원	46,537	

## 11) 가스가압지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가스 가압지용지	L1	L1	12	-	장지동 254-12 일원	12	
	L2	L2	12	-	장지동 278-7 일원	12	

## 12) 영유아보육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영유아보육 시설용지	ED	ED	674	-	장지동 291-1 일원	674	

## 13)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자족 시설 용지	K	K	208	-	장지동 168 일원	208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13		지정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동법 제6조의 행위 및 시설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률	• 기존주택지변(A1, A2, A4) : 150%이하 • 고속도로변(A10, A11, A12, A13) : 200%이하 • 지구 중앙부(A3, A5~A9) : 240%이하
		높 이	• 기존주택지변(A1, A2, A4) : 15층이하 • 고속도로변(A10, A11, A12, A13) : 20층이하 • 지구 중앙부(A3, A5~A9) : 25층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2m (A1, 도면참조)
		배 치	• 양호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향을 남향 위주로 배치하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 차량소음 저감 위해 고속도로변 아파트 직각배치 (규제사항) - 기존 단독주택지의 일조권 및 조망 등에 대한 고려
		형태·외관	• 아파트 지붕은 심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조물에 의한 지붕 및 경사형 지붕 등 다양한 형태의 지붕 권장 • 보행자도로변의 시각적 개방감 및 장소성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물 형태 권장
		색 채	• 층별로 입면색채를 달리하는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지만 규칙적인 색채 권장 • 단지별로 색채를 달리하여 단지 인식도를 증대토록 권장
		담 장	• 보행자 전용도로 및 어린이공원변 일부에 담장설치불허구간 지정(도면참조) • 개방형 웬스 및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기 타	-		

■ 근린생활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C D-1~6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유치원 및 보육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동법 제6조의 행위 및 시설 • 일반미관지구내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44조의 시설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C : 200%이하 • D-1 ~ 6 : 300%이하
		높 이	• 5층이하
		건 축 선	• C : 건축한계선 도로변 2m 이상(도면참조) • D-1 ~ 6 : 벽면한계선 도로변 2m이상(도면참조)
		배 치	•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에 의한 후퇴부분에 대하여 차량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시각적 연속성과 방향성 유도도록 배치
		형태·외관	• 가로경관 제고와 심미성 증진을 위한 경사형지붕 권장 • 지붕 및 외벽면을 조립식 패널자재로 마감불가
		색 채	• 주변여건을 고려한 따뜻한 계열의 색을 권장
		담 장	• 담장설치불허구간 지정(도면참조) • 개방형 휨스 또는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기 타	-

■ 교육시설 용지(유치원용지 제외)(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1~5		지정용도	• 학교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E-4, E-5 : 150%이하 • E-1 ~ 3 : 200%이하
		높 이	• E-4, E-5 : 4층 이하 • E-1 ~ 3 : 5층 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5m이상(도면참조)
		배 치	-
		형태·외관	-
		색 채	-
		담 장	• 개방형 휨스 및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기 타	-

■ 유치원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6 E7	지정용도	•유치원(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 •보육시설, 학원(건축물 연면적의 30%미만)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이상(도면참조)
		배 치	•건축한계선에 적합한 배치로 시각적 연속성과 방향성 유도
		형태·외관	•가로경관 제고와 심미성 증진을 위한 경사형 지붕 권장
		색 채	•주변여건을 고려한 따뜻한 계열의 색을 권장
		담 장	•개방형 웬스 또는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기 타	-

■ 공공청사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F1 F2	지정용도	•F1 : 소방파출소 및 그 부속용도 •F2 : 파출소 및 그 부속용도 •F3 : 주민자치센터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일반미관지구내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의 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이상(도면참조)
		배 치	•건축한계선에 적합한 배치로 시각적 연속성과 방향성 유도
		형태·외관	•가로경관 제고와 심미성 증진을 위한 경사형 지붕 권장
		색 채	-
		담 장	•개방형 웬스 또는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기 타	-

■ 사회복지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G1 G2	지정용도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 5층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이상
		배 치	• 건축한계선에 적합한 배치로 시각적 연속성과 방향성 유도
		형태·외관	• 가로경관 제고와 심미성 증진을 위한 경사형 지붕 권장
		채 색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따뜻한 계열색을 권장
		담 장	• 개방형 휨스 또는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기 타	-

■ 문화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M	지정용도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6조에서 정하는 문화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 5층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이상
		배 치	• 건축한계선에 적합한 배치로 시각적 연속성과 방향성 유도
		형태·외관	-
		채 색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따뜻한 계열색을 권장
		담 장	• 개방형 휨스 또는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기 타	-

■ 종교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H1 H2	지정용도	•종교시설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에 적합한 배치로 시각적 연속성과 방향성 유도
		형태·외관	-
		색 채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따뜻한 계열색을 권장
		담 장	•개방형 휨스 또는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기 타	-

■ 주차장 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1 I2	지정용도	I1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용도
			I2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용도 단,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진흥건축물의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동법 제6조의 행위 및 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에 적합한 배치로 시각적 연속성과 방향성 유도	
		형태·외관	-	
		색 채	-	
		담 장	•개방형 휨스 또는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기 타	-			



■ 차고지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J1-1~3 J2-1~6		지정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그 부속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가정비를 목적으로 한 정비공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동법 제6조의 행위 및 시설
		건 폐 율	• 20%이하
		용 적 률	• 50%이하
		높 이	• 10m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택시차고지(J2) 북측 도로변 5m이상
		배 치	• 건축한계선에 적합한 배치로 시각적 연속성과 방향성 유도
		형태·외관	-
		채 색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따뜻한 계열색을 권장
		담 장	• 개방형 휨스 또는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기 타	-

■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E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5m이상(도면참조)
		배 치	-
		형태·외관	-
		색 채	-
		담 장	• 개방형 휨스 및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기 타	-

■ 가스가압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L1 L2	지정용도	•가스가압장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이하
		용 적 률	•50%이하
		높 이	-
		건 축 선	-
		배 치	-
		형태·외관	-
		색 채	-
		담 장	-
		기 타	-

■ 영유아보육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ED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5층이하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2m이상(도면참조)
		배 치	•건축한계선에 적합한 배치로 시각적 연속성과 방향성 유도
		형태·외관	•가로경관 제고와 심미성 증진을 위한 경사형 지붕 권장
		색 채	•주변여건을 고려한 따뜻한 계열의 색을 권장
		담 장	•개방형 웬스 또는 1.2m이하의 생울타리 권장
		기 타	-

■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K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접한 필지와 동일용도(유리제조, 판매)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
		건 축 선	-
		배 치	-
		형태·외관	-
		색 채	-
		담 장	-
		기 타	-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부터 적정거리 이내의 구간, 완충녹지, 버스정류장, 가감속차로 등 공공 시설이 설치된 곳)이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차량진출입 설치 불가(지침도 참조) ○ 2개 이상의 도로가 접할 경우 가급적 통과교통이 적고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에 출입구 설치	
보행동선	○ 주거지 및 각 공공시설로의 용이한 접근을 위하여 폭 6~8m의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 보행의 효율성 및 쾌적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및 공원·녹지체계와 연계성 강화	
주차장	○ 장래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인근에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장 2개소 계획 ○ 대지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인접 필지와 서로 연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별 첨 (생략)

나.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별 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2호  
전농제1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  
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  
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  
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 : 전농12주택재개발정  
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신 구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일대	16,237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 <sup>2</sup> )	비율(%)	비 고
합 계		16,237.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445.3	15.0	
	도 로	834.1	5.1	
	공 원	815.0	5.0	
	공공청사	796.2	4.9	
택 지	택 지	13,791.7	85.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가)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 원	소공원	전농동 643번지 일대	-	증)815.0	815.0	

(나)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	8	국지 도로	132	전농동 644-32	전농동 644-104	일반 도로	-	구역의 현황도로 6m포함
기정	대로	3	92	25	보조 간선	1,400	전농동124 (시립대학앞)	답십리 (광로5호)	일반 도로	서고제743호 ('63.12.30)	-
변경	대로	3	92	25~27.5	보조 간선	1,400 (108)	전농동124 (시립대학앞)	답십리 (광로5호)	일반 도로		사업구역내 확폭(전농동 644-104~643-51 B=2.5m, L=108m)
기정	대로	3	130	25~31	보조 간선	2,100	전농동621-1 (왕산로)	전농동 광장	일반 도로	서고제187호 ('78.05.01)	-
변경	대로	3	130	25~31	보조 간선	2,100 (118)	전농동621-1 (왕산로)	전농동 광장	일반 도로		사업구역내 확폭(전농동 643-5~643-36 B=2.5m, L=118m)

(3)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신설	전농제12주택 재개발정비구역	16,237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111	-	-	111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전농제1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6,237	택지	13,791.7	동대문구 전농동 643번지 일대	53,075.09	공동주택	50 이하	240 이하	20~3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세대수 : 297세대 (분양 246세대, 임대 51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이하 : 104세대 (35.02%, 임대 51세대 포함)</li> <li>- 전용면적 60~85㎡이하 : 143세대 (48.15%)</li> <li>- 전용면적 85㎡초과 : 50세대 (16.83%)</li> </ul> </li> <li>임대주택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d>계</td> <td>40㎡이하</td> <td>40㎡~50㎡</td> <td>50㎡~60㎡</td> </tr> <tr> <td>51세대 (100%)</td> <td>22세대 (43%)</td> <td>21세대 (41%)</td> <td>8세대 (16%)</td> </tr> </table> </li> </ul>								계	40㎡이하	40㎡~50㎡	50㎡~60㎡	51세대 (100%)	22세대 (43%)	21세대 (41%)	8세대 (16%)
계	40㎡이하	40㎡~50㎡	50㎡~60㎡															
51세대 (100%)	22세대 (43%)	21세대 (41%)	8세대 (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함</li> </ul>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
주택재개발정 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전농1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 348세대</li> <li>• 계획 : 297세대</li> <li>• 감소 : 51세대</li> </ul>	해당사항 없음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02-2171-2699)와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4939)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 1. 정비사업의 명칭 : 역삼종합시장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6-22외 5필지 (구역면적 2,503.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3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

3. 사업추진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기 정	변 경
사업시행자	역삼시장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토다건설	역삼시장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변경 사유

- 사업시행자인 역삼시장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토다건설과의 공동 사업시행에서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계획 결정된 강동구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9.04.0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4호  
도시관리계획 『천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1996.08.0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78호(2001.06.02)로 지구단위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1996.8.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78호(2001.6.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천호지구 제

1종지구단위 계획을 지역여건 변화 및 관련제도의 개정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천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강동구 천호동 길동, 둔촌동 성내동 일원	916,351	감)261,529	654,822	'96.8.1 (서고216호)	• 천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06.11.30 (서고404호)

주)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916,351m<sup>2</sup>에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및 송파구 행정구역 제척, 천호뉴타운 구역계변경에 따라 면적 261,529m<sup>2</sup> 감소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변경사유
변경	천호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강동구 천호동 길동, 둔촌동 성내동 일원	654,822	강동구 행정구역을 고려한 구역조정과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천호뉴타운지구 제척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정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면 적 (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54,822	-	654,822	100.00	
주거 지역	소 계	501,656	-	501,656	76.61	
	제3종 일반주거지역	412,905	-	412,905	63.06	
	준주거지역	88,751	-	88,751	13.55	
상업 지역	소계	153,166	-	153,166	23.39	
	일반상업지역	105,876	-	105,876	16.17	
	근린상업지역	47,290	-	47,290	7.22	

## 2) 용도지구

##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지정일	비고
기정	-	천호 대로	중 심 지 미관지구	천호사거리 ~길동사거리	29,760	1,200	12	82.4.22 (서고164호)	
기정	-	선사로	중 심 지 미관지구	천호사거리 ~광진교 남단거리	5,584	250	12	04.12.10 (서고404호)	
기정	-	풍남로	중 심 지 미관지구	성내동 64-13~ 80-7	2,160	180	12	01.6.2 (서고178호)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교통시설

## 1) 도로

## ■ 도로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2	41,276.4 (4,507)	-	15	8,500 (1,524)	-	17	23,050 (2,104)	-	30	9,726.4 (879)	-
광로	2	20,450 (1,749)	-	-	-	-	2	20,450 (1,749)	-	-	-	-
대로	2	6,432 (739)	-	-	-	-	-	-	-	2	6,432 (739)	-
중로	9	6,630 (1,077)	-	5	5,903 (1,077)	-	2	451	-	2	276	-
소로	49	7,764.4 (942)	-	10	2,597 (447)	-	13	2,149 (355)	-	26	3,018.4 (140)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5	50	주간선도로	7,200 (1,619)	천호대교	상일동시계	일반 도로	71.47 (건고198호)	천호대로
기정	광로	2	28	50	주간선도로	13,250 (130)	천호동 광로5	과천시계	일반 도로	71.47 (건고198호)	둔촌로
기정	대로	3	64	25~54	주간선도로	3,432 (424)	천호동 광205	암사동 강변	일반 도로	71.47 (건고198호)	
기정	대로	3	110	25~31	주간선도로	3,000 (315)	풍납동 광5	암사동 강변	일반 도로	75.12.17 (건고201호)	선사로
기정	중로	1	84	20	보조간선도로	2,300 (565)	천호동	길동	일반 도로	71.47 (건고 198호)	성내길
기정	중로	1	389	20~29	보조간선도로	1,725 (400)	광장동 313-1	천호동 442-34	일반 도로	98.3.7 (서고72호)	광진교
기정	중로	1	406	20	보조간선도로	618 (217)	천호동 217-134	천호동550-6	일반 도로	01.6.2 (서고177호)	구천면길
기정	중로	2	412	15	보조간선도로	1,065	길동413-45	천호동550-6	일반 도로	01.6.2 (서고177호)	진황도길
변경	중로	1	412	20	보조간선도로	1,065	길동413-45	천호동550-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935 (447)	성내동193-3	성내동80-7	일반 도로	01.6.2 (서고177호)	성내 이면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90	천호동458-26	천호동457-98	일반 도로	01.6.2 (서고177호)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40	천호동457-98	천호동461-29	일반 도로	01.6.2 (서고177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70	천호동457-98	천호동457-12	일반 도로	01.6.2 (서고177호)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60	천호동461-141	천호동461-126	일반 도로	01.6.2 (서고177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324	천호동167-133	천호동153-74	일반 도로	90.10.24 (서고354호)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10	천호동164-10	천호동449-37	일반 도로	90.10.24 (서고354호)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40	천호동448-12	천호동448-11	일반 도로	93.4.9 (서고107호)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670 (355)	천호동201-28	천호동448	일반 도로	69.1.18 (서고3호)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52.4	둔촌동426	둔촌동426-11	일반 도로	03.07.21 (서고201호)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90	천호동 169-5	천호동164-15	일반 도로	69.1.18 (서고3호)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20	천호동462-39	천호동480-36	일반 도로	01.6.2 (서고177호)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115	천호동461-113	천호동464-8	일반 도로	69.1.18 (서고3호)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80	천호동461-30	천호동461-54	일반 도로	75.12.1 (서고196호)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64	천호동457-98	천호동431-5	일반 도로	94.5.16 (강동28호)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40	천호동410-169	천호동397-179	일반 도로	94.10.7 (강동47호)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230 (70)	천호동186-1	천호동167-156	일반 도로	93.4.9 (서고107호)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40	천호동167-156	천호동167-2	일반 도로	90.10.24 (서고354호)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130 (70)	천호동167-25	천호동170-2	일반 도로	90.10.24 (서고354호)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90	성내동160-46	성내동157-1	일반 도로	90.10.24 (서고354호)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120	천호동448-38	천호동448-47	일반 도로	93.4.9 (서고107호)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50	천호동161-3	천호동448-38	일반 도로	90.5.14 (서고135호)	
변경	소로	3	14	6	국지도로	50	천호동161-3	천호동448-3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5	8미만	국지도로	226	천호동159-2	천호동181-44	일반 도로	93.4.9 (서고 107호)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천호 3	20	보조간선 도로	195	천호대로	천호동166-43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2	1	15	국지도로	97	길동387-1	길동387-12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2	2	15	국지도로	354	길동384-5	길동412-8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1	12	국지도로	118	길동455	길동456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2	10	국지도로	158	길동424	길동417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4	10	국지도로	135	길동453	길동446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5	10	국지도로	166	길동414-10	길동414-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6	10	국지도로	130	성내동199	성내동450-17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7	10	국지도로	119	성내동245-40	성내동244-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8	10	국지도로	454	성내동199-6	성내동379-18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9	12	국지도로	135	둔촌동426-10	둔촌동426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10	10	국지도로	293	둔촌동436-4	둔촌동426-10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7	8	국지도로	134	길동416-15	길동415-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8	8	국지도로	113	길동451-1	길동454-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9	8	국지도로	107	길동457-4	길동456-5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0	8	국지도로	65	성내동180-13	성내동179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1	8	국지도로	120	성내동199-30	길동199-23	일반 도로	-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8	성내동378-7	성내동378-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3	8	국지도로	118	성내동379-15	성내동379-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6	6	국지도로	93	길동413-20	길동413-1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7	6	국지도로	90	길동413-44	길동413-29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8	6	국지도로	96	길동384-1	길동384-5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19	6	국지도로	96	길동385-6	길동385-10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20	6	국지도로	99	길동387-4	길동387-7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21	6	국지도로	99	길동389-1	길동388-6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22	6	국지도로	180	길동413-13	길동413-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23	6	국지도로	163	길동412-12	길동412-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24	6	국지도로	128	성내동245	성내동245-3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25	6	국지도로	62	성내동245-12	성내동245-8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26	6	국지도로	121	둔촌동435	둔촌동435-5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27	6	국지도로	144	둔촌동426-17	둔촌동425-1	일반 도로	-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중2-412	중1-412	폭원 15m→20m	중심지체계, 주간선도로와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보조간선도로 폭원확대	-
중1-	중1-천호3	신설	천호·성내제정비축진지구와 천호1중지구단위계획의 접경부 신설교차로의 선형개선을 통한 교차로 기하구조를 개선	현황도로8m →도시계획도로20m결정
중2-	중2-1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15m →도시계획도로15m결정
중2-	중2-2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15m →도시계획도로15m결정
중3-	중3-1	신설	중심지체계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10m →도시계획도로12m결정
중3-	중3-2	신설	중심지체계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10m →도시계획도로10m결정
소1-	소1-4	신설	중심지체계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10m결정
소1-	소1-5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10m →도시계획도로10m결정
소1-	소1-6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10m →도시계획도로10m결정
소1-	소1-7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10m →도시계획도로10m결정
소1-	소1-8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10m →도시계획도로12m결정
소1-	소1-9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보행환경 불량구간에 따른 도로확장계획수립)	현황도로10m →도시계획도로12m결정
소1-	소1-10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10m →도시계획도로10m결정
소2-	소2-7	신설	중심지체계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8m결정
소2-	소2-8	신설	중심지체계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4m →도시계획도로8m결정
소2-	소2-9	신설	중심지체계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4m →도시계획도로8m결정
소2-	소2-10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8m →도시계획도로8m결정
소2-	소2-11	신설	중심지체계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8m결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소2-	소2-12	신설	중심지체계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도시계획 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8m결정
소2-	소2-13	신설	중심지체계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도시계획 도로 결정	현황도로4m →도시계획도로8m결정
소3-	소3-14	도로선형일부변경 (도로선형정형화)	중심지체계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도로선형일부변경	-
소3-	소3-16	신설	중심지체계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도시계획 도로 결정	현황도로2.5m →도시계획도로6m결정
소3-	소3-17	신설	중심지체계의 원활한 교통연계를 위해 도시계획 도로 결정	현황도로2.5m →도시계획도로6m결정
소3-	소3-18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6m결정
소3-	소3-19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6m결정
소3-	소3-20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6m결정
소3-	소3-21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6m결정
소3-	소3-22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6m결정
소3-	소3-23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6m결정
소3-	소3-24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6m결정
소3-	소3-25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6m결정
소3-	소3-26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6m결정
소3-	소3-27	신설	현황도로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도로6m →도시계획도로6m결정

## 2) 도로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	천호동 167-195	2,573	-	2,573	02.10.10 (서고363호)	공원 지상 2,409m <sup>2</sup> 중복결정

## 나. 공간시설

## 1) 녹지

## ■ 녹지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천호동 472-23	2,190	-	2,190	93.11.5 (서고93-352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 2) 공원

## ■ 공원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 원	소공원	천호동 431-2	220.0	-	220.0	77.7.4 (건고125호)	화랑공원
기정	②	공 원	어린이 공원	천호동 167-195외2필지	2,409	-	2,409	02.10.10 (서고363호)	주차장 중복결정
기정	③	공 원	소공원	길 동 386-1	992.3	-	992.3	83.12.23 (서고693호)	성심공원

## 3) 공공공지

##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	성내동186-4외2필지	0	증)575	575	-	근린상업지역

##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변경사유
신설	①	공공공지	-	성내동186-4외2필지	현 공개공지에 대한 공공공지 결정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학교	중학교	천호동 447-9일대	5,957	감)122	5,835	서교고시 (87.2.17)	동신중학교

주)학교시설과 관련된 건축물·용적률등의 밀도는 학교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름

■ 학교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변경사유
변경	①	학교	중학교	천호동 447-9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진황도길 확폭 15m→20m)에 따른 학교시설 변경(학교→도로)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고
	기정	변경	
가구	A1, A2, B1, B2, B3, C1, C2, C3, C4 D1, D2, D3, D4 E1, E2, E3, E4, F	A1, A2, A3, B C1, C2, C3 D1, D2, D3 E1, E2, E3, E4 F1, F2, F3, F4 G1, G2, G3, G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가구규모 통합함에 따른 변경</li> </ul>

나. 획지 결정(변경)조서

1) 단위대지의 최대개발규모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최대 개발규모	간선도로변 (25M이상)	2,000㎡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개발규모 적용의 예외 사항</li> <li>- 공동개발이 지정된 대지와 기존대지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필지 및 특별계획구역</li> </ul>
	이면도로변	1,500㎡	1,500㎡	



## 2) 획지계획

구분	적용대상	비고
획지선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특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공동건축이 시행된 필지에 대해 획지선 부여</li> <li>• 획지 내 필지들은 개별 필지별 건축이 규제되고 획지구모의 공동개발 지정</li> <li>• 획지간 공동개발은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li> </ul>

## ■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획 지(m <sup>2</sup> )		결 정 사 유
		동 명	지 번	면 적	계	
A2	A2-①	천호동	459-4	83	442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459-5	174		
		천호동	459-13	185		
	A2-②	천호동	458-3	355	1009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458-4	261		
		천호동	458-11	119		
		천호동	458-12	73		
		천호동	458-13	153		
	A2-③	천호동	458-7	116	223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458-8	107		
A3	A3-①	천호동	432-2	465	795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432-5	330		
B	B-①	천호동	552-1	100	245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552-4	145		
	B-②	천호동	553-4	82	225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553-5	143		
	B-③	천호동	551-5	106	222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551-6	112		
		천호동	555-11	4		
	B-④	천호동	541-2	84	179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541-3	95			
C1	C1-①	천호동	166-100	93	324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167-9	231		
	C1-②	천호동	167-188	116	230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167-47	114		
C2	C2-①	천호동	449-49	2,315	2,388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449-50	73		

주) 획지면적은 공부상면적 (소수자리 절삭)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획 지(m <sup>2</sup> )		결 정 사 유
		동 명	지 번	면 적	계	
D1	D1-①	천호동	169-44	116	234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169-47	118		
	D1-②	천호동	162-7	162	280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162-4	155		
	D1-③	천호동	153-86	371	889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천호동	155-7	313		
천호동		155-4	205			
D3	D3-①	성내동	199	538	2,636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성내동	199-1	163		
		성내동	199-2	167		
		성내동	199-3	224		
		성내동	199-9	395		
	D3-②	성내동	199-5	706	1,367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성내동	199-6	661		
E1	E1-①	길 동	384-2	197	434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384-3	237		
	E1-②	길 동	385-1	410	500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385-2	90		
	E1-③	길 동	385-6	728	1,436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385-7	708		
	E1-④	길 동	385-4	448	709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385-5	261		
E2	E2-①	길 동	416-1	522	850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16-2	328		
	E2-②	길 동	416-8	299	969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16-9	299		
		길 동	416-10	338		
	E2-③	길 동	416-6	345	1,002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16-7	345			
길 동		416-18	312			
E3	E3-①	길 동	445-3	233	464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45-4	231		
	E3-②	길 동	448-1	148	658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48-2	396		
		길 동	449	114		
	E3-③	길 동	453-1	775	1,231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53-2	456			
E4	E4-①	성내동	245-2	168	336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성내동	245-33	168		

주) 획지면적은 공부상면적 (소수자리 절삭)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획 지(m <sup>2</sup> )		결 정 사 유
		동 명	지 번	면 적	계	
F2	F2-①	길 동	414-4	592	1,185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14-16	593		
	F2-②	길 동	414-9	420	1,343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14-14	420		
		길 동	414-15	503		
	F2-③	길 동	413-1	1,160	2,957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13-2	593		
		길 동	413-3	1,204		
		길 동	413-4	90		
	F2-④	길 동	413-8	425	648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13-6	96		
		길 동	413-5	127		
	F2-⑤	길 동	413-23	99	200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13-31	101		
F2-⑥	길 동	413-40	100	258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13-41	158			
F2-⑦	길 동	412-11	529	869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12-16	340			
F3	F3-①	길 동	456-2	330	1,656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56-5	1,326		
	F3-②	길 동	458-3	772	1,912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F4	F4-①	성내동	378-3	460	486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성내동	378-11	26		
	F4-②	성내동	379-2	412	710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성내동	379-6	20		
		성내동	379-5	278		
	F4-③	성내동	379-3	267	356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성내동		379-38	89			
G1	G1-①	길 동	417	274	439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18	165		
	G1-②	길 동	429	568	981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길 동	430	413		
G2	G2-①	둔촌동	435-3	719	1,508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둔촌동	435-9	710		
		둔촌동	435-10	79		
	G2-②	둔촌동	435-7	1,135	2,273	· 이미 공동개발 행위가 일어난 필지에 대해 획지 계획
		둔촌동	435-8	1,138		

주) 획지면적은 공부상면적 (소수자리 절삭)

## (3) 공동개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선도로변 일대 중심기능수행을 위해 개발가능지에 대해 추가 공동개발(지정)계획</li> <li>이면부의 과소필지, 부정형 필지에 대해 적정 개발규모 유도를 위해 공동개발(지정)계획</li> </ul>	-

## ■ 공동개발(지정)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번호	구분	위치		면적(m <sup>2</sup> )		결정사유
		동명	지번	필지	계	
A1	1	천호동	467-18	26	294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7-34	6		
		천호동	467-16	162		
		천호동	467-17	100		
	2	천호동	467-14	155	280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7-22	26		
		천호동	467-15	89		
	3	천호동	467-8	10	287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7-11	169		
		천호동	467-13	86		
	4	천호동	467-8	29	246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6-9	3		
		천호동	466-18	201		
	5	천호동	467-12	3	297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6-19	2		
		천호동	466-9	40		
	6	천호동	466-3	249	554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6-9	48		
		천호동	465-3	303		
		천호동	465-7	186		
	7	천호동	461-37	17	417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1-88	12		
		천호동	463-98	36		
		천호동	461-113	88		
		천호동	463-38	97		
		천호동	461-61	31		
	8	천호동	461-62	68	430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3-16	114		
천호동		463-67	19			
천호동		461-101	142			
천호동		461-63	167			
	천호동	461-103	79			
	천호동	461-75	36			
	천호동	461-76	6			

가구 번호	구분	위치		면적(m <sup>2</sup> )		결 정 사 유
		동명	지번	필지	계	
A1	9	천호동	461-13	125	278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1-65	136		
		천호동	461-66	17		
	10	천호동	461-30	100	257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1-64	157		
	11	천호동	461-18	84	354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1-48	139		
		천호동	461-72	131		
	12	천호동	461-16	75	303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1-79	72		
		천호동	461-15	156		
	13	천호동	461-3	74	322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61-81	69			
천호동		457-29	73			
천호동		457-113	106			
A2	1	천호동	457-13	117	492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57-97	126		
		천호동	457-3	123		
		천호동	457-96	126		
	2	천호동	457-91	127	253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57-95	126		
	3	천호동	457-104	120	249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57-94	129		
	4	천호동	457-12	120	269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57-93	149		
	5	천호동	457-69	116	212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57-114	96		
	6	천호동	459-26	109	219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59-25	93		
천호동		459-17	17			
A3	1	천호동	432-10	3,213	3,253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29-16	40		
	2	천호동	456	1,400	4,243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456-1	1,086		
		천호동	456-2	331		
		천호동	456-3	285		
		천호동	456-5	130		
		천호동	456-6	160		
		천호동	456-7	183		
		천호동	456-8	146		
		천호동	456-9	350		
		천호동	456-20	12		
		천호동	456-22	139		
천호동	456-24	21				

가구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결 정 사 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B	1	천호동	550-4	122	360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50-5	99		
		천호동	550-6	139		
	2	천호동	550-10	417	467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50-11	33		
		천호동	550-13	17		
	3	천호동	551-10	238	311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51-11	73		
	4	천호동	555-2	223	282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55-3	59		
	5	천호동	554	143	211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54-1	68		
	6	천호동	541	97	196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41-1	99		
	7	천호동	541-4	94	223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41-5	129		
	8	천호동	556-3	357	607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56-5	69		
		천호동	556-6	102		
		천호동	556-7	79		
	9	천호동	559-1	123	339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60-1	216		
	10	천호동	559-2	142	430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59-3	152		
		천호동	560-2	136		
	11	천호동	559-4	112	321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59-5	93		
		천호동	560-3	116		
	12	천호동	559-6	79	195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60-4	116		
13	천호동	191-40	218	228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191-47	10			
14	천호동	557-3	69	374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57-4	229			
	천호동	557-5	76			
15	천호동	558-8	195	367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58-9	99			
	천호동	558-10	73			
16	천호동	561-1	33	182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61-2	149			
17	천호동	561-3	83	189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61-4	106			
18	천호동	562-7	89	234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562-8	145			

가구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결 정 사 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B	19	천호동	191-18	155	518	· 맹지에 대한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191-19	238		
		천호동	191-50	23		
		천호동	166-77	102		
	20	천호동	166-78	162	612	· 맹지에 대한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166-81	450		
C1	1	천호동	165-5	99	304	· 맹지에 대한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165-12	205		
D1	1	천호동	162-6	60	235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162-13	99		
		천호동	162-14	76		
	2	천호동	154-17	165	271	· 맹지에 대한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159-8	106			
D2	1	천호동	161-35	154	297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161-43	413		
	2	천호동	161-4	109	275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161-6	63		
		천호동	164-28	53		
		천호동	164-30	10		
	3	천호동	164-31	40	480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161-5	126		
		천호동	161-13	172		
		천호동	161-21	106		
		천호동	161-23	46		
		천호동	161-37	23		
	4	천호동	161-38	7	157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161-5	22		
		천호동	161-11	69		
		천호동	161-28	56		
	5	천호동	161-29	10	264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161-18	198		
		천호동	161-20	56		
	6	천호동	161-31	10	694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천호동		157-3	344			
E2	1	천호동	158-3	350	370	·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16-13	162		
	2	길 동	416-14	208	576	
		길 동	415-6	165		
		길 동	415-7	411		
E3	1	길 동	446-2	418	812	·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47	394		
	2	길 동	452-1	250	500	
		길 동	452-18	250		

가구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결 정 사 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E4	1	성내동	199-11	245	2,562	·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성내동	199-12	241		
		성내동	199-13	241		
		성내동	199-14	844		
		성내동	199-23	991		
	2	성내동	199-16	393	786	·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성내동	199-31	393		
	3	성내동	244-2	360	1,088	·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성내동	244-3	728		
F1	1	길 동	387-3	185	376	·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387-16	191		
	2	길 동	387-12	209	410	·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387-15	201		
	3	길 동	389-3	172	351	·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389-4	179		
	4	길 동	389-5	843	855	·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389-11	12		
F2	1	길 동	414-5	300	613	·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14-18	313		
	2	길 동	413-21	95	390	·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13-22	95		
		길 동	413-29	100		
		길 동	413-30	100		
	3	길 동	413-24	106	209	·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13-32	103		
	4	길 동	413-25	108	424	·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13-26	108		
		길 동	413-33	105		
		길 동	413-34	103		
	5	길 동	413-37	92	295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13-38	101		
	6	길 동	413-39	102	341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13-42	174			
7	길 동	413-43	167	880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12-9	396			
3	길 동	412-15	484	836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58-6	418			
F3	1	길 동	456	413	792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56-1	379		
	2	길 동	457-3	719	1,442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57-4	723		
	3	길 동	458-2	418	836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길 동	458-6	418		



가구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결 정 사 유	
		동 명	지 번	필 지	계		
F4	1	성내동	378-15	186	551	· 부정형,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성내동	378-16	180			
		성내동	378-17	185			
	2	성내동	379	397	723	·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도	
		성내동	379-1	326			
	3	성내동	379-26	169	2,144	·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성내동	379-27	1,287			
		성내동	379-28	12			
		성내동	379-29	205			
		성내동	379-30	27			
		성내동	379-32	174			
		성내동	379-33	198			
	4	성내동	379-34	36	2,064	·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성내동	379-17	464			
		성내동	379-18	343			
		성내동	379-19	169			
		성내동	379-20	141			
		성내동	379-21	333			
		성내동	379-22	5			
		성내동	379-24	199			
	G1	1	길 동	425	655	1,085	·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길 동	425-1	430		
	G2	1	둔촌동	436-3	764	2,011	· 간선변 적정개발규모 유도
			둔촌동	436-4	1,247		

주) 필지면적은 공부상면적 (소수자리 절삭)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친호지역 중심기능 육성을 위한 부적합 용도규제 / 최소한의 불허용도 규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제38조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불허
- 불허용도가 다른 필지 간 공동개발시 민간지침 제7조에 정한 규정을 따름

구분	건 물 전 체 불 허 용 도	
	기 정	변 경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li> <li>•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li> <li>•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li> <li>• 창고시설    • 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한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li> </ul>	(1) 간선 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li> <li>•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li> <li>• 창고시설 / 공장 / 동식물관련시설</li> </ul>
	[1층 전면불허용도] • 건축자재    • 간이공장소(목공소,철공소,알루미늄공업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li> <li>•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li> <li>•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li> <li>•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li> <li>• 위락시설    • 공장</li> <li>•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li> <li>•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한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단, 학교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li> </ul>	(2) 상업 지역 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li> <li>-기존정비공장 증축 허용</li> <li>•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li> <li>•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li> <li>• 창고시설 / 공장</li> </ul>
	[1층 전면불허용도] • 건축자재    • 간이공장소(목공소,철공소,알루미늄공업등)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li> <li>•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창고시설    • 공장</li> <li>•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한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단, 학교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li> </ul>	(3) 준주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li> <li>•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li> <li>•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li> <li>• 창고시설 / 공장</li> <li>•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li> </ul>
	[1층 전면불허용도] • 건축자재    • 간이공장소(목공소,철공소,알루미늄공업등)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li> <li>• 창고시설    • 공장</li> <li>•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의한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단, 학교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li> </ul>	(4) 주거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li> <li>•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li> </ul>
	[1층 전면불허용도] • 건축자재    • 간이공장소(목공소,철공소,알루미늄공업등)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 천호지역중심기능 육성을 위한 중심기능용도 입지 유도
- 업무, 상업중심의 용도 적극 도입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계획 수립
- 권장용도가 다른 필지 간 공동개발 시 민간지침 제8조에 정한 규정을 따름

구 분	권장용도	비 고
기정	문구거리 • 특산품 전시·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전층 권장
	공구거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구, 철물, 전기용품등 일용품 소매점	1층 권장
	금융·업무거리 • 새로운 강동구의 상징적인 거리 조성	전층 권장
	권장용도 인센티브 • 전층권장용도 - 전체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당해용도로 건축한 경우 권장용도 수용 • 1층권장용도 - 1층 총면적의 30% 이상을 당해 용도로 건축한 경우 권장용도 수용	-
구 분	권장용도	비 고
변경	간선가로 중심기능지역 A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이면부 지원기능지역 B ①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②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③ A구역 카페거리 조성 : 저층부 1~2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서점, 휴게·일반음식점 ④ 문구거리 : 저층부 1~2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문구완구, 도소매, 휴게·일반음식점	별도 사항이 없을 경우 B-①,B-②적용
	일반주거지역 C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의류·완구·서적),서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권장용도 인센티브 • 권장용도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계획 적용 ① 간선가로 중심기능지역(A)은 권장용도 30%이상 설치(지상층 업무시설 20%이상 설치) ② 그 외 지역 권장용도 20%이상 설치 ③ 특별계획구역 별도운용 - 업무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계획 적용 ① 간선가로중심기능지역(A) 권장용도 30%이상 중 20%이상 설치 ② 특별계획구역(C2, D2) 30%이상, 특별계획구역(C3) 50%이상 배치 (단, C3특별계획구역의 경우 SHIFT 도입시 업무시설 30%이상 배치)	-

다.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간선 교차로변 시각통로 확보를 위한 건폐율 규제
- 특별계획구역의 조건부 용도지역 변경 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준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계획
- 건축물의 밀도가 다른 필지 간 공동개발 시 민간지침 제9조에 정한 규정을 따름

1)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계획내용			건폐율		비 고
			일반지역	교차로	
기정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천호구역내 모든 지역의 건폐율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름.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준주거지역	60% 이하	50% 이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5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50% 이하	
		학교	30% 이하		
변경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용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시 건폐율 30%이하 적용
		준주거지역	60% 이하	50% 이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50% 이하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50% 이하	
		학교해제지역 (D2특별계획구역)	30% 이하		

주) 학교시설과 관련된 건폐율은 학교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름

## 2) 건축물의 용적률

용도지역	기정			변경		
	접도조건 (m)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접도조건 (m)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50 이상	700 이하	800 이하	50 이상	550 이하	800 이하
	25 이상	400 이하	650이하	25 이상	400 이하	650 이하
	20~10 이상	500 이하	600 이하	20~10 이상	400 이하	60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 미만	400 이하	500 이하	10 미만	350 이하	5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300 이하	500 이하	-	300 이하	500 이하
	-	400 이하	500 이하	-	350 이하	500 이하
준주거지역	-	300 이하	360 이하	-	250 이하	360 이하
	-	350 이하	400 이하	-	300 이하	4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250 이하	-	200 이하	250 이하

주1) 특별계획구역의 용적률은 별도로 정함

주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계획운영)제2항에 의거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1+1.3×가중치×(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후대지면적)]이하. 단, 가중치는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2개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비율

주3)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 사업부문의 용적률계획에 따름

## 3)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기준

## ■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기정)

지구단위계획 내용		완화 기준	비고
공동 건축	규제사항인 경우	40% 이하	예시)기준용적률이 300%, 공동건축 규제사항(40%)의 경우 허용용적률은 340%적용
	권장사항인 경우	30% 이하	
경사지붕의 처리 (5층이하 건축물만 적용)		20% 이하	
경사지붕색채 (5층이하 건축물만 적용)		10% 이하	
건축한계선		(조성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	
전층권장용도		(권장용도 누계면적÷총지상연면적) × 기준용적률× 1.5	
1층권장용도		(지상접지층 권장용도면적÷총지상연면적) × 기준용적률×1.5	
공개공지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 / 총대지면적} ×기준용적률×1.5	
전면공지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 총대지면적} ×기준용적률×1.5	
공동주차장조성		기준용적률 × 0.1	
공공보행통로 (특별계획구역내 통로조성준용)		(조성면적÷총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1.5	
상한용적률		시행지침 제12조 참조	

주) 건축완화 기준면적의 조성면적 산정은 종전 미관지구도로변의 대지인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후퇴 부분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변경)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 용적률에서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단, 인센티브 적용유형 ‘역세권’의 경우 의무형 인센티브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더라도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를 대체할 수 없다.),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도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권장용도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주차장제외)에 대하여 간선가로 중심가능지역(A)은 권장용도 30%이상 설치 (지상층 업무시설 20%이상 설치), 그 외 지역은 권장용도 20%이상 설치시에 부여하며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운용 한다.
6. 획지단위개발 및 공동개발(지정)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개발규모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 건축한계선 인센티브는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의무면적(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부분의 면적) 및 전면공지 조성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8. 전면공지 인센티브 부여는 전면공지가 지정된 면적에서 건축한계선 의무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9. 공공기여시설(최상층개방시설 및 노유자시설)은 특별계획구역에 한하여 300m<sup>2</sup>이상 설치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0. 현재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한다.
11.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 할 수 없다.
12. 의무형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공통사항

항 목	세 분	완화기준	비 고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0.05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 기준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에너지저감율</th> <th>에너지성능지표</th> <th>친환경건축물인증</th> <th>인센티브 량</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33.5% 이상</td> <td>81점 이상</td> <td>85점 이상</td> <td>기준용적률×0.08</td> </tr> <tr> <td>2등급</td> <td>23.5~33.5% 미만</td> <td>74~81점 미만</td> <td>75~85점 미만</td> <td>기준용적률×0.05</td> </tr> </tbody> </table>	구분	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 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8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0.05
구분	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인증	인센티브 량													
1등급	33.5% 이상	81점 이상	85점 이상	기준용적률×0.08													
2등급	23.5~33.5% 미만	74~81점 미만	75~85점 미만	기준용적률×0.05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유형

용도지역	공간특성	유형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계획방향
일반상업지역	간선변	R1	300	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유도</li> <li>공동개발로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휴식 및 보행공간 마련</li> </ul>
		R2	400	650	
		R3	550	800	
	이면부	R7	350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개발로 주변 대지규모와 조화를 도모하고 대지내공지 확대 등으로 가로의 개방성 확대</li> </ul>
		R8	400	600	
			550	800	
근린상업지역	간선변	P1	300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 및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지역중심성 확보</li> <li>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li> </ul>
			350	500	
준주거지역	간선변	O2	250	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확대와 공동개발로 정연한 대지규모와 가로환경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li> </ul>
	이면부	O3	300	4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면부	Y1	20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철 시설에 대해 대지내 설치로 가로환경개선 및 보행환경개선</li> <li>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고취</li> <li>최상층개방시설 및 노유자시설 설치로 공공성 증대</li> </ul>
역세권		R4	300	400	
		R5	300	600	
		R6	400	600	
		O1	260	360	

□ 인센티브유형 : R1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A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기준/허용용적률		300/60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유도 공동개발로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휴식 및 보행공간 마련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9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0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5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1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3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2.0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유형 : R2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A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기준/허용용적률		400/65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유도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6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0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5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1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3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2.0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유형 : R3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C2, D2, E3, F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기준/허용용적률		550/800	
중점계획목표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 및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지역중심성 확보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45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2.5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5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1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3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2.0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유형 : R7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E2, E3, F1, F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50/500	
중점계획목표		· 공동개발로 주변 대지규모와 조화를 도모하고 대지내공지 확대 등으로 가로의 개방성 확대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5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0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5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1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3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유형 : R8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E2, E3, F1, F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400/600, 550/800	
중점계획목표		· 공동개발로 주변 대지규모와 조화를 도모하고 대지내공지 확대 등으로 가로의 개방성 확대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35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0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5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1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3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유형 : P1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C3, D3, E4, F4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기준/허용용적률		300/500, 350/500	
중점계획목표		·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 및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지역중심성 확보 ·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7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3.0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5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1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3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2.0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유형 : O2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A1, A2, G1, G2, G3, G4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간선변 (이면부지원기능지역(B)으로 권장용도 20%이상 설치시 적용)	
기준/허용용적률		250/360	
중점계획목표		·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 및 공동개발 유도를 통한 지역중심성 확보 ·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제외한 건축연면적) × 0.6
	대지내공지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4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5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1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0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2.0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유형 : O3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B, C1, D1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00/400	
중점계획목표		· 공동개발로 주변 대지규모와 조화를 도모하고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가로환경 조성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제외한 건축연면적) × 0.5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5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15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0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유형 : Y1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A2, C1, D1, E4, F4, G3, G4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200/250	
중점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확대와 공동개발로 정연한 대지규모와 가로환경 조성 및 정주환경 개선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0.1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제외한 건축연면적) × 0.37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0.1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1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5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 인센티브유형 : 역세권 R4, R5, R6, O1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A3, C2, C3, D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A3, C2, D2 / 준주거지역 C3	
위치특성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 C2, C3, D2]	
기준/허용용적률		R4: 300 / 400    R5: 300 / 600 R6: 400 / 600    O1: 260 / 460	
중점계획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시설에 대해 대지내 설치로 가로환경개선 및 보행환경개선</li> <li>·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고취</li> <li>· 최상층개방시설 및 노유자시설 설치로 공공성 증대</li> </ul>	
항목	세부	완화기준	
유도형	건축물용도	공공기여시설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해당층 바닥면적) × 0.05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제외한 건축연면적) × 0.47
	도시 경관개선	지하철 및 지중화시설 건축물 내 설치	기준용적률 × 0.12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 0.40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25
		쌈지형, 침상형,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65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2.5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0.54	
의무형	친환경계획요소	공통사항 참조	

주1) 공공기여시설은 300㎡ 이상으로 최상층개방시설(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및 노유자시설에 한함

라.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와 높이계획연계 및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높이계획 수립
  - 기준높이 : 가장 넓은 도로의 사선제한 2배 이하 또는 블록평균높이, 최고높이 : 기준높이의 1.5배 이하
  - 사선제한을 배제한 가로구역별 높이계획 수립(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사선제한, 일조권 적용)
  -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운영 : 높이인센티브(권장용도, 공개공지, 공공시설)를 통한 도시관리 도모
- 높이계획이 다른 필지 간 공동개발시 민간지침 제11조에 정한 규정을 따름

1) 건축물의 높이

구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2001)	천호대로변 대형필지	25층(83m) 이하	• 사선제한과 층수, 높이 동시규제		
	천호대로변 북측 전면부	20층(66m) 이하			
	천호대로변 남측 전면부	15층(50m) 이하			
	천호대로 이면부	10층(33m) 이하			
	기타지역	사선제한에 의한 높이규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준높이(m)		최고높이(m)	
변경(안)	구천면길 남쪽 진황도길 북측/이면부	30m 이하	50m 이하	• 사선제한 배제  • 제3종일반주거지 역은 사선제한 적 용	
	천호대로변 이면부 진황도길 전면부	60m 이하	80m 이하		
	선사로/ 성내동길 동측, 둔촌로 서측	80m 이하	100m 이하		
	천호대로 남북측	100m 이하	120m 이하		
	특별 계획구역	C2	100m 이하		150m 이하
		C3			120m 이하
		D2			130m 이하
	길동 사거리	일반상업지역	100m 이하		120m 이하
근린상업지역		100m 이하			
	준주거지역	80m 이하	100m 이하		

- 주1)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 : 기준높이에 높이완화계획을 통해 높이인센티브를 더한 높이 적용 (기준높이 + 인센티브높이 ≤ 최고높이)
- 주2) 「건축법」 제60조제3항의 도로사선제한(H≤1.5D)은 적용하지 않음. 단,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건축법」 제60조에 의거한 사선 제한을 적용한다.
- 주3) 인센티브 높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준높이 이하로 건축 가능함

2) 높이 완화계획

항 목		
인센티브 높이	권장용도	기준높이×(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공개공지	기준높이×(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공공시설제공 (기부채납)	기준높이×(제공면적/대지면적)
	공공기여시설	기준높이×0.1

- 주1) 공공기여시설은 300㎡ 이상으로 최상층개방시설(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및 노유자시설에 한함

마.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

1)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 간선도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 확보, 이면도로의 폭원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선 지정
- 대지내 공지 조성 후 공공의 보행 및 이용에 개방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미관지구 내 후퇴선인 3m제외)
  - 건축선에 의해 후퇴부분과 전면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 설치 금지
- 4m이하인 현황도로에 지정된 건축한계선은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과 동일하게 봄

구 분	적용지역	기 정	변 경	비 고
건축 한계선	간선교차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5m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5m	• 도로결정에 따라 건축한계선 일부 축소
	간선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5m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5m	
	이면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3m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3m	

2) 건축물 형태 및 색채

- 연속성 및 통일성, 조화를 이루는 가로경관 조성
-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도시미관 증진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 형 태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함. 단,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포함)심의를 통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구부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용도(점포) 1개당 2개소이상 출입구 설치 규제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벽면 노출 불허 단, 벽면 조명, 벽화 장식 처리등 허가권자가 미관상 인정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함
	고층부 탐상형	• 업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에 대한 고층부 건축물의 전면길이는 30m이하로 하며,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분리하는 것으로 함 • 고층부 탐상형 건축물은 기단부의 높이가 30m이하이며 기단부의 끝 선에서 고층부로 5m이상 후퇴시키도록 함..
건축물 외 관	측면 이격거리의 처리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 이격거리 3m미만 및 이격부분이 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장, 문으로 차폐
	야간조명	• 폭 25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의 경우 10층 이상 신·개축시 가로변 외벽에 야간조명 권장

## 3) 환경친화적 건축물의 조성

- 자연자원과 생태에너지를 활용한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

구 분	계획내용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권장</li> <li>• 설치대상 및 시설기준 등의 조성기준은 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름</li> </ul>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옥상(2층 이상의 옥외공간)에는 조경기준 및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 기법』에 적합하게 옥상녹화 조성 권장</li> <li>• 옥상녹화 조성시 당해 건축면적의 50%이상일 경우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 기법』을 참조하여 조성하며 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 권장</li> </ul>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디자인 서울거리 강동구 천호대로 조성계획』과 연계를 위하여 전면공지 디자인가이드라인 제시
- 간선가로변 및 주요 보행결절부에 휴게공간 또는 보행공간 조성 유도
- 지하철·지하보도와 연계한 휴게공간 및 보행공간 조성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기정	변경
전면공지	간선교차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5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결정 및 보행공간 조성에 따라 건축한 계선 일부 축소</li> </ul>
	간선가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폭의 선형 보행공간 확보</li> <li>• 일정간격의 식재계획</li> <li>• 조경 및 공개공지를 집합적으로 배치, 휴게공간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서울거리 강동구 천호대로 조성계획』과 연계를 위한 전면공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li> </ul>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가로, 각각부 공개공지 설치</li> <li>• 건축선과 연계하여 일체성 있는 가로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개발예정지(특별계획구역) 및 보행결절부 공지 지정</li> </ul>
쌈지형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가로변 및 주요보행 결정부 휴게공간 또는 보행공간 조성 권장(45㎡이상, 폭 5m 이상)</li> </ul>
침상형공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지하보도와 연계되는 보행결절부에 일반대중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휴게공간 및 보행공간 조성</li> </ul>



나.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간선가로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가로변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차량출입금지구간 설정하고 이면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을 유도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동선	차량출입 금지구간	• 간선도로변에서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차통로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2개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6m이상 도로 중 좁은 도로에 주차통로 지정 • 차량 진출입이 허용되는 대지의 경우 인접대지와 공동주차 출입구 지정	폭25m 이상 도로변
보행동선	공공보행통로	• 대규모 획지로 인하여 단절된 가로간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대지 내 보행통로 확보	구역내
	공동주차 출입구	• 주차장 출입구의 전면부 설치로 인한 가로연속성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차출입구 조성 권장	구역내

1) 차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기정	변경	
차량동선	차량출입 금지구간	A3, C2, C3, D2, D3, E3, E4, F3, F4, G1, G2, G3, G4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차량출입금지구간 길이 조정	• 주차통로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A1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신설	
주차장	공동주차 출입구	B	3개소	3개소	• 변경없음
		C3	2개소	삭제	• 특별계획구역 지정
		D1	3개소	삭제	• 1개필지 합필 • 2개소 공동개발지정계획
		D2	3개소	삭제	• 필지합필 및 계획변경 (2개소 삭제)
		E1	1개소	삭제	• 획지계획에 의한 삭제
		E2	8개소	삭제	• 획지계획 및 계획변경
		E3	3개소	1개소	• 2개소 공동개발 지정계획 • 강동구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인한 계획변경 • 1개소 신설
		E4	4개소	삭제	• 3개소 공동개발지정계획
		F1	1개소	삭제	• 필지 합필로 인한 공동주차 출입구 삭제
		F2	2개소	삭제	• 공동개발지정계획
		F3	5개소	1개소	• 획지 계획 및 계획변경
		F4	2개소	삭제	• 공동개발지정계획
G1	2개소	1개소	• 공동개발지정계획		
G2	2개소	삭제	• 공동개발지정계획		

## 2) 보행동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가구번호	기정	변경		
보행동선	공공보행 통로	B	1개소(2m)	삭제	-
		C2	2개소(6m)	신설 2개소(6m이상)	특별계획구역 지정
		C3	1개소(4m)	삭제	특별계획구역 지정
		D1	1개소(2m)	삭제	-
		D2	-	신설 1개소(6m이상)	특별계획구역 지정
		D3	1개소(2m)	삭제	-
	보차혼용 통로	A1	5개소(6m, 4m, 2m)	삭제	특별계획구역 지정
		A2	1개소(3m)	삭제	-
		B	3개소(6m, 3m, 2m)	삭제	-
		C3	1개소(6m)	삭제	특별계획구역 지정
		D2	2개소(3m)	삭제	특별계획구역 지정
	보행자 전용도로	A1	2개소(4m)	삭제	특별계획구역 지정
		A3	1개소(6m)	삭제	-
		F3	1개소(4m)	삭제	-
		F4	2개소(6m, 4m)	삭제	-
		G1	1개소(3m)	삭제	-
		G2	1개소(6m)	삭제	-
		G3	1개소(6m)	삭제	-

##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대규모 개발예상지에 대해 중심기능 유지, 공공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개발거점의 계획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모

## 1) 특별계획구역의 총괄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C2 (천호 448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동 448번지 일대	26,840.0	증)3,431.5	30,271.5	서고178호 (2001.06.02)
기정	D2 (천호동447번지일대)	강동구 천호동 447번지 일대	10,087.0	-	10,087.0	서고85호 (2007.04.05)
신설	A1 (천호동 460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동 460번지 일대	-	증)55,448.5	55,448.5	-
	C3 (성내 19번지 일대)	강동구 성내동 19번지 일대	-	증)28,742.7	28,742.7	-

## (1) A1(천호동 460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 본 천호동 460번지 일대는 강동구의 관문위치로 한강과 연계개발 및 천호대교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이 도모될 수 있도록 계획지침 마련

## ■ 구역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A1 (천호 460번지 일대)	천호동 460번지 일대	55,448.5	특별계획구역 획지분할가능선계획

## ■ 계획지침

구분	내용		비고
	특별계획구역(신설)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 불허용도 : (4) • 권장용도 : 문화시설(전체 연면적의 30%이상 문화시설로 조성시 용도지역 용도완화)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 / 허용용적률 : 250%		※공동주택건립시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준수
높이	• 사선제한 / 일조권 적용		※공동주택 : 일조권, 도로사선등 기타법에 의한 규제
대지내공지	• 한강연접부 쌈지형공지 마련 • 건축선계획 : 도로변 각각 1m		
건축물의 형태	• 한강연접부는 탑상형으로 배치하여 경관축 조성		
공공시설	도로	• 도로확대 및 조정(2개소) ① 4m → 12m    ② 5m → 12m	*주민공동시설 내 문화기능,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도입
	공원 및 녹지	• 한강변 녹지 폭원확대(1개소) : 15m→30m • 구역면적의 10%이상 설치	
	공공공지	• 천호대교변 5m 공공공지 신설	
	공공기여	• 공동주택 건립시 주민공동시설 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도입	

주1) 공동주택 건립시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준수

주2)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46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중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 준수

주3)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한강르네상스 수변지역 공공성 재편계획』 및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 수립(계획설명서 참조)

주4) 세부개발계획수립시 A2가구(街區) 제3종일반주거지역 포함여부 검토

(2) C2(천호동 448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 2001년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으로 천호지역중심성 확보를 위한 주변지역의 일부를 포함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
- 업무중심기능 유치(간선변 전면부 배치), 대중교통 및 보행 접근성 개선으로 중심지 활성화 유도

■ 구역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C2 (천호 448번지 일대)	천호동 448번지 일대	30,271.5	2001 지구단위계획 D3

■ 계획지침

구 분	내 용	
	기 정	변 경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	• 권장용도 : 주거, 상업, 업무복합	• 불허용도 : (1) • 권장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불허), 판매시설, 노유자시설(300㎡이상)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주차장제외)의 지상층 30%이상 설치시 권장용도 인정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500% • 허용용적률 : 600% 이하	• 기준용적률 : 400% • 허용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25층(83m) • 기준높이 : 100m • 최고높이 : 150m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쌈지공원)를 천호대로와 기존 공개공지에 접하여 대지면적의 10%이상 배치 • 건축한계선 : 천호대로, 진황도길, 학교연접부 5m	[권장사항] •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 -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 •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 공공보행통로 설치 • 전면공지에 수경공간 배치
건축물의 형태	-	• 고층부 탐상형 배치 • 간선도로변 업무시설 배치(주거기능 전면배치 불허) [권장사항] • 최상층개방시설 배치 :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도로 • 도로 폭원 확대 ② 폭원확대 : 8m → 15m • 도로일부폐도(소로 2-8)	도로 • 도로 폭원 확대 ① 폭원확대 : 15m → 20m ② 폭원확대 : 8m → 20m ③ 폭원확대 : 6m → 15m • 도로일부폐도(소로 2-4)

주1) 인센티브 용적률은 역세권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 (3) C3(성내동 19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결하고 이면부 부정형 필지와 과소필지가 위치해 통합개발을 통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
- 재정비와 연계한 이면도로 계획      • 간선전면부 업무시설 배치

## ■ 구역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C3 (성내 19번지 일대)	성내동 19번지 일대	28,742.7m <sup>2</sup>	

## ■ 계획지침

구분	내 용		비 고
	특별계획구역(신설)		
용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상업지역 → 준주거지역</li> <li>•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li> </ul> ※ 계획지침을 준수하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일원화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 : (1)</li> <li>• 권장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불허), 판매시설, 노유자시설(300m<sup>2</sup>이상)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주차장제외)의 지상층 50%이상 설치시 인정</li> </ul> ※ 장기전세주택 도입시 : 업무시설 지상부 30%이상 설치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60%    • 허용용적률 : 360%이하		상한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을 통해 완화 가능
높이	• 기준높이 : 100m 이하    • 최고높이 : 120m 이하		-
대지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 천호대로면 5m, 이면도로 1m, 우측연접부 2m</li> </ul> [권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li> <li>-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li> <li>•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 통로 설치 / 전면공지에 수경공간 배치</li> </ul>		-
건축물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도로면 업무시설 배치 / 고층부 탑상형 배치</li> </ul> [권장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상층 개방시설 배치 :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li> </ul>		-
공공시설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폭원 확대 및 신설</li> <li>① 폭원확대 : 10m → 15m</li> <li>② 도로신설 : 15m</li> </ul>	-

주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일원화

주2) 인센티브 용적률은 역세권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주3) 장기전세주택 도입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적용

(4) D2(천호동 447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 2007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학교용지가 해제된 특별계획구역으로서 학교이전에 따른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
- 개발지와 학교 연계동선 계획, 간선가로 공지계획
- 간선변 중심기능 부여

■ 구역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D2 (천호동 447번지일대)	천호동 447번지 일대	10,087.0m <sup>2</sup>	구 현장여자정보고

■ 계획지침

구분	내 용	
	기정	변경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 : (1)</li> <li>• 권장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노유자 시설(300m<sup>2</sup>이상설치), ※업무시설 전체연면적(주차장제외)의 지상층 30%이상 설치시 권장용도 인정</li> </ul>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 • 허용용적률 : 400%이하	• 기준용적률 : 300% • 허용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최고높이 100m 이하	
대지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경계를 따라 남북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li> <li>• 공개공지를 천호대로변에 대지 면적의 30% 이상 확보(공개공지를 제1호 공공보행통로 면적에 포함)</li> <li>• 건축한계선 : 천호대로 5m, 진황도길 2.5m, 좌측 도로 연결부 1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 천호대로변 5m, 진황도길 3m, 좌측연접부 1m</li> </ul> <p>[권장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과 연계된 침상형 공지 설치</li> <li>- 지하철 환기구, 출입구 등 지하철 관련시설 사업부지와 연계</li> <li>• 전면공지에 수경공간 배치</li> <li>• 학교와 인접 특별계획구역을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li> </ul>
건축물의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층부 탑상형 배치 / 간선도로변 업무시설 배치</li> </ul> <p>[권장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상층개방시설 배치 : 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li> </ul>
공공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폭원 확대</li> <li>① 폭원확대 : 15m → 20m</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연접부 (5m) 공공공지 신설</li> </ul> </li> </ul>

주1) 인센티브 용적률은 역세권 인센티브 완화기준 적용  
 ※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천호동 164-70번지(거북연립) 포함여부 검토

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8호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

구분	내용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함)
4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공동개발 변경시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5	경미한 사항에 대한 민간부문 수립지침의 변경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민원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50), 강동구 도시계획과(☎02-480-1386)에 관계서류를 비치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1. 건설부고시 제198호(1971.4.7)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6호(2009.6.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사당로 도로확장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구 범진여객)~서울시 동작구 사당동(남성초교 앞)
  - L=460.0m, B=25~40m→30~40m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다. 사업명 (변경없음)
  - 사당로 도로확장공사
- 라.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L=460.0m, B=25~40m→30~40m
-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길 37
- 바.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조서 별첨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함
- 2.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인 동작구청 토목과 (☎820-1405) 또는 서울시청 도로계획담당관(☎3707-8134)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물건, 영업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 사업의 종류 : 사당로 도로확장공사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소유자		소유권이외권 의명세	이해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주소	주소		성명	주소	
1	기정	708-421	대지	106	54	이근무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708-421	지상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변경	708-1175										
2	기정	708-413	대지	129	65	서정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산186-14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변경	708-1174										
3	기정	709-364	대지	69	61	곽진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86-2	지상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변경	708-1173										
4	기정	323-5	대지	241	4	황영웅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산186-14	지상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변경	323-30		4								
5	기정	323-4	대지	99	21	이규년	서울시 관악구 청림동 1717 대우 프르지오(아)120동 1904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중구 을지로2가 50		
	변경	323-29										
6	변경없음											
7	변경없음											
8	기정	323-3	대지	132	35	최관	대구 수성구 민촌동 1021-17	지상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변경	323-28		35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권 리의명세	
9	기정	323-13	대지	142	52	정박환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23-1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변경	323-32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6-15 한라(아) 421-107	대인용 협동조합	사당동 321-113	근저당	
10	기정	323-12	대지	172	57	고문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45-3 도 양빌딩 6층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변경	323-31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압류		
11	기정	323-15	대지	66	25	최병혜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23-1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변경	323-33					남부농협	서초구 양재동 11-1	근저당		
12	기정	324-14	대지	1,405	34*1/5 18*1/5	고문식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57-2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변경	324-29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57-2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지상권	
13	기정	324-14	대지	1,405	34*1/5 18*1/5	고성준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57-2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변경	324-30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57-22			지상권	
14	기정	323-16	대지	149	75	안경라	경기 군포 산본1008 목련 A1204-130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변경	323-34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61-74			지상권	
변경없음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소유권이외권 리의명세	이해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5	기정	323-17	대지	73	56	정진용	경기도 안산시 외동 711-19 2층	지상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변경	323-35										
16	기정	324-16	대지	367	157*1/2	김병길	서울시 분당구 서현동 91 한양A 321-701호	지상권	서울특별시도 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변경	324-31										
17	기정	324-4	대지	347	102*3/10	이명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삼호기든4 차A 라동 811호	지상권	서울특별시도 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102*3/10							
	변경	324-27	대지	102	102*2/10	유현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 A 6-506	지상권	서울특별시도 시철도공사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3		
					102*2/10							
18	기정	324-2	대지	383	123*1/2	강경숙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삼성3차A 302-702	근저당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변경	324-26		123	123*1/2							김혜선
19	기정	324-1	대지	129	129	김병하	168-19	근저당	서울경기양돈 축산협동조합	강동구 천호동 292		
	변경	324-25		94	94							
20	기정	324-20	하	6478	146	산림청	서울 동작구 사당동 324-1					
	변경	324-32		146								

###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길 37
- 사업의 종류 : 해당로 도로확장공사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권리의 명세	성명	주소	
변경없음												
1~18												

###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길 37
- 사업의 종류 : 해당로 일대 도로확장 공사

연번	지 번	물건의 종류	상호	층수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변경없음							
1~1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6호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

<충정공 목서흙 묘역>을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1.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개요

- 지정종별 및 번호 :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7호
- 지정명칭 : 충정공 목서흙 묘역(忠貞公 睦叙欽 墓域)

○ 문화재 지정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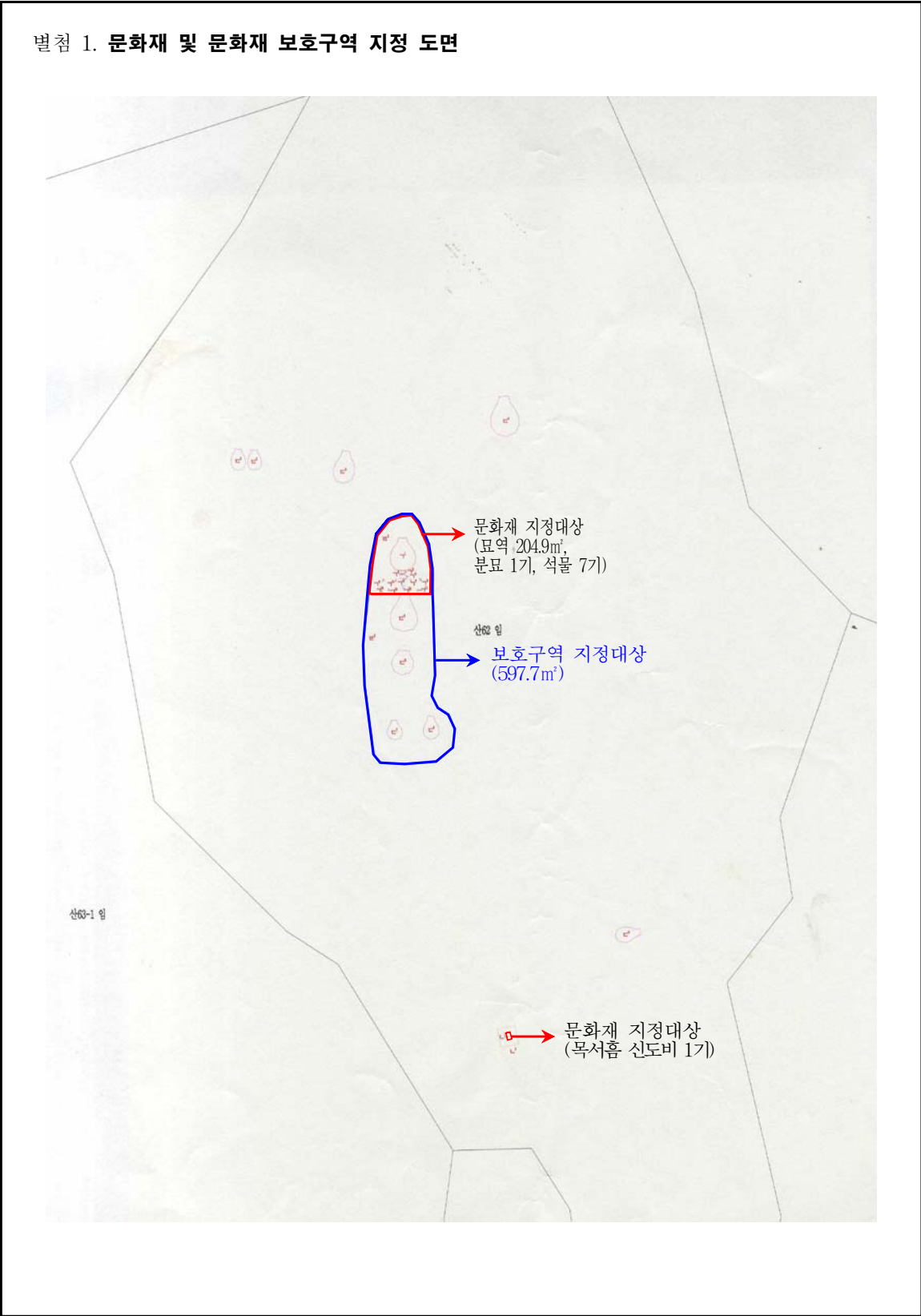
문화재 지정대상	소재(지정)지번	지 적	수량·면적	크기(단위:cm)	연대	소유자명(주소)
목서흙(睦叙欽)과 정경부인(貞敬夫人) 안동권씨(安東權氏) 합장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62번지		1기 (30.5㎡)		1634년 ~1652년	사천목씨 종친회 (도봉구 방학3동 271-2)
목서흙 신도비	"		1기	전체높이 305 · 비 몸돌 : 높이 216, 너비 86.7, 폭 22.8 · 비받침돌 : 높이 50, 너비 168, 폭 88	1671년	
묘 표	"		1기	· 비 몸돌 : 높이 128, 너비 51.2, 폭 18.9 · 비받침돌 : 높이 39.1, 너비 81, 폭 52	1689년	
혼유석	"		1기	높이 11, 너비 56, 폭 27.5	17c 후반	
향로석	"		1기	높이 35, 너비 23, 폭 22.5	"	
동자석			2기	(좌) 높이 84, 너비 28.5, 폭 22 (우) 높이 81, 너비 26.5, 폭 23	"	
망주석	"		2기	(좌) 높이 162, (우) 151.5	"	
토지 (묘역과 신도비 점유 부분)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62번지	32,331㎡	204.9㎡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지정지번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62번지	32,331㎡	597.7㎡	사천목씨 종친회 (도봉구 방학3동 271-2)

-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도면 : <별첨1> 참조
- 지정사유 : 충정공 목서흙의 묘역은 인조 때 한성부 좌우윤을 지냈으며 백성을 위해 교화를 베풀고 청렴했던 목서흙이라는 인물의 묘역으로 서울과의 관련성이 크고, 묘역과 묘역 내 석물들은 조선 후기 묘제 및 석물 제작 양상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크다. 특히 신도비(神道碑)는 조경(趙綱)의 문장과 이정영(李正英)·조위명(趙威明) 등 당대 명문장가와 명필들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정사(正史)인 실록 등을 보완하는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목서흙의 묘역과 묘역 내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석물들을 신도비와 함께 일괄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 보존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는 목서흙의 묘역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 즉 도봉구 방학동 산62번지의 32,331㎡ 가운데 597.7㎡를 지정하여 동 묘역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
- 지정일자 : 서울시보 게재 일자
2. 기념물 지정 조사보고서 : <별첨 2> 참조
3.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문화재 지정대상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준용규정) 제2항·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6조(수리 등)·제20조(허가사항)·제22조(행정명령) 및 제23조(신고사항) 등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지역
- 충정공 목서흙 묘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46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 상의 '일반묘역'이므로 동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외곽 50m 이내 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 등)에 의거, 같은 조례 제46조 제2항부터 제4항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02-2171-2594 / 담당자 : 학예연구사 김수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도면



## 별첨 2. 서울특별시 기념물 지정 조사 보고서

도봉산 시루봉 자락, 오늘날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산62번지에는 사천 목씨(泗川 睦氏)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사천 목씨(泗川 睦氏)는 선영이 전국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경기도 양주군 만송리·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등 총 5곳 분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방학동 묘역이다. 사천 목씨 묘역 가까이에는 사적 제362호 <연산군묘>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0호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1. 방학동 사천목씨 묘역 위치도

방학동 사천목씨 묘역에는 묘가 북한 지역에 있는 1대 목효기(睦孝基)부터 6대 목손검(睦孫儉)까지는 단의 형태로 모여져 있고, 묘역으로는 7대 목진공(睦進恭)의 묘역, 목진공의 6대손인 목서흙(睦叙欽)의 묘역, 그 아들들인 목처선(睦處善)·목지선(睦知善)·목내선(睦來善)의 묘역, 목처선의 아들인 목임기(睦林奇)와 목내선의 아들인 목임일(睦林一)의 묘역, 목임기의 아들인 목천익(睦天翊)과 목임일의 아들인 목천현(睦天顯)의 묘역 등 총 9개소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묘역이 신도비와 함께 있는 <충정공 목서흙 묘역(忠貞公 睦叙欽 墓域)>이다.





그림 2. 사천목씨 묘역의 묘 분포도

목서흠은 선조 때 이조참판(吏曹參判 : 오늘날 행정자치부 차관에 해당)을 지내고 임진왜란 때는 왜적에 대해해 의병을 모집하기도 한 목첨(睦簷)의 맏아들로 자(字 : 부모가 아닌 가까운 윗사람이 기호나 덕을 고려하여 붙여주는 이름으로 동년배 이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을 칭할 때 많이 사용함)는 순경(舜卿), 호(號 : 자신의 본명 대신 자신이 거쳐하는 곳이나 지향하는 뜻 혹은 좋아하는 물건 등을 고려하여 만드는 이름)는 매계(梅溪)이다. 1597년(선조 30) 음보(蔭補)로 제용감 참봉(濟用監 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1603년 내시교관(內侍 敎官)을 지내고, 북부주부(北部主簿)를 거쳐 1606년 양구현감(楊口 縣監)에 재직하던 중 문묘(文廟) 낙서(落書) 사건으로 파직되었다. 1610년(광해군 2)에는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알성시(謁聖試)에 병과(丙科) 1등으로 급제한 후 10여 년간 관직을 자주 옮겼다. 1623년 인조반정 후에는 함경도선유어사(咸鏡道 宣諭御使)·성균직강(成均 直講)·병조정랑(兵曹 正郎)·사예(司藝) 등에 보하여졌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인조를 공산(公山)까지 시종하여 행재소(行在所)에서 광주목사(廣州 牧使)에 제수되었다가 곧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해 가을, 왕을 시종한 공로로 비단을 받았다. 이후 병조참의(兵曹 參議)·좌승지(左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丁卯胡亂) 때는 인조를 남한산성(南漢山城)까지 모시고 가 그 공로로 환도(還都) 이후 우승지(右承旨)가 되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는 동시에 양양부사(襄陽府使)에 제수되었다. 이 때 양양의 수재들을 별도로 수학시키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휼했으며 관혼(冠婚)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대주었다. 1628년(인조 6) 유학(幼學) 임지후(任之後)의 반역 고변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대간(臺諫) 이경석(李景奭)이 차자(笱子)를 올려 심리하게 하자 그해 여름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에 배수되

었다. 이 때 학교를 새로이 하고 학름(學廩 : 장학금의 일종)을 증가시켰다. 또 선죽교(善竹橋)에 정문(旌門)을 세우고, 화담서원(花潭書院 : 서경덕 배향)을 수리하는 한편 충신·효자·열부의 정려(旌閭)로서 무너진 것이 있으면 모두 다 잘 고쳐놓았다고 한다. 1642년(인조 20)에는 봉당(朋黨)의 해로움을 인조에게 상소해 봉당의 폐해를 잘 적시했다는 인조의 칭송을 들었다. 1643년(인조 21)에는 경조(京兆 : 한성부를 지칭함)의 좌·우윤(左·右尹 : 오늘날 서울특별시 부시장에 해당)을 지냈고 1646년에는 예조 참관을 지냈으며 1649년(효종 1)에는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1652년(효종 2) 세상을 떠났는데 셋째 아들인 목겸선(睦兼善)이 원종일등공신(原從一等功臣)이 되자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의금부사 세자이사 지 경연춘추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 兼 義禁府事 世子貳師 知 經筵春秋館事 五衛都摠府 都摠管)으로 추증(追贈)되었고, 1689년(숙종 15)에 다시 다섯째 아들인 목내선이 좌의정에 오르게 되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675년(숙종 1)에는 충정(忠貞)이라는 시호(諡號 : 왕이나 재상, 저명한 유학자 등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들의 공덕을 기려 나라에서 내려주는 이름)가 내려졌다.

목서흙의 묘역은 목진공의 묘역 바로 위 자좌오향(子坐午向 : 정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목서흙의 부인인 정경부인 안동 권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인 1634년 최초 조성되었으나 목서흙이 세상을 떠난 1652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 목서흙의 묘표(墓表)가 건립되는 1689년(숙종 15)까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목서흙 묘역 현황

묘는 목서흙과 안동 권씨의 봉분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땅 밑의 실(室)은 2개로 나누어진 구조 [동분이실(同墳二室) 구조] 로 되어 있다.

묘 바로 앞에 놓여 문헌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묘표(墓表)는 1689년(숙종 15)에 세워졌

는데 비 뒷면 기록에 의하면 다섯째 아들인 목내선이 1689년 좌의정이 되어 아버지인 목서흠이 관례대로 영의정에 추증되자 같은 해 9월에 다시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묘표의 몸돌(碑身) 윗부분은 둥그스름한 형태(圓首)를 띠고 있고, 받침돌(碑座)은 직육면체로 되어 있다. 묘표의 앞면과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어서 묘의 주인공과 건립연대, 건립경위를 알 수 있다.

<앞면>

贈大巨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行資憲大(이상 세로 1줄)

夫知中樞府事贈諡忠貞公陸叙欽之墓(이상 세로 2줄)

贈貞敬夫人安東權氏耐左(이상 세로 3줄)

<뒷면>

崇禎辛亥樹神道碑沒第五年乙卯請諡於朝贈以忠貞廉(이상 세로 1줄)

□□□□清白守節曰貞越十五年己巳以子來善特拜(이상 세로 2줄)

議政府左議政追贈領議政恩榮所□感無從是皆辛亥(이상 세로 3줄)

沒□既不得書諸碑面改豎礪石而謹識(이상 세로 4줄)

己巳九月 日立(이상 세로 5줄)

받침돌(碑座)은 정면에 연꽃 문양을 새기고, 왼쪽과 오른쪽은 구름 문양을 새겨 넣었으며, 윗면에는 복련(覆蓮 : 연꽃을 얹어놓은 모양) 12잎을 새겨 넣었다.

묘표 앞에는 장방형의 혼유석(魂遊石)이 놓여 있다. 혼유석 앞에는 제물(祭物)이 올려지는 상석(床石)이 놓여 있는데 상석은 최근 설치한 것이다. 상석 앞에는 향로석이 2기 위치하는데 정중앙에 있는 향로석은 최근 설치한 것이고, 봉분을 바라보아 오른쪽에 위치한 향로석이 원래의 향로석이다. 원래의 향로석은 오래되어 문양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다리 부분에는 호족(虎足 : 호랑이 발 모양)이 새겨져 있다.

묘 좌우로 세워져 있는 망주석(望柱石)은 위 부분부터 원수(圓首)·운두(雲頭)·연주(蓮珠)·염의(簾依)·8면의 주신(柱身 : 기둥부)·대석(臺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2기(基)의 망주석 기둥 안쪽에는 세호(細虎)가 돌을세김으로 조각되어 있다.

망주석 약간 앞쪽으로는 동자석(童子石)이 좌우로 세워져 있는데 왼쪽의 것은 얇게 미소를 띤 얼굴이 잘 남아 있으나 오른쪽의 것은 얼굴 부분의 마모가 심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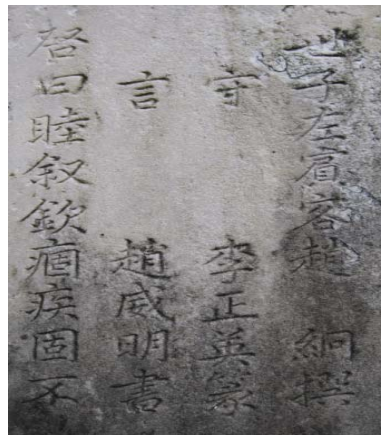


그림 3. 목서흠 신도비 현황

목서흙의 신도비는 묘로부터 동남쪽 방향으로 약 120m 정도 떨어진 묘역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옥개석(비 맨 꼭대기에 있어 비 몸들을 보호하는 한옥 지붕 모양의 돌)·비 몸돌·비 받침 등 3부분으로 구성된 이 신도비는 목서흙이 세상을 떠난 1652년 겨울 목서흙의 다섯 아들들의 의뢰로 목서흙과 예조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조경(趙綱)이 비문을 짓고, 비의 제목에 쓸 전액(篆額 : 전서체로 쓴 비의 제목)은 전서(篆書 : 한자 글씨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등장한 서체로 획이 가장 복잡하고 곡선이 많음)를 잘 쓰는 것으로 이름난 이정영(李正英)이, 비 몸돌 글씨는 조경의 조카로 당대에 이미 명문장가이자 명필로 유명했던 조위명(趙威明)이 썼다. 비문은 조경이 신도비의 비문을 쓰게 된 경위·가계(家系)·역임한 관직들과 주요 활동·성품·후손들의 번창·그의 덕망과 가계의 우수함을 노래한 시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문 뒷면 끝 부분에 따르면 이 신도비는 비문 마련 이후 19년이 되도록 돌을 마련하지 못해 세우지 못하다가 목서흙의 손자인 목임형(睦林馨)이 돌을 구하고 목내선이 비문을 새기는 일을 추진하여 1671년(현종 12) 비로소 건립될 수 있었다고 한다.

문인석과 장명등은 후손들에 의해 신규 설치되었다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권고(2009. 3. 12)에 따라 2009. 4. 8 제거되었다.

충정공 목서흙의 묘역은 한성부 좌우윤(오늘날 서울특별시 부시장에 해당)을 지냈으며 백성을 위해 교화를 베풀고 청렴 강직했던 목서흙이라는 조선 후기 인물의 묘역으로 서울과의 관련성이 크고, 묘역과 묘역 내 석물들은 조선 후기 묘제 및 석물 제작 양상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보존가치가 크다. 특히 신도비(神道碑)는 조경(趙綱)의 문장과 이정영(李正英)·조위명(趙威明) 등 당대 명문장가와 명필들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료로 정사(正史)인 실록 등을 보완하는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목서흙의 묘역과 묘역 내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 석물들을 신도비와 함께 일괄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7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한다.

한편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는 목서흙의 묘역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즉 도봉구 방학동 산62번지의 32,331㎡ 가운데 597.7㎡를 지정하여 동 묘역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7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와터 근린공원 외 8개소 공원에 대한 명칭이 제정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 명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근린공원 명칭 제정 내역

연번	구분	위치	공원명칭	비 고
1	근린공원	용산구 한강로3가 63-388	기와터	
2	근린공원	용산구 한남동 678	한 남	
3	근린공원	용산구 한강로3가 63-113	버들개	
4	근린공원	한강로2가 363-1	한강로	
5	근린공원	용산구 용산동5가 19-605	서빙고	
6	근린공원	용산구 신계동 1-29	신 계	
7	근린공원	송파구 잠실1동 19번지 - 8호	뽕나무	
8	근린공원	송파구 잠실2동 22번지 일대	부 리	
9	근린공원	종로구 송월동 1-44번지 일대	월 암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정책과(☎02-2115-7529), 용산구청 공원녹지과(☎02-710-3395) 및 송파구청 공원녹지과(☎02-410-395), 종로구청 공원녹지과(☎02-731-039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9호  
도시관리계획 『성신여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성북구 동선동1가 85번지 일대 「성신여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3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12.17) 심의 및 2009년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9.5.20) 보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성신여대 주변지역 제1종지

- I. 결정 취지
- 성신여대 주변지역의 바람직한 대학문화·교육 등의 환경조성과 기성시가지의 환경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도시 기능의 극대화를 모색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II.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가.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성신여대 주변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동선동1가 85번지 일대	-	증)177,576	177,576	-	신규 지구단위계획 결정

## 나.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성북구 동선동1가 85번지 일대	177,5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신여대 주변지역의 대학 문화·교육의 활성화 유도 및 동선길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으로 교육문화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li> </ul>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77,576	—	177,576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7층이하)지역	131,952	—	131,952	74.3	
	제2종일반주거지역	29,147	—	29,147	16.4	
	제3종일반주거지역	16,477	—	16,477	9.3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미관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아로	중심지 미관지구	원남동 ~ 우이동	156,000	3,900 (586)	양측 20m	서고73 '82. 2.18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6	4,507	39,768	-	-	-	12	2,606	28,555	14	1,901	11,213
중로	3	1,101	16,515	-	-	-	3	1,101	16,515	-	-	-
소로	23	3,406	23,253	-	-	-	9	1,505	12,040	14	1,901	11,213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02	15	집산도로	70	동선동2가 154	동선동2가 305	일반 도로	-	성북구고시 제2005-35호 (2005.5.26)	
기정	중로	2	-	15	집산도로	404 (283)	삼선동5가 301	동선동2가135-1	일반 도로	-	서울시공고 제34호 (1949.5.13)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404 (283)	삼선동5가 301	동선동2가135-1	일반 도로	-	서울시공고 제34호 (1949.5.13)	노선번호 부여
기정	중로	2	-	15	집산도로	748	동선동3가 12	동선동2가 72	일반 도로	-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748	동선동3가 12	동선동2가 7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	8	집산도로	99	동선동3가 8	동선동3가 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1	8	집산도로	99	동선동3가 8	동선동3가 1	일반 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115	동선동3가 28	동선동3가 251-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115	동선동3가 28	동선동3가 251-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481	동선동3가 220-1	동선동3가 54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481	동선동3가 220-1	동선동3가 5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37	동선동3가 142-4	동선동3가 139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37	동선동3가 142-4	동선동3가 139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73	동선동3가 130-7	동선동3가 100-3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73	동선동3가 130-7	동선동3가 100-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85	동선동2가 121-2	동선동2가 110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6	8	국지도로	85	동선동2가 121-2	동선동2가 110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211	동선동2가 2-5	동선동2가 4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7	8	국지도로	211	동선동2가 2-5	동선동2가 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198	동선동2가 57	동선동2가 12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8	8	국지도로	198	동선동2가 57	동선동2가 1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206	동선동2가 153	동선동2가 174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9	8	국지도로	206	동선동2가 153	동선동2가 17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46	동선동3가 53-1	동선동3가 43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46	동선동3가 53-1	동선동3가 43	일반 도로	-		노선번호 부여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57	동선동3가 161-1	동선동3가 160-2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2	6	국지도로	57	동선동3가 161-1	동선동3가 160-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30	동선동3가 197	동선동3가 198	일반 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3	6	국지도로	30	동선동3가 197	동선동3가 19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27	동선동3가 212-2	동선동3가 212-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27	동선동3가 212-2	동선동3가 212-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669	동선동3가 51	동선동2가 298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669	동선동3가 51	동선동2가 29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04	동선동2가 135-7	동선동2가 13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6	6	국지도로	104	동선동2가 135-7	동선동2가 13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64	동선동2가 106	동선동2가 84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7	6	국지도로	64	동선동2가 106	동선동2가 8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76	동선동2가 16	동선동2가 25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8	6	국지도로	76	동선동2가 16	동선동2가 25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53	동선동2가 34	동선동2가 44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9	6	국지도로	53	동선동2가 34	동선동2가 4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35	동선동2가 142-3	동선동2가 142-7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10	6	국지도로	35	동선동2가 142-3	동선동2가 142-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376	동선동2가 347-6	동선동2가 264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11	6	국지도로	376	동선동2가 347-6	동선동2가 264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14	동선동2가 266	동선동2가 293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12	6	국지도로	114	동선동2가 266	동선동2가 29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16	동선동2가 228	동선동2가 26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13	6	국지도로	116	동선동2가 228	동선동2가 261	일반 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34	동선동2가 345	동선동2가 321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3	14	6	국지도로	134	동선동2가 345	동선동2가 321	일반 도로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	중로 2-1 2-2	• 노선번호 부여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개설된 현황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 노선번호 부여
소로2-	소로 2-1 2-2 2-3 2-4 2-5 2-6 2-7 2-8 2-9	• 노선번호 부여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개설된 현황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 노선번호 부여
소로3-	소로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3-11 3-12 3-13 3-14	• 노선번호 부여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개설된 현황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 노선번호 부여

○ 광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광장 주차장	일반광장 노외주차장	동선동2가 4번지일대	1,820	감)1,820	-	성북구고시 제35호 (2005.5.26)	(중복결정) 지상:광장 / 지하:주차장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광장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장/주차장 폐지</li> <li>- 동선동2가4번지일대</li> <li>- A = 1,8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광장 · 주차장은 교통수요 분석 및 이용실태 분석 결과 건립 타당성이 미약하며 주민반대의견 민원 등으로 현실 여건상 설치 불가</li> </ul>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 입지특성, 각 필지의 규모형태 및 용도지역, 가로 조직을 근거로 간선부와 이면부로 구분하여 설정
- 최대개발규모는 단독개발 및 공동개발이 허용되는 최대 개발단위를 말함
- 간선부와 이면부 구분에 따른 최대개발규모는 아래와 같음
- 구릉지 지역(B-7블럭)은 장래 개발확장성을 고려하여 별도 최대개발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음

구 분	적 용	최대개발규모(㎡)	
일반 주거 지역	동소문로변	평균대지규모 × 12	2,000
	간선부	평균대지규모 × 4	800
	이면부	평균대지규모 × 3	500
	구릉지(B-7블럭)	-	제한없음

나. 공동개발(지정/권장) 결정조서

- 부정형 대지 및 과소필지의 적정 개발유도로 과소개발 및 난개발 방지
- 주민의사 조정 및 선택의 기회 제공으로 경직된 규제 지양

지 정	권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필지 동일소유(적정개발 규모이상 필지제외)</li> <li>● 기공동건축</li> <li>● 차량진출입 불가능 필지</li> <li>● 부정형/ 세장형 영세필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변 대상지 등 적정 개발규모유지 필요 필지</li> <li>● 부정형 필지에 인접하여 토지 효율성이 낮은 경우</li> <li>● 차량진입이 곤란한 필지</li> </ul>

##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A-1	1	1,794.5	동선동3가 53-1	52.6	공동개발 지정 : 53-2, 53-5 (기공동건축,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지정 : 49, 52-2 (동일소유자,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49, 50, 51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53-5, 53-1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42-1, 42-2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44, 45, 46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동선동3가 53-2	200.0	
			동선동3가 53-5	5.9	
	2		동선동3가 42-1	92.6	
			동선동3가 42-2	77.0	
	3		동선동3가 41-1	233.1	
	4		동선동3가 51	130.9	
			동선동3가 50	57.5	
			동선동3가 49	69.1	
	5		동선동3가 52-2	15.2	
	6		동선동3가 48	115.0	
	7		동선동3가 47	127.3	
	8		동선동3가 52	141.0	
			동선동3가 46	78.7	
동선동3가 45		96.5			
A-2	3,061.7	동선동3가 44	70.7		
		동선동3가 43	231.4		
		1	동선동3가 22-2	146.0	공동개발 지정 : 25, 26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지정 : 40-1, 40-2 (동일소유자,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24-2, 24-3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권장 : 29, 30 (필지정형화)
		2	동선동3가 23	314.6	
		3	동선동3가 24	206.5	
		4	동선동3가 24-2	63.6	
			동선동3가 24-3	102.8	
		5	동선동3가 25	93.6	
			동선동3가 26	134.9	
		6	동선동3가 28	205.9	
		7	동선동3가 40-1	36.0	
			동선동3가 40-2	90.9	
		8	동선동3가 40-3	92.6	
		9	동선동3가 40-4	123.8	
		10	동선동3가 38	148.7	
		11	동선동3가 36	146.1	
		12	동선동3가 35	153.0	
13	동선동3가 34	151.4			
14	동선동3가 33	162.0			
15	동선동3가 32	195.0			
16	동선동3가 31	247.3			
17	동선동3가 30	144.5			
	동선동3가 29	102.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A-3	1	2,636.5	동선동3가 54	206.9	공동개발 권장 : 73, 74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69, 70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67-2, 67-1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65, 66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2		동선동3가 55	179.4	
	3		동선동3가 57	244.3	
	4		동선동3가 59	124.6	
	5		동선동3가 60	171.9	
	6		동선동3가 61	120.7	
	7		동선동3가 63	250.2	
	8		동선동3가 64	119.7	
	9		동선동3가 65	85.6	
	10		동선동3가 67-1	59.2	
			동선동3가 67-2	101.8	
	11		동선동3가 68	91.6	
	12		동선동3가 69	96.5	
			동선동3가 70	71.4	
	13		동선동3가 71	97.2	
	14		동선동3가 72	154.4	
15	동선동3가 73	95.5			
	동선동3가 74	68.1			
16	동선동3가 75	206.6			
A-4	1	3,824.8	동선동3가 1	1834.9	공동개발 권장 : 11, 9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19, 21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2, 3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2		동선동3가 2	125.0	
	3		동선동3가 3	74.7	
			동선동3가 4	110.7	
	4		동선동3가 5	142.1	
	5		동선동3가 6	129.2	
	6		동선동3가 7	103.5	
	7		동선동3가 8	212.9	
	8		동선동3가 9	113.4	
	9		동선동3가 11	82.6	
			동선동3가 12	287.7	
	10		동선동3가 14-3	116.9	
11	동선동3가 16	98.3			
12	동선동3가 19	73.1			
	동선동3가 21	319.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B-1	1	3,684.2	동선동3가 103	146.1	공동개발 권장 : 130-4, 130-5 (과소필지해소)
	2		동선동3가 105	212.9	
	3		동선동3가 106	91.6	
	4		동선동3가 107	87.3	
	5		동선동3가 108	89.6	
	6		동선동3가 109	109.8	
	7		동선동3가 111	95.2	
	8		동선동3가 112	86.6	
	9		동선동3가 114	171.9	
	10		동선동3가 115	112.4	
	11		동선동3가 116	104.8	
	12		동선동3가 117	268.4	
	13		동선동3가 118	85.6	
	14		동선동3가 119	89.2	
	15		동선동3가 121	203.4	
	16		동선동3가 122	87.3	
	17		동선동3가 123	86.6	
	18		동선동3가 124	92.2	
	19		동선동3가 125	86.6	
	20		동선동3가 126	85.6	
	21		동선동3가 127	87.3	
	22		동선동3가 130-1	173.2	
	23		동선동3가 130-2	98.2	
	24		동선동3가 130-3	143.1	
	25		동선동3가 130-4	91.2	
			동선동3가 130-5	82.6	
			동선동3가 130-6	169.9	
	동선동3가 130-7	445.6			
B-2	1	3,098.1	동선동3가 76	110.4	공동개발 권장 : 77, 78 (과소필지해소)
	2		동선동3가 77	85.6	
	3		동선동3가 78	67.1	
			동선동3가 79	103.8	공동개발 권장 : 95, 96 (과소필지해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B-2	4	3,098.1	동선동3가 80	92.2	공동개발 권장 : 92, 102 (과소필지해소)			
	5		동선동3가 81	94.5				
	6		동선동3가 83	132.9				
	7		동선동3가 86	129.9				
	8		동선동3가 87	141.2				
	9		동선동3가 89	147.8				
	10		동선동3가 92	74.7				
	11		동선동3가 102	76.7				
	12		동선동3가 93	121.0				
	13		동선동3가 94	98.5				
	14		동선동3가 95	94.2				
	15		동선동3가 96	82.6				
	16		동선동3가 98	210.2				
	17		동선동3가 99-1	148.4				
	18		동선동3가 99-2	130.6				
	19		동선동3가 99-3	136.2				
	20		동선동3가 100-1	145.1				
	21		동선동3가 100-2	234.9				
	22		동선동3가 100-3	154.0				
	B-3		1	4,900.3		동선동3가 101-1	177.8	공동개발 지정 : 194, 195 (차량출입근란, 동일소유자)
			2			동선동3가 101-2	107.8	
			3			동선동3가 187	233.0	
4		동선동3가 188	201.0					
5		동선동3가 189-1	437.7					
6		동선동3가 189-2	436.0					
7		동선동3가 190-3	275.0					
8		동선동3가 191	123.6					
9		동선동3가 192	111.7					
10		동선동3가 193	124.3					
11		동선동3가 194	97.2					
12		동선동3가 195	128.9					
13		동선동3가 196	319.8					
14		동선동3가 197	192.9					
15		동선동3가 206	200.3					
16		동선동3가 205	180.2					
17		동선동3가 204	161.0					
18		동선동3가 203	328.3					
19		동선동3가 190-2	261.7					
20		동선동3가 190-4	157.2					
21		동선동3가 190-5	180.8					
	동선동3가 201	317.0						
	동선동3가 200	224.1						
	동선동3가 198	208.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B-4	1	3,997.3	동선동3가 207-1	287.9	공동개발 지정 : 210, 211 (과소필지해소, 동일소유자)
	2		동선동3가 207-2	423.5	
	3		동선동3가 207-3	287.9	
	4		동선동3가 207-4	223.3	
	5		동선동3가 207-5	287.9	
	6		동선동3가 207-6	223.3	
	7		동선동3가 208	139.1	
	8		동선동3가 210	55.9	
			동선동3가 211	84.6	
	9		동선동3가 213	287.3	
	10		동선동3가 212-1	235.4	
	11		동선동3가 212-2	254.9	
	12		동선동3가 212-3	281.0	
	13		동선동3가 212-4	333.6	
	14		동선동3가 212-5	264.8	
15	동선동3가 212-6	326.9			
B-5	1	4,589.9	동선동3가 226-1	222.5	공동개발 지정 : 227-2, 228 (과소필지해소,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지정 : 229-1, 229-2 (과소필지해소,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지정 : 229, 230-2 (동일소유자)
	2		동선동3가 226-2	231.1	
	3		동선동3가 226-4	215.9	
	4		동선동3가 227-2	66.1	
			동선동3가 228	485.6	
	5		동선동3가 229-1	108.3	
			동선동3가 229-2	71.4	
	6		동선동3가 229	179.6	
			동선동3가 230-2	178.5	
	7		동선동3가 230	178.5	
	8		동선동3가 231	217.8	
	9		동선동3가 236-1	258.2	
	10		동선동3가 236-2	328.9	
	11		동선동3가 236-3	417.2	
	12		동선동3가 236-4	293.9	
	13		동선동3가 236-5	345.4	
14	동선동3가 232	194.7			
15	동선동3가 233	246.9			
16	동선동3가 234	349.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B-6	1	3,984.0	동선동3가 214-1	224.8	공동개발 지정 : 220-2, 221 (과소필지해소, 동일소유자)
	2		동선동3가 214-2	282.6	
	3		동선동3가 215-1	213.2	
	4		동선동3가 215-2	132.2	
	5		동선동3가 215-3	261.2	
	6		동선동3가 215-4	208.6	
	7		동선동3가 215-5	225.1	
	8		동선동3가 215-6	272.4	
	9		동선동3가 215-7	132.2	
	10		동선동3가 216	196.4	
	11		동선동3가 217	195.4	
	12		동선동3가 218	396.0	
	13		동선동3가 222	225.1	
	14		동선동3가 223	209.9	
	15		동선동3가 224	203.6	
	16		동선동3가 225	196.4	
	17		동선동3가 220-1	154.0	
	18		동선동3가 220-2	30.4	
동선동3가 221		224.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B-7	1	17,135.1	동선동3가 251	851.5	공동개발 권장 :83-80, 83-103, 산11-276, 84-11, 84-10 (기공동건축,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지정 : 84-10, 84-12, 84-9, 84-13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권장 : 84-21, 84-22, 84-23 (기공동건축)  공동개발 지정 : 84-5, 84-15, 84-20, 84-23, 84-81, 84-14, 84-24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권장 : 84-81, 84-16 (기공동건축)  공동개발 권장 : 251-8, 251-9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251-11, 251-12 (과소필지해소, 기공동건축)
	2		동선동3가 251-1	78.8	
	3		동선동3가 251-2	95.1	
	4		동선동3가 251-3	13.5	
	5		동선동3가 251-4	96.1	
	6		동선동3가 251-5	56.4	
	7		동선동3가 251-6	232.8	
	8		동선동3가 251-7	146.7	
	9		동선동3가 251-8	60.7	
	10		동선동3가 251-9	51.6	
	11		동선동3가 251-10	14.4	
	12		동선동3가 251-11	14.3	
	13		동선동3가 251-12	102.2	
	14		동선동3가 251-13	75.8	
	15		동선동3가 250-1	4,247.7	
	16		동선동3가 250-2	112.4	
	17		동선동3가 250-3	125.6	
	18		동선동3가 250-4	93.9	
	19		동선동3가 250-5	186.3	
	20		돈암동 산11-237	195.0	
	21		돈암동 83-80	357.0	
돈암동 83-103		106.0			
돈암동 산11-276		50.0			
돈암동 84-9		1483.0			
돈암동 84-10		671.0			
돈암동 84-11		13.0			
돈암동 84-12		486.0			
21	돈암동 84-13	532.0			
20	돈암동 84-86	123.0			
21	돈암동 84-5	397.0			
	돈암동 84-14	757.0			
	돈암동 84-15	209.0			
	돈암동 84-16	218.0			
	돈암동 84-20	92.0			
	돈암동 84-21	102.0			
21	돈암동 84-22	136.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B-7	22	17,135.1	돈암동 84-23	241.0	
			돈암동 84-24	132.0	
			돈암동 84-81	149.0	
			돈암동 84-85	32.0	
			돈암동 84-17	3,921.0	
			돈암동 84-6	77.3	
C-1	1	3,226.5	동선동3가 131	103.1	공동개발 권장 : 143-2, 143-3, 144-3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142-2, 142-1 (필지정형화)
			동선동3가 132	118.3	
			동선동3가 133	93.5	
			동선동3가 133-1	132.0	
			동선동3가 143-5	161.0	
			동선동3가 143-4	234.7	
			동선동3가 142-4	223.1	
			동선동3가 142-2	149.8	
			동선동3가 142-1	120.3	
			동선동3가 143-3	89.6	
			동선동3가 143-2	124.0	
			동선동3가 144-3	176.7	
			동선동3가 144	92.6	
			동선동3가 145	137.2	
			동선동3가 134	473.4	
			동선동3가 135	208.3	
			동선동3가 136	99.2	
			동선동3가 137	126.3	
동선동3가 139	103.5				
동선동3가 140	156.4				
동선동3가 141	103.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C-2	1	4,974.1	동선동3가 173	53.6	공동개발지정 : 146, 148, 149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권장 : 146, 171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169, 170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168, 167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166, 165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164, 163, 162 (과소필지해소,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권장 : 179, 180 (과소필지해소,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권장 : 178, 181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177, 182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176, 183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175, 184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173, 174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150, 151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152, 153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154, 155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158, 159 (필지정형화)
			동선동3가 174	55.5	
	2		동선동3가 175	54.5	
			동선동3가 184	53.6	
	3		동선동3가 183	53.6	
			동선동3가 176	54.5	
	4		동선동3가 177	54.9	
			동선동3가 182	54.5	
	5		동선동3가 179	51.6	
			동선동3가 180	60.8	
	6		동선동3가 181	51.6	
			동선동3가 178	56.5	
	7		동선동3가 186	105.4	
			동선동3가 164	70.7	
	8		동선동3가 163	68.8	
			동선동3가 162	56.5	
	9		동선동3가 160-6	310.4	
			동선동3가 160-8	310.4	
	10		동선동3가 160-3	323.3	
			동선동3가 160-1	318.4	
	11		동선동3가 161-1	335.5	
			동선동3가 146	106.1	
	12		동선동3가 171	61.8	
			동선동3가 148	126.9	
	13		동선동3가 149	100.8	
동선동3가 150		88.6			
14	동선동3가 151	107.1			
	동선동3가 152	83.3			
15	동선동3가 153	104.8			
	동선동3가 154	67.4			
16	동선동3가 155	108.1			
	동선동3가 156	149.1			
17	동선동3가 158	53.6			
	동선동3가 159	89.6			
18	동선동3가 160-7	258.2			
	동선동3가 160-5	245			
19	동선동3가 160-2	326.6			
	동선동3가 170	58.8			
20	동선동3가 169	56.5			
	동선동3가 168	56.8			
21	동선동3가 167	56.8			
	동선동3가 166	56.8			
22	동선동3가 165	56.8			
	동선동3가 165	56.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D-1	1	8,996.6	동선동1가 85-34	208.6	공동개발 권장 : 85-34, 85-110 (기공동건축)
			동선동1가 85-110	67.1	
	2		동선동1가 85-33	300.7	공동개발 권장 : 85-33, 85-29 (기공동건축)
			동선동1가 85-29	125.0	
	3		동선동1가 85-32	98.5	공동개발 권장 : 85-32, 85-30 (기공동건축)
			동선동1가 85-30	95.2	
	4		동선동1가 85-31	167.9	공동개발 권장 : 85-28, 85-27 (기공동건축)
			동선동1가 85-28	111.7	
	5		동선동1가 85-27	128.3	공동개발 권장 : 85-2, 85-3 (기공동건축)
			동선동1가 85-26	125.0	
	6		동선동1가 85-36	161.3	공동개발 권장 : 85-6, 85-7 (동일소유자)
			동선동1가 85-37	105.1	
	7		동선동1가 85-38	290.6	공동개발 권장 : 85-4, 85-5, (기공동건축)
			동선동1가 85-19	398.0	
	8		동선동1가 85-20	125.0	공동개발 권장 : 85-9, 85-10, 85-11 (동일소유자)
			동선동1가 85-23	90.6	
	9		동선동1가 85-24	191.0	공동개발 권장 : 237, 237-1, 238-2, 85-18 (동일소유자)
			동선동1가 85-25	204.3	
	10		동선동1가 85-2	138.2	공동개발 권장 : 238-3, 239 (동일소유자)
			동선동1가 85-3	125.0	
	11		동선동1가 85-6	151.4	공동개발 권장 : 247, 248 (동일소유자)
			동선동1가 85-7	204.3	
	12		동선동1가 85-4	128.3	공동개발 권장 : 247, 248 (동일소유자)
			동선동1가 85-5	203.0	
	13		동선동1가 85-8	207.9	공동개발 권장 : 247, 248 (동일소유자)
			동선동1가 85-9	138.2	
	14		동선동1가 85-10	513.7	공동개발 권장 : 247, 248 (동일소유자)
			동선동1가 85-11	876.3	
15	동선동3가 237	333.3	공동개발 권장 : 247, 248 (동일소유자)		
	동선동3가 237-1	306.3			
16	동선동3가 238-2	316.7	공동개발 권장 : 247, 248 (동일소유자)		
	동선동1가 85-18	417.5			
17	동선동3가 238-3	294.2	공동개발 권장 : 247, 248 (동일소유자)		
	동선동3가 239	183.8			
18	동선동3가 241	183.8	공동개발 권장 : 247, 248 (동일소유자)		
	동선동3가 243	333.2			
19	동선동3가 244	63.5	공동개발 권장 : 247, 248 (동일소유자)		
	동선동3가 245	107.8			
20	동선동3가 247	111.4	공동개발 권장 : 247, 248 (동일소유자)		
	동선동3가 248	120.7			
21	동선동3가 0-2	106.9	공동개발 권장 : 247, 248 (동일소유자)		
	동선동1가 85-16	310.4			
22	동선동1가 85-17	126.9	공동개발 권장 : 247, 248 (동일소유자)		
	동선동1가 85-17	126.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D-2	1	4,874.2	동선동1가 85-39	164.6	공동개발 권장 : 85-41, 85-42 (기공동건축)	
	2		동선동1가 85-40	166.6		
	3		동선동1가 85-41	108.4		
			동선동1가 85-42	97.2		
	4		동선동1가 85-43	181.2		공동개발 권장 : 85-43, 85-44, 85-116 (기공동건축, 동일소유자)
			동선동1가 85-44	88.6		
			동선동1가 85-116	43.0		
	5		동선동1가 85-45	87.8		공동개발 권장 : 85-45, 85-115
			동선동1가 85-115	73.5		
	6		동선동1가 85-123	69.8		85-123 (기공동건축)
	7		동선동1가 85-46	130.2		
	8		동선동1가 85-47	171.2		공동개발 권장 : 85-48, 85-55, 85-54 (동일소유, 과소필지해소)
	9		동선동1가 85-56	214.5		
			동선동1가 85-54	70.8		
10	동선동1가 85-48	201.0				
11	동선동1가 85-55	138.2	공동개발 권장 : 85-49, 85-122 (기공동건축)			
	동선동1가 85-49	64.8				
12	동선동1가 85-122	89.9	공동개발 권장 : 85-49, 85-122 (기공동건축)			
13	동선동1가 85-51	257.5				
14	동선동1가 85-50	257.5	공동개발 권장 : 85-49, 85-122 (기공동건축)			
E-1	1	8,093.9		동선동2가 84-1	594.3	공동개발 지정 : 3-2, 3-7, 3-1 (동일소유자)
	2		동선동2가 84-2	1,603.6		
	3		동선동2가 1-1	1,631.7		
			동선동2가 1-2	2,278.4		
	4		동선동2가 3-2	1,217.8	공동개발 지정 : 3-2, 3-7, 3-1 (동일소유자)	
			동선동2가 3-7	165.6		
			동선동2가 3-1	413.2		
	5		동선동2가 11	81.3	공동개발 권장 : 11, 12, 13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동선동2가 12	80.7		
	6		동선동2가 13	110.4	공동개발 권장 : 4, 7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7		동선동2가 3-6	413.2		
	8		동선동2가 3-4	184.1	공동개발 지정 : 2-2, 2-15 (과소필지해소)	
	9		동선동2가 2-3	194.4		
	10		동선동2가 2-10	102.5	공동개발 지정 : 2-2, 2-15 (과소필지해소)	
동선동2가 2-5		109.8				
11	동선동2가 2-2	99.2	공동개발 지정 : 2-2, 2-15 (과소필지해소)			
	동선동2가 2-15	25.9				
12	동선동2가 10	390.4	공동개발 지정 : 2-2, 2-15 (과소필지해소)			
	동선동2가 9	199.0				
13	동선동2가 7	82.6	공동개발 지정 : 2-2, 2-15 (과소필지해소)			
	동선동2가 4	313.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E-2	1	3,939.0	동선동2가 135-1	57.5	공동개발 지정 : 135-1, 135-3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지정 : 134-5, 135-5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지정 : 131, 141 (동일소유자)
			동선동2가 135-3	84.3	
	2		동선동2가 135-2	95.5	
	3		동선동2가 135-4	98.8	
			동선동2가 135-5	151.7	
	4		동선동2가 135-12	103.1	
	5		동선동2가 135-11	104.5	
	6		동선동2가 135-13	79.0	
	7		동선동2가 135-14	83.3	
	8		동선동2가 135-21	104.5	
	9		동선동2가 135-20	104.5	
	10		동선동2가 135-22	82.3	
	11		동선동2가 135-23	83.3	
	12		동선동2가 135-24	83.3	
	13		동선동2가 135-25	83.3	
	14		동선동2가 135-30	81.6	
	15		동선동2가 135-29	110.1	
	16		동선동2가 134	444.6	
	17		동선동2가 139	201.3	
	18		동선동2가 140	243.0	
	19		동선동2가 135-7	56.5	
	20		동선동2가 135-8	67.8	
	21		동선동2가 135-9	104.5	
	22		동선동2가 135-10	104.5	
	23		동선동2가 135-15	82.3	
	24		동선동2가 135-16	164.6	
	25		동선동2가 135-18	104.5	
	26		동선동2가 135-19	104.5	
	27		동선동2가 135-26	85.6	
	28		동선동2가 135-27	82.3	
	29		동선동2가 133	108.4	
30	동선동2가 132	197.0			
31	동선동2가 131	107.4			
	동선동2가 141	89.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E-3	1	2,934.7	동선동2가 121-1	508.1	공동개발 지정 : 121-1, 121-2 120 (동일소유자)	
			동선동2가 121-2	249.9		
			동선동2가 120	242.9		
			2	동선동2가 123		118.3
			3	동선동2가 124		118.0
			4	동선동2가 118		241.0
			5	동선동2가 125		119.3
			6	동선동2가 115		242.9
			7	동선동2가 127		144.8
			8	동선동2가 113		169.2
			9	동선동2가 114		126.3
			10	동선동2가 128		109.8
			11	동선동2가 112		132.6
			12	동선동2가 111		91.6
			13	동선동2가 129		103.5
14	동선동2가 130	114.4				
15	동선동2가 110	102.1				
E-4	1	2,958.9	동선동2가 155	85.0	공동개발 지정 : 155, 156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권장 : 156, 157 (동일소유자,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151, 152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149, 150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161, 162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142-1, 142-2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142-6, 142-7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142-6, 142-7 (과소필지해소)	
			동선동2가 156	114.0		
			동선동2가 157	99.2		
			2	동선동2가 153		125.3
			3	동선동2가 154		117.7
			4	동선동2가 152		81.0
			5	동선동2가 151		110.1
			6	동선동2가 150		83.3
			7	동선동2가 149		108.8
			8	동선동2가 148		192.4
			9	동선동2가 145		193.7
			10	동선동2가 144		165.0
			11	동선동2가 142-1		120.6
			12	동선동2가 142-2		74.0
			13	동선동2가 142-4		108.7
			14	동선동2가 142-5		111.4
			15	동선동2가 142-6		56.9
			16	동선동2가 142-7		47.1
			17	동선동2가 158		112.4
18	동선동2가 159	213.6				
19	동선동2가 161	100.5				
	동선동2가 162	112.4				
	동선동2가 163	79.7				
	동선동2가 164	97.2				
	동선동2가 142	134.8				
	동선동2가 142-3	114.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E-5	1	2,977.6	동선동2가 303	236.4	공동개발 권장 : 303, 305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306, 307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308, 309 (과소필지해소)
			동선동2가 305	117.3	
	2		동선동2가 306	91.6	
			동선동2가 307	144.8	
	3		동선동2가 308	103.1	
			동선동2가 309	107.1	
	4		동선동2가 310	105.8	
	5		동선동2가 311	139.5	
	6		동선동2가 312	133.9	
	10		동선동2가 313	183.1	
	11		동선동2가 314	130.9	
	12		동선동2가 315	181.5	
	13		동선동2가 316	133.9	
	14		동선동2가 317	183.1	
	15		동선동2가 301	170.2	
	16		동선동2가 300	249.2	
	17		동선동2가 298	248.9	
	18		동선동2가 297	163.6	
	19		동선동2가 296	153.7	
E-6	1	2,911.1	동선동2가 30-2	148.1	공동개발 권장 : 18-2, 18-3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21, 22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23, 24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25, 26 (과소필지해소)
	2		동선동2가 30-1	182.8	
	3		동선동2가 29	151.4	
	4		동선동2가 28	184.8	
	5		동선동2가 27	325.0	
	6		동선동2가 26	81.3	
			동선동2가 25	80.7	
	7		동선동2가 24	95.9	
			동선동2가 23	69.8	
	8		동선동2가 22	101.8	
			동선동2가 21	66.4	
	9		동선동2가 19	165.9	
	10		동선동2가 18-1	153.7	
	11		동선동2가 18-2	100.5	
동선동2가 18-3		53.6			
12	동선동2가 17	188.1			
13	동선동2가 16	153.0			
14	동선동2가 15	608.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E-7	1	2,431.2	동선동2가 109	141.2	공동개발 지정 : 89-1, 89 (동일소유자) 공동개발 권장 : 91, 101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92, 93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94, 95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동개발 권장 : 104-1, 107 (과소필지해소)
	2		동선동2가 103	89.9	
	3		동선동2가 108	103.1	
	4		동선동2가 104	94.2	
	5		동선동2가 106	112.1	
	6		동선동2가 107	84.6	
			동선동2가 104-1	65.5	
	7		동선동2가 91	53.2	
			동선동2가 101	52.6	
	8		동선동2가 100	106.4	
	9		동선동2가 99	109.8	
	10		동선동2가 98	101.8	
	11		동선동2가 97	106.8	
	12		동선동2가 96	114.4	
	13		동선동2가 95	66.1	
			동선동2가 94	43.6	
	14		동선동2가 93	65.4	
			동선동2가 92	44.6	
	15		동선동2가 89-1	4.7	
			동선동2가 89	104.7	
	16		동선동2가 82	101.5	
17	동선동2가 88	110.7			
18	동선동2가 83	112.1			
19	동선동2가 84	213.5			
20	동선동2가 87	117.0			
21	동선동2가 86	111.7			
E-8	1	3,269.1	동선동2가 50	65.4	공동개발 권장 : 39, 50, 49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42, 43 (과소필지해소)
			동선동2가 49	69.8	
	동선동2가 39		80.3		
	2		동선동2가 47	198.3	
	3		동선동2가 46	103.5	
	4		동선동2가 45	135.9	
	5		동선동2가 44	101.8	
	6		동선동2가 43	75.4	
			동선동2가 42	70.4	
	7		동선동2가 41	171.6	
	8		동선동2가 40	192.4	
	9		동선동2가 38-1	122.6	
	10		동선동2가 38-2	94.9	
	11		동선동2가 37	157.4	
12	동선동2가 36-1	102.1			
13	동선동2가 36-2	101.2			
14	동선동2가 35	210.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E-8	15	3,269.1	동선동2가 34	415.7	
	16		동선동2가 34-1	169.4	
	17		동선동2가 33-1	293.2	
	18		동선동2가 32-1	336.9	
E-9	1	2,400.6	동선동2가 81	126.3	공동개발 지정 : 66, 65 (동일소유자)
	2		동선동2가 80	107.8	
	3		동선동2가 79	126.3	
	4		동선동2가 78	135.2	
	5		동선동2가 77	154.4	
	6		동선동2가 76	129.2	
	7		동선동2가 75	117.7	
	8		동선동2가 74	125.0	
	9		동선동2가 73	133.9	
	10		동선동2가 72	134.5	
	11		동선동2가 71	126.9	
	12		동선동2가 69	100.5	
	13		동선동2가 68	152.7	
	14		동선동2가 67	113.7	
	15		동선동2가 66	111.7	
	16		동선동2가 65	111.1	
	17		동선동2가 64	133.9	
	18		동선동2가 63	97.8	
E-10	1	2,022.1	동선동2가 61	92.4	공동개발 권장 : 55-1, 55-2 (동일소유자,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56-1, 56-2, 57 (과소필지해소)  공동개발 권장 : 54-1, 54-2 (과소필지해소)
	2		동선동2가 61-1	92.4	
	3		동선동2가 60	149.1	
	4		동선동2가 59	147.4	
	5		동선동2가 58	126.6	
	6		동선동2가 57	156.7	
			동선동2가 56-1	116.0	
	7		동선동2가 56-2	83.0	
			동선동2가 55-1	112.4	
	8		동선동2가 55-2	84.0	
			동선동2가 54-1	108.4	
	9		동선동2가 54-2	90.6	
			동선동2가 53	142.1	
	10		동선동2가 52	306.9	
	11		동선동2가 51	178.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F-1	1	4,356.2	동선동2가 165	157.7	공동개발 지장: 169-1, 171, 176 (동일소유자)
	2		동선동2가 166	237.7	
	3		동선동2가 167	657.9	
	4		동선동2가 168-2	396.3	
	5		동선동2가 169-1	475.5	
			동선동2가 171	247.9	
			동선동2가 176	515.8	
	6		동선동2가 172	129.9	
	7		동선동2가 182	159.3	
	8		동선동2가 181	155.4	
	9		동선동2가 180	239.7	
	10		동선동2가 178	333.9	
	11		동선동2가 177	267.4	
12	동선동2가 174	179.5			
13	동선동2가 173	177.8			
F-2	1	3,454.8	동선동2가 264	155.7	
	2		동선동2가 265	135.2	
	3		동선동2가 266	155.4	
	4		동선동2가 269	153.4	
	5		동선동2가 268	126.3	
	6		동선동2가 267	144.8	
	7		동선동2가 271	103.5	
	8		동선동2가 272	93.9	
	9		동선동2가 273	93.9	
	10		동선동2가 274	100.8	
	11		동선동2가 275	109.1	
	12		동선동2가 276	201.0	
	13		동선동2가 278	109.1	
	14		동선동2가 280	192.7	
	15		동선동2가 282	92.9	
	16		동선동2가 283	98.8	
	17		동선동2가 284	110.4	
	18		동선동2가 285	102.8	
	19		동선동2가 286	212.9	
	20		동선동2가 289	142.1	
	21		동선동2가 290	169.9	
	22		동선동2가 291	267.8	
	23		동선동2가 295	131.2	
	24		동선동2가 294	134.2	
	25		동선동2가 293	117.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F-3	1	3,737.3	동선동2가 226	143.8	공동개발 지정 : 229, 229-1 (동일소유자)
	2		동선동2가 227	125.0	
	3		동선동2가 228	143.1	
	4		동선동2가 231	135.2	
	5		동선동2가 230	113.0	
	6		동선동2가 229	126.7	
			동선동2가 229-1	6.5	
	7		동선동2가 233	91.9	
	8		동선동2가 234	82.0	
	9		동선동2가 235	85.6	
	10		동선동2가 236	90.9	
	11		동선동2가 240	98.2	
	12		동선동2가 239	92.9	
	13		동선동2가 238	92.9	
	14		동선동2가 237	101.5	
	15		동선동2가 242	94.2	
	16		동선동2가 243	87.9	
	17		동선동2가 245	369.2	
	18		동선동2가 249	98.8	
	19		동선동2가 248	93.9	
	20		동선동2가 251	108.1	
	21		동선동2가 252	108.4	
	22		동선동2가 253	119.3	
	23		동선동2가 256	106.8	
	24		동선동2가 255	108.4	
	25		동선동2가 254	117.7	
	26		동선동2가 258	123.3	
	27		동선동2가 259	103.8	
	28		동선동2가 260	126.3	
	29		동선동2가 263	152.7	
	30		동선동2가 262	133.6	
31	동선동2가 261	155.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F-4	1	4,417.9	동선동2가 183	159.3	
	2		동선동2가 184	142.8	
	3		동선동2가 185	142.1	
	4		동선동2가 189	105.4	
	5		동선동2가 188	97.8	
	6		동선동2가 187	100.5	
	7		동선동2가 186	113.7	
	8		동선동2가 191	97.2	
	9		동선동2가 192	94.2	
	10		동선동2가 193	92.9	
	11		동선동2가 194	107.4	
	12		동선동2가 195	129.2	
	13		동선동2가 196	103.1	
	14		동선동2가 197	103.1	
	15		동선동2가 198	106.8	
	16		동선동2가 200	110.7	
	17		동선동2가 201	97.8	
	18		동선동2가 202	95.2	
	19		동선동2가 203	112.4	
	20		동선동2가 207	118.0	
	21		동선동2가 206	107.1	
	22		동선동2가 205	106.1	
	23		동선동2가 204	134.5	
	24		동선동2가 209	100.8	
	25		동선동2가 210	97.8	
	26		동선동2가 211	101.8	
	27		동선동2가 212	105.1	
	28		동선동2가 213	109.1	
	29		동선동2가 214	101.8	
	30		동선동2가 215	100.5	
	31		동선동2가 216	101.8	
	32		동선동2가 218	116.0	
	33		동선동2가 219	104.5	
	34		동선동2가 220	105.8	
	35		동선동2가 221	123.0	
	36		동선동2가 222	156.0	
	37		동선동2가 223	136.9	
	38		동선동2가 224	135.2	
	39		동선동2가 225	144.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F-5	1	6,820.7	동선동2가 321	174.5	공통개발 권장 : 339, 340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통개발 권장 : 343, 344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통개발 권장 : 345, 346 (과소필지해소) 공통개발 권장 : 347-1, 347-16, 347-17 (과소필지해소) 공통개발 권장 : 347-18, 347-19 (과소필지해소, 필지정형화) 공통개발 권장 : 347-14, 347-13 (과소필지해소)
	2		동선동2가 322	135.2	
	3		동선동2가 323	130.9	
	4		동선동2가 324	168.6	
	5		동선동2가 325	129.2	
	6		동선동2가 326	120.7	
	7		동선동2가 327	126.3	
	8		동선동2가 328	124.0	
	9		동선동2가 329	119.3	
	10		동선동2가 330	127.9	
	11		동선동2가 331	197.0	
	12		동선동2가 332	126.3	
	13		동선동2가 333	127.9	
	14		동선동2가 334	120.7	
	15		동선동2가 335	135.9	
	16		동선동2가 356	840.3	
	17		동선동2가 357	210.2	
	18		동선동2가 358	125.0	
	19		동선동2가 359	138.8	
	20		동선동2가 360	150.7	
	21		동선동2가 353	208.3	
	22		동선동2가 352	181.2	
	23		동선동2가 351	205.0	
	24		동선동2가 350	203.6	
	25		동선동2가 349	206.3	
	26		동선동2가 348	208.9	
	27		동선동2가 347-12	82.6	
	28		동선동2가 347-13	43.0	
			동선동2가 347-14	43.0	
	29		동선동2가 347-15	29.8	
			동선동2가 347-19	168.6	
	30		동선동2가 347-18	62.8	
동선동2가 347-6		231.4			
31	동선동2가 347-1	62.8			
	동선동2가 347-16	46.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F-5	33 34 35 36 37 38 39	6,820.7	동선동2가 347-17	52.9	
			동선동2가 347-5	198.3	
			동선동2가 337	184.8	
			동선동2가 338	187.8	
			동선동2가 339	69.8	
			동선동2가 340	101.5	
			동선동2가 341	175.8	
			동선동2가 343	63.5	
			동선동2가 344	108.4	
			동선동2가 345	75.7	
동선동2가 346	89.2				

##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 1) 용도완화

항목	완화내용	비고
용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연면적제한 완화 (공개공지 설치시 용도완화 적용)</li> <li>- 판 매 시 설 : 상점</li> <li>- 업 무 시 설 : 공공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li> <li>▶ 단 서울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의 공지 기준 및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준수</li> </ul>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대한 연면적 제한 적용 배제

## 2) 권장용도

구 분	권 장 용 도
B. 동선지구 인접지	C-1, C-2 D-1,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li> <li>• 교육·연구시설 중 - 학원, 도서관, 교육원</li> <li>•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li> <li>•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li> <li>• 주거복합</li> </ul>
C. 성신여대 인근지역, 동소문로변	A-1,2,3,4 B-1~7 E-1~10 F-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li> <li>•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li> <li>• 다가구(임대주택)</li> </ul>
D. 가로환경 정비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원등</li> <li>•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 서점, 비디오물 소극장,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사진관</li> <li>•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li> <li>•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교육원</li> </ul>
상세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전문점, 북카페, 아이스크림 전문점, 의료, 패밀리레스토랑, 뷰티케어 샵, 패션약세사리, 모임전문공간, 헤어클럽 등</li> </ul>



3) 불허용도

구 분		불 허 용 도
1	전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li> <li>• 운동시설중 옥외골프연습장</li> <li>• 공장</li> <li>• 창고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저장소</li> <li>•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li> </ul>
2	가로환경 정비사업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공동주택</li> </ul>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1) 용적률

○ 용적률 계획

- 용도지역 현황 및 지역여건변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개발밀도 설정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에 의해 달성 가능한 허용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매뉴얼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의 용적률 기준으로 적용

구 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250%

○ 상한 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상한용적률 산출식 = 허용용적률 × ( 1+1.3 × 가중치 × a)이내

※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 평균한 용적률)비율, a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2) 건폐율

○ 건폐율 계획

구 분	건폐율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li> </ul>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 건폐율 완화

구 분	적용기준	지 침 내 용	비 고
전체구역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용도지역건폐율 x (1+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당초의 대지면적)</li> </ul>	-

다.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 접도조건별 사선제한에 의한 최저점, 최고점 산정 후 평균점에 의한 필지(대지)별 높이 산출
- 각 필지별 사선 제한에 의한 평균높이 산정 후 건폐율을 고려한 체적산출
- 주변과의 관계, 전면도로, 상위 및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설정
- 서로 다른 최고높이제한에 속하는 대지간 공동개발의 경우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대지에 적용되는 최고높이 제한을 적용
- 구릉지(B-7블럭)의 경우 개방감 및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양각(27°)규정 적용

구 분	이면부	동선길	동선5길	성신길	동소문로변	구릉지
높 이	30m				50m	양각 27°적용

라.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

- 주요가로변 건축선 지정을 통한 전면공지조성으로 개방감 확보 및 보행기능 강화
- 과도한 건축선 지정을 지양하되, 보행집적구간 및 지구내 간선구간에 선택적 적용
- 기반시설 미비 블럭의 경우, 건축선 지정을 통한 점진적 가로환경 정비 유도

적용목표	계획내용	적용구역
● 보행환경개선	건축한계선 3m	동소문로변
● 전면공지 확보	건축한계선 2.5m	성신길 일부구간
● 가로 개방감 확보	건축한계선 1m	지구내 보행활성화 구간, 가로환경정비구간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결정조서

- 성신여대생 및 주민 등 대상지의 이용객활동성과 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정비
  - 공공이 조성한 보도와 공지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쾌적성 증진
- 일정규모 이상 필지 공개공지 지정

제어요소	제어내용
공개공지	일정규모이상 필지 또는 주요 보행결절부 공개공지 위치지정
전면공지	주요 간선가로변 또는 보행통로변 보행공간확보

나. 교통처리 결정조서

- 동선길변 가로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성신여대 주요 통학로 및 학생 보행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확보
- 활용이 미흡한 기존의 개설도로를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여 보행자 이동 편의성 확대

제어요소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동선길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공공보행통로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보행자 우선도로	성신여대 주요 통학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보행자 전용도로	지역내 보행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4. 인센티브 결정조서

내 용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주 차 차 량 동선에 관 한 사 항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대지	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주차장 설치비용 납 부로 대신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권 부여	● 거주자 우선주차권 미 부여시 주차장 설치비 용의 30% 감액
	차량출입 불허구간과 인접한 대지	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주차장 설치비용 납 부로 대신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권 부여	
	분전반	건물신축시	분전반1개 설치시 주차대수 1대 설치면제	● 다른 항목에 의거 주차 장 면제 대상일 경우에 는 주차장 설치 비용 납 부액 감액
용적률	공동개발 지정된 대지	건물신축시	공동개발 미준수시 패널티 인센티브(-20%) 적용	

## 5.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경미한 사항	구청장권한
		구도시계획위원회
법률에서 정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2. 가구(영 제4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	○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4.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6.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포함한다)의 변경 또는 신설, 폐지의 경우	○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당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	○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안에서 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10.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
	1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12.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13.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14.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1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1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화 등에 관한 계획	○
	17. 공개공지, 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로 등 대지내 공지 위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	○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사항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에 관한 사항,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변경 및 조성방법 변경, 수중, 조경시설물이 설치계획의 변경, 통로의 성격, 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전용 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
	2.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계획의 변경	○
	3. 구역외 필지와외의 공동개발시 지침완화 여부	○
	4.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이내의 기존건축물 철거 및 증축시 지침적용 완화	○
	5. 대수선 및 리모델링시 지침적용완화	○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한다.

- Ⅲ.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신여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관계도면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 Ⅴ.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6361-3547) 및 성북구 도시개발과(☎ 02-920-372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공 고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09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1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 제2009-12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서울강북구새마을회」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 270-67
4. 대표자 : 이 선
5. 허가일 : 2009.6.9
6. 설립목적 :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통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7. 목적사업
  - 지역새마을운동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회원과 주민에 대한 새마을교육 및 교양교육
  - 농어촌 활력화 및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 노인,장애자,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복지사업
  - 독서생활화 운동
  - 건강사회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 영·유아보육 및 청소년 지도·육성사업
-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사업
-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및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15호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 제2009-07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선교회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1
4. 대표자 : 원 광 기
5. 허가일 : 2009. 6. 15.
6. 설립목적 : 신·구약 성경으로 신앙고백을 같이 하는 교단에 속한 목회자 및 단체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영상매체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기여함.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22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업종	등록일자
서울E-2-363서울 S-2-325	(주)에이스 파트너	최종환	송파구 석촌동 58-23 금한빌딩 301호	110111- 4107648	전문설계업1종 전문감리업	2009. 06.17.

- 공고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기업지원담당관(02-3707-933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28호  
재해영향평가대행자 업무 폐지**

(구)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폐지 요청

이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부칙 제17조(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폐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소재지	업무폐지일자
제 서울-050호	(주)해석	김성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183-1	2009. 6. 17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2115-78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29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업자 청문통지 공시송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을 취소하고자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청문통지

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통지서를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취소

연번	당 사 자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1	75	(주)제오에너지	김종구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9-4 이노빌딩 401호	석유판매업 무단 폐업	등록취소
2	71	(주)에스에이산업	박임해	서울 구로구 구로동 520-1	석유판매업 무단 폐업	등록취소
3	85	(주)대일기업에너지	노현철	서울 중랑구 신내동 648 디아프갤러리 5층 560호	석유판매업 무단 폐업	등록취소
4	80	(주)케이씨페트로	서기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89-10 구의아크로리버 A-402호	석유판매업 무단 폐업	등록취소

2. 공고기간 : 2009. 6. 25 ~ 2009. 7. 9(15일간)

3. 근거법령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3항 제4호, 동법 제40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4. 청문실시

- 기관명 : 서울특별시청 (부서명:기후에너지담당관, 담당자:박준진 전자우편

spjj1107@seoul.go.kr)

- 주 소 : 서울 중구 문학의집길 11-1(예장동 산5-85) (☎ 02-2115-7726, FAX 02-2115-7729)
- 일 시 : 2009년 7월 20일 13:00부터 17:00까지(4시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2층 기후에너지담당관실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 기후에너지담당

관 성명 : 이우철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FAX, e-mail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기후에너지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박준진 ☎ 2115-7726, e-mail : spjj1107@seoul.go.kr)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견된 처분의 제목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9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3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제공람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6호(2009.1.8)로 공람 공고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제공람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공람기간 : 2009년 6월 26일 ~ 2009년 7월 10일
2. 공람장소
  - 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 1담당관(☎2171-2513)
  - 나. 해당구청 : 성동구 도시개발과(☎2286-5567)
3. 제공람사유 :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반영
  - 정비예정구역 확대 등

3.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1) 정비예정구역 추가 확대(성동구)

구분	구역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용적률(기준)	건폐율	사업시행방식	정비계획 수립시기	정비유형	비고
신설	성동 1	성수2가 257-2번지 일원	72,248	230%	60% 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	2012년이 후	철거	주택재개발 검토대상구역 제외

2) 토지이용계획

- 주거공간(공동주택)
  - 전체 사업구역면적중 산업공간을 제외한 면적으로 주거공간(공동주택)계획

○ 산업공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제2호 규정에 의거 산업부지 확보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 우선 적용

사업구역내 공장비율 (2008.1.31 기준)	사업구역 면적대비 산업부지 확보비율	비고
10~30% 미만	20% 이상	사업구역은 준공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산정
30~50% 미만	3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 관련도서 :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공람 장소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40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제7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

여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에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세입귀속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서울

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70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관 건명, 보관기간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북부수도사업소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북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 지출담당 (☎ 3146-3218)

####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연번	보관일자	채주(법인명)	예치사유(적요)	귀속대상금액(원)	비 고
1	2000.8.3	서복순	상계2동 328-18 일시급수보증금	530,370	
2	2000.8.3	진병훈	중계1동 360-19 일시급수보증금	530,370	
3	2000.8.3	청와건설	중계1동 426-3 일시급수보증금	530,370	
4	2000.8.3	고삼상	상계2동 180 일시급수보증금	422,730	
5	2000.8.3	석산운수	미아6동1266-279 일시급수보증금	210,954	
6	2000.8.3	세광기업	수유1동 486-523 일시급수보증금	531,420	
7	2000.8.3	덕은건설	수유4동 산20-9 일시급수보증금	530,370	
8	2000.8.3	이정운	창5동 698-1 일시급수보증금	424,830	
9	2000.8.3	한신공영	창2동 621-40 일시급수보증금	530,370	
10	2000.8.3	김동훈	쌍문2동 23-4 일시급수보증금	215,420	
11	2000.8.3	요진산업	쌍문2동 713 일시급수보증금	430,000	
12	2000.8.3	이연건설	중계본동 58-34외4 일시급수보증금	2,948,700	
13	2000.10.23	월드공영(주)	미아9동 258-421 일시급수보증금	531,420	
14	2001.1.9	일산공영(주)	창4동 808-1 일시급수보증금	386,000	
15	2001.3.28	효성(주)	방학3동 285-63 일시급수보증금	365,250	
16	2001.10.29	새롬종합건설(주)	중계1동 360-12 일시급수보증금	486,42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44호**  
**대부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고
2. 공고대상 : ‘스마일 머니’ 등 9개 업체(대상업체 명단 : 별첨)
3. 행정처분(등록취소)일자 : 2009. 6.18자
4. 공고내용
  - 가. 대부업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내지제6호 규정에 의하여 대부의 등록제한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하였으니 대부업 등록증을 서울시(금융도시담당관)에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아울러, 동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등록이 제한됩니다(동법제4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융도시담당관(☎02-3707-9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명단

(서울특별시 금융도시담당관)

연번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주소	등록취소일자	적용 법규
1	10808	스마일 머니	김종형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316	2009-06-18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2호
2	6417	오케이	엄기선	서울 강북구 수유동 398-2 태양연립 202호	2009-06-18	상동
3	11393	라이프머니	이명호	서울 광진구 모진동 227번지 KCC파크타운 509호	2009-06-18	상동
4	12668	디.에스 캐피탈	지용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89-1 우성그린APT 103-101	2009-06-18	상동
5	13052	영기획	박재열	서울 양천구 신월3동 203-20 해븐아파트 107-202	2009-06-18	상동
6	13596	해피콜	박종완	서울 강동구 길동 342-9 (201호)	2009-06-18	상동
7	13949	명신금융	최만호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19-37호	2009-06-18	상동
8	15135	차정희	차정희	서울 은평구 갈현동 355-38	2009-06-18	상동
9	9447	한영기획	최강무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8-15	2009-06-18	상동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47호**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수도권 개

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42-5 일원 중랑생태문화공원 등 4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1. 승인일자 : 2009년 6월 16일

2. 관리계획의 주요내용

일련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사업시행자	위치	형질변경 면적(m <sup>2</sup> )	건축 연면적 (m <sup>2</sup> )	비고
계	4건				33,141	13,420.4	
1	중랑생태문화공원	공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42-5 일원	18,141	508.4	
2	일자산도시자연공원	공원	강동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140 일원	15,000	457	대체녹지조성 1,856m <sup>2</sup>
3	거여초등학교	학교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108 일원	-	12,455	
4	암사정수장태양광 시설	전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3 일원	-	(공작물82,577)	

3. 열람장소

- 중랑생태문화공원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 거여 초등학교 :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 암사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위치도 :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49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	정비업종
서울자동차서비스	한정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3-9	종합검사-3	2009. 6.19.	자동차 소형정비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52호**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공모를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장

- 1. 신청자격 및 신청사업수
  - 신청자격

2. 지원사업 유형(2개분야 4개유형)

구 분	사 업 유 형	사 업 내 용
녹색성장	① 녹색성장 교육	- 지역지도자 교육, 녹색성장 확산 전파 * 교육주체는 응모단체(산해단체포함)가 해당되며, 교육대상은 지역지도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 등도 가능
경제살리기 국민운동	② 녹색생활운동 활성화	- 자전거이용 활성화(캠페인, 동호회 등) - 자원재활용 등 에너지절약의 생활화 - 친환경상품 사용, 녹색소비문화 확산 - 나무·숲가꾸기, 4대강 환경정화사업 등
	③ 기초질서 확립운동	- 교통 및 거리질서 지키기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 - 불법광고 정비, 화장실이용 선진화 등
	④ 공동체 나눔 운동	- 독거노인/ 소년가장/ 다문화가정 지원 - 사랑의 쌀 전달, 마을장학 사업 등

- 3. 지원규모 : 사업당 50,000천원 한도(단체당 80,000천원 한도)
- 4. 사업추진기간 : 2009. 8월 ~ 11월
- 5. 제출서류 (서울시 NGO협력센터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안내 자료

-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고 공익활동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범위 : 사업추진지역이 서울특별시인 경우
  - ※ 보조금 지원제한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신청사업수 : 1개 단체가 다수의 사업 유형에 공모신청 가능(각 사업유형별로 사업신청서 별도 작성 제출)

- 실」에 서식계재)
-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계획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비영리법인 허가증 및 세무서 발급 고

유번호증은 대상이 아님)

####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9. 6. 26(금) ~ 2009. 7. 9(목) 18:00까지

※ 마감일(2009. 7. 9)은 신청 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예상되니 조기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http://club.seoul.go.kr/ngo>) 접수

※ 인터넷 접수방법 : 서울시 NGO협력 센터(<http://club.seoul.go.kr/ngo>) 회원가입(기회원은 추가가입 불필요)  
→ 회원 로그인 → 화면 우측(녹색) 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접수

#### 7.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도,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및 '08년 공익활동실적, 예산의 타당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자치구 포함), 타시도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경우 심사제외

- 결과통보 : 2009년 7월 말(예정)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http://www.seoul.go.kr>) 또는 단체별 개별 통지

####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 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동 사업 보조금은 반드시 서울시 지정 체크카드를 발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9.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불법시위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 (☎731-6635~6)로 문의바람



# 구 고 시

## ◆ 중구고시 제2009-33호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2009-332호(2009.05.21)로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열람공고된 회현동1가 28-4번지일대(퇴계로)의 회현4-1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과 지하철4호선 회현역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에 대하여 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

### 1. 지하층연결로

사업위치	면적(㎡)	길이(m)	폭(m)	비 고
회현동1가 28-4번지 일대	332.54㎡	45.4	3.5~8.2	지하층연결로 - 332.5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주식회사 마커스홀딩스 대표이사 박종섭
-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3-3 지호빌딩 4층

라.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비고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09.12.31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따로 붙임

바. 법 제99조에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또는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내용중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에 관한 권리이전계획”과 같음.

사. 관련도서 : 게재생략

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중 구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8-4번지 외 1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지하도로)

2. 명 칭 : 회현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 지하층 연결로 설치를 위한 재산조사

□ 사업명 : 회현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공사

▶ 지하층연결로

연번	구 분	소 재 지	지목	지적	규 모			고저(m) (평균해수면)	재산관리 현 황
					면적	길이	폭		
	계			4,420.9	332.54	45.4	3.5 ~ 8.2	EL.+29.34 ~ EL.+42.03	
1	공공용지	중구 회현동1가 28-1	도	577.20	19.85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8-2	도	19.80	1.39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회현동 1가 31-13	도	301.20	13.41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93-3	도	172.10	50.17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93-4	도	932.00	7.37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92-1	도	620.40	32.00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93-1	도	185.10	76.66				국(건설교통부)
		중구 회현동 1가 194-69	도	1,077.70	0.22				국(건설교통부)
	계			3,885.50	201.07				
2	私有地	중구 회현동1가 28-4	대	83.20	18.64				마크스홀딩스
		중구 회현동1가 28-12	대	3.40	2.50				마크스홀딩스
		중구 회현동1가 28-13	대	150.00	0.32				마크스홀딩스
		중구 회현동1가 28-15	대	16.20	16.20				김동립
		중구 회현동1가 28-22	대	43.20	23.04				마크스홀딩스
		중구 회현동1가 28-23	대	95.00	65.45				마크스홀딩스
	계			391.00	126.15				
3	私有地	중구 회현동1가 190-1	대	13.20	5.32				서울메트로
	계			13.20	5.32				

- ※ 1. 지하층연결로 시설물(공공용지부분의 연결통로와 사유지부분의 연결통로 모두 포함)은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및 중구에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
2. 지하층연결부지중 사유지부분(회현동1가 28-15번지의 2필지 104.69㎡)에 대하여는 준공전 서울특별시 및 중구에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
3. 지하층연결부지중 사유지부분(회현동1가 28-4번지의 2필지 21.46㎡)의 토지는 준공전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완료(설정범위 : 중구 회현동1가 28-4번지(18.64㎡), 28-12번지(2.5㎡), 28-13번지(0.32㎡)에 위치한 평균해수면 EL+29.34m부터 EL+42.03m 사이)

◆ 성동구고시 제2009-40호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32호(2007. 9. 27)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7. 11. 1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 인가된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하였으므로,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택과(전화 : 2286-5607)와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화 : 2217-49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성 동 구 청 장

- 가. 사업명칭 :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 다. 구역면적 : 73,341.3㎡
- 라. 사업시행자 :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우열
- 마.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67-12
- 바.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013년 10월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 아. 건축계획
  - 주용도 : 아파트 8개동, 1,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임대아파트 1개동, 218세대 포함)
  - 건축면적 : 7,057.46㎡ (건폐율

: 11.60%)

- 연 면 적 : 231,651.08㎡ (용적률 : 249.86%)
-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 전용면적 60㎡이하 218세대(임대), 전용면적 85㎡이하 783세대, 전용면적 85㎡초과 250세대.
-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 공원(4,204.00㎡), 도로(8,280.00㎡) 무상귀속
- 차. 최고높이 : 116.80m
- 카. 관계도서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 광진구고시 제2009-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70호(1978.4.20)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되고, 광진구고시 제2000-60호(2000.12. 11)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부지)실시계획인가와 광진구고시 2004-4호(2004.1.30)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 되었으며, 광진구고시 제2005-67호(2005.10.6) 및 제2005-70호(2005.10.25)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등)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03번지 5호외 2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부서인 광진구 환경과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 열람 공고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환경과(☎450-780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광진구청장

- 가. 사업명칭 : 『청소년 기후변화 체험관』 건립  
나.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03-5외 2필지

-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라. 사업규모 : 토지 2,000㎡, 건물 1,000㎡ (연면적 3,75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2011.10.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광장동)	지목	시설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303-5	대	2,364	565		광진구			
2	303-12	전	1,080	1,080		광진구			
3	313-3	대	2,557	355		광진구			
계			6,001	2,000					

- 사. 위치도 및 건축개요 : “별첨”

- 아.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역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규모(㎡)			사업시행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광진구 광장동 303-5외 2필지	청소년 기후변화 체험관 건립	구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10,921	구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12,566	증 1,64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체육시설 부지면적 50,916㎡

[붙임 1]

**광장동 303-5호외 2필지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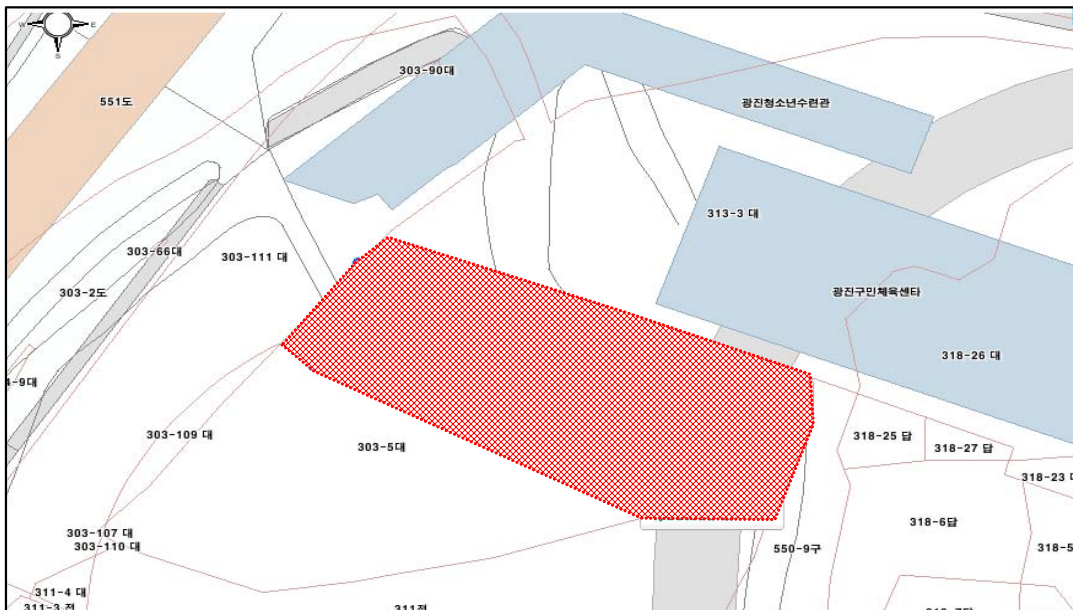
토지현황 : 청소년수련관(355㎡), 체육시설부지(1,645㎡)

연번	지 번	소유자	지 번 별 총면적(㎡)	체험관 면적(㎡)		비 고
				대지면적	건축면적	
1	광장동 313-3대	광진구	2,557	355	99	청소년수련관
2	광장동 303-12전	광진구	1,080	1,080	422	체육시설부지
3	광장동 303-5대	광진구	2,364	565	479	체육시설부지
합 계				2,000	1,000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 3층 (연면적 3,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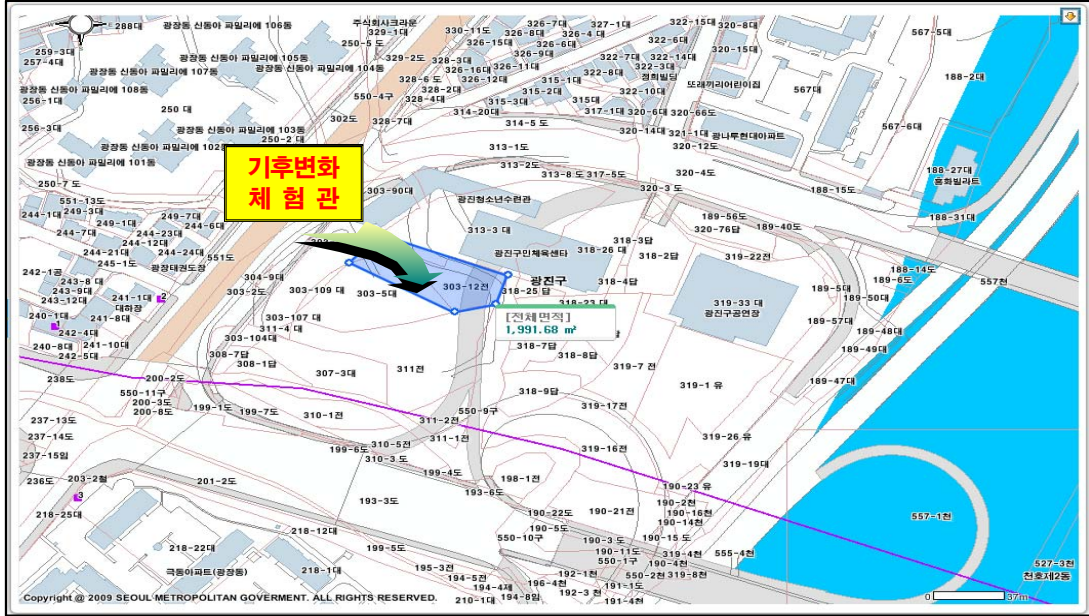
층 별	시 설 명	면적
옥 상	조형물, 옥상녹화, 태양광 · 풍력시설 설치	
지상 3층	체험관 [CO2 제로 청소년 헬스장, 체험전시물 등]	750㎡
지상 2층	홍보관 [신재생에너지시설 전시, 숙박시설 등]	1,000㎡
지상 1층	교육관 [청소년BIO 교실, 영상교육실, 세미나실, 실습실 등]	1,000㎡
지하 1층	빗물이용시설, 지열시스템, 연료전지 등	1,000㎡

지적도면 : 적색점선→ 대지면적(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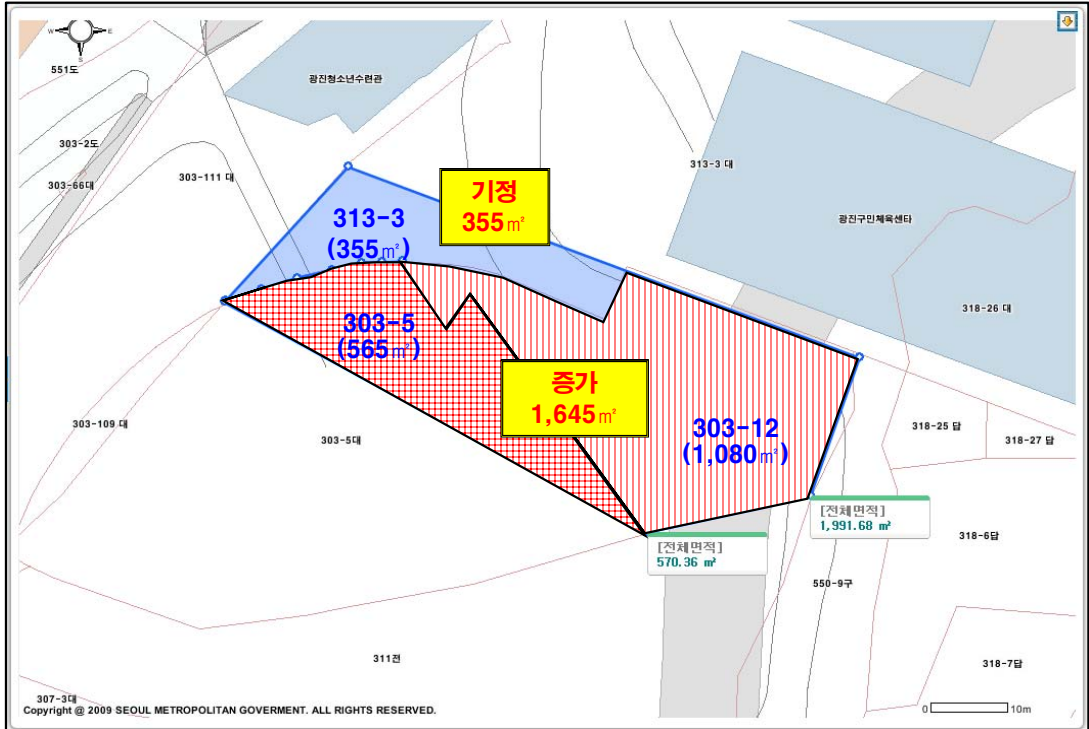


[붙임 1-1]

광장동 303-5외 2필지 위치도



▶ 사용(수용) 할 토지 : 광장동 313-3(기정), 303-12 · 303-5(증가)



**◆ 광진구고시 제2009-39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09-35(2009.5.28)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531(2009.5.28)호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한 광진구 중곡동 125-11외 1필지 “중곡 종합건강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 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행정과(☎ 450-1902, 담당자:신수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2) 사업의 명칭 : 중곡 종합건강센터 건립

나.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다. 사업규모

- 1)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25-11 외 1필지
- 2) 면적 : 750.8㎡
- 3) 내용 : 토지, 건물, 지장물 보상 및 도시계획시설 조성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10. 11.30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축물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보건행정과(☎ 450-1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중곡 종합건강센터 건립
- 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보건분소 등) 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의종류및내용	
1	중곡동	125-11	대지	329.6	329.6	대지	광진구						
2	중곡동	125-13	대지	421.2	421.2	대 지	조현로	중곡동 125-13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중곡 종합건강센터 건립
- 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보건분소 등) 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실제이용상 황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중곡동	125-11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566.98	사무실	광진구							
2	중곡동	125-13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연외조	905.81	주택	조원로	중곡동 125-13						
													참고 등	1식

**영 업 권 조 서**

- 사 업 명 : 중곡 종합건강센터 건립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보건분소 등) 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영업의 종류	상 호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종류 및 내역	
1	중곡동	125-13	육 외 광 고 업	태영광고	1식	조원모	중곡동 125-13				지상 1층		
	"	"	"	태영광고	1식							지하 1층	
2	"	"	마 트	립키마트	1식								지상 1층
3	"	"	진 기	영신진기	1식								지상 1층
4	"	"	일반음식점	오가고 숯불바베큐	1식							지상 1층	

◆ 노원구고시 제2009-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1.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08-44호(2008. 7.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 인가한 『노원구 공릉동 422-7~공릉동 산42』 도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09-23호(2009.6.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토목과(☎950-40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노 원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위치
  - 당초 : 노원구 공릉동422- 7~공릉동산42
  - 변경 : 노원구 공릉동422-14~공릉동산42-14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원자력병원 앞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 당초 : 도로개설 B=15m, L=410m
  - 변경 : 도로개설 B=12~15m, L=410m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사. 위치도 및 공공시설(도로)설치 계획도 : 노원구청 토목과에 비치
- 아. 고시방법 : 시보 게재
-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 (☎950-4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공릉동 422-14 ~ 공릉동 산42-14 일대(원자력병원 앞) 도로개설 공사

연번	기 정						변 경 후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소유자 지분	소유자 성명	주소	이해관계인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소유자 지분		소유자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노원구공 릉동산42 -11	임야	938	938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좌동	좌동				
2				884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노원 구공릉동 215-4					
3	노원구공 릉동 산42-12	임야	16	16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좌동	좌동				
4	노원구공 릉동 산42-13	임야	22	22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좌동	좌동				
5				18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연번	기 정										변 경 후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면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면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지분	성명					주소
6																					
7	노원구공 릉동 산42-14	임야	513	513																	
8																					
9	노원구공 릉동 산42-17	임야	1,180	1,180																	
10																					
11	노원구공 릉동 산42-18	임야	4	4																	

연번	기 정							변 경 후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12																		
13																		
14																		
15	노원구공 릉동 산43-7	임야	281	281				한국원 차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16																		
17	노원구공 릉동산43 -8	임야	111	111				한국원 차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연번	기 정										변 경 후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입 면적 (㎡)	관계인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8	노원구공 릉동 산43-9	임야	46	46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19																						
20																						
21																						
22	노원구공 릉동 산43-11	임야	183	183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23																						

연번	기 정										변 경 후						비고	
	소제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인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4	노원구공 릉동 산44-5	임야	167	167	한국원 자력연 구소	대진시 중구 터진동 150												
25				165														
26	노원구공 릉동산44 -7	임야	483	483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27				213														
28	노원구공 릉동 산37-9	임야	46	46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29				10														



연번	기 정										변 경 후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면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면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30	노원구공 릉동 산37-10	임야	108	108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0	좌동	좌동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31													65	임야	65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32	노원구공 릉동 422-14	도로	100	100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3													21	전	21	한국원 자력연 구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15-4				
34													37	학교 용지	37	국(교육 과학기술 술부)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1777-6				
35													49	학교 용지	49	국(교육 과학기술 술부)	서울시 중로구 세종로 1777-6				

연번	정										후						비고		
	기					이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36	노원구공 릉동215- 13	학교 용지	961	961	국(교육 과학기술 술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177-6													
37	노원구공 릉동 215-15	학교 용지	531	531	국(교육 과학기술 술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177-6													
38																			
39	노원구공 릉동 215-16	학교 용지	8	8	국(교육 과학기술 술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177-6													
40	노원구공 릉동 215-17	도로	45	45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01-1														
41																			



**◆ 은평구고시 제2009-36호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9-26(2009. 5.21)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9-546(2009. 5.28)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신사2동 복합청사 건립사업』과, 위 같은 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적승인되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대조동 청사 부속 시설 확충사업』 및 『역촌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주민자치과(☎351-630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면적 또는 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사업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 신사2동 복합청사 건립	신사2동 163-13호 외 7필지	부지 3,576㎡, 건물 2,190㎡ - 공공청사 : 부지676.8㎡, 건물 1,200㎡ - 사회복지시설 : 부지 1,015.2㎡, 건물 990㎡ - 공공공지 : 부지 1,884㎡	인가일로부터 2년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 대조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대조동 214-44호 외 1필지	부지 132.4㎡ - 주차장 및 주민쉼터 조성	인가일로부터 2년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 역촌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역촌동 62-27호	부지 393.1㎡ - 주차장 및 주민쉼터 조성	인가일로부터 2년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 청길8 (녹번동 84)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의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명 : 신사2동 복합청사 건립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종류	
계	8필지		3,576	3,576						
1	은평구 신사동 산104	임	3,174	3,174	임광수	용신구 후암동 55-11				
2	은평구 신사동 163-13	대	192	192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3	은평구 신사동 163-15	대	30	30	문병곤	경기 김포시 북변동 812 풍년마을226-201	(주)남양상호신 용금고	구리시 수택동 409-2	근저당 지상권	
4	은평구 신사동 163-16	대	36	36	김종철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7-1 대우아파트101-1001	(주)남양상호신 용금고	구리시 수택동 409-2	근저당	
5	은평구 신사동 163-17	도	30	30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6	은평구 신사동 163-22	대	67	67	문병곤	경기 김포시 북변동 812 풍년마을226-201	(주)남양상호신 용금고	구리시 수택동 409-2	근저당 지상권	
7	은평구 신사동 163-23	대	30	30	김종철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7-1 대우아파트101-1001	은평구 (주)남양상호신 용금고	은평구 녹번동 84 구리시 수택동 409-2	압류 근저당	
8	은평구 신사동 163-24	구	11	11	나경주	은평구 신사동 345-2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명 : 대조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계	2필지		132.4	132.4						
1	은평구 대조동 214-44	대	70.7	70.7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2	은평구 대조동 214-50	대	61.7	61.7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명 : 역촌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계	1필지		393.1	393.1						
1	은평구 역촌동 62-27	대	393.1	393.1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 건 물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 명 : 신사2동 복합청사 건립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계		2동		1,092.3								
1	은평구 신사동 163-13	건물	철근콘크리트	322.56	주택 집포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2	은평구 신사동 163-16 외	건물	-	97	사무실 창고	문병곤	경기 김포시 북변동 812 풍년마을 226-201					무허가건물

※ 무허가 건물(연번 2번)과 관련된 내용은 향후 보상과정에 있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 명 : 대조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계		1동		212.76								
1	은평구 대조동 214-44 외 1필	건물	연와조/평스라브	212.76	주택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명 : 역촌동 청사 부속시설 확충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동		1,082.3							
1	은평구 역촌동 62-27	건물	세멘 벼돌조	288.92	주택 근생	은평구	은평구 녹번동 84				



◆ 서대문구고시 제2009-55호  
**홍은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220호(2003.7.30)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84호(2004.9.10)로 변경 지정된 홍은동 177번지 일대 홍은제10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

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 월 25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제10주택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홍은제10주택재개발구역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77번지 일대	15,458	증)20.2	15,478.2	측량에 따른 변경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 <sup>2</sup>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5,458.0	증)20.2	15,478.2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3,041.0	감)34.9	3,006.1	19.42	
	도로	1784.0	감)39.9	1744.1	11.27	
	공원	510.0	증)10.4	520.4	3.36	
	녹지	747.0	감)5.4	741.6	4.79	
택지	소 계	12,417.0	증)55.1	12,472.1	80.58	
	택지 1	6,549.0	증)34.1	6,583.1	42.53	
	택지 2	4,261.0	증)2.5	4,263.5	27.55	
	택지 3	1,607.0	증)18.5	1,625.5	10.50	임대 아파트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1	8m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5.0	홍은동 164-44	홍은동 179-8	-	-	
변경	소로	2	1	8m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5.0	홍은동 164-44	홍은동 179-8	-	-	근소한 위치변경
기정	소로	3	2	6m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6.0	홍은동 179-8	홍은동 173-18	-	-	
변경	소로	3	2	6m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9.9	홍은동 179-8	홍은동 173-18	-	-	측량결과에 따른변경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공원	근린공원	홍은동 179-2 일대	510	520.4	증 10.4	
	녹지		홍은동 164-45 일대	410	401.1	감 8.9	
	녹지		홍은동 161-2 일대	217	227.6	증 10.6	
	녹지		홍은동 174-1 일대	120	112.9	감 7.1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명칭	면적 (m <sup>2</sup> )	명칭	면적(m <sup>2</sup> )							
				기정	증·감						변경
변경	홍은 제10 구역	기정 15,458 → 변경 15,478.2	택지1	6,549	증)34.1	6,583.1	홍은동 177번지 일대	공동주택 (아파트)	20 이하	220 이하	125m이하 (9~20층 이하)
			택지2	4,261	증)2.5	4,263.5					
			택지3	1,607	증)18.5	1,625.5	홍은동 173-17번지 일대	임대 아파트	20 이하	150 이하	90m이하 (8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15m<sup>2</sup>이하</li> <li>○ 전용면적 85m<sup>2</sup>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li> <li>○ 전용면적 60m<sup>2</sup>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40% 이상</li> </ul>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 관련 법규에 의함								

- 바. 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없음
- 사.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변경없음
- 자. 변경사유 : 측량 결과에 따른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정비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등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차. 지형도면의 작성  
서대문구 재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카.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대문구 재개발과(☎02)330-194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구로구고시 제2009-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 외 27필지상(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Ⅱ블럭(대성연탄부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변경내용:공원명칭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구 로 구 청 장

1. 사업의명칭 : 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Ⅱ블럭(대성연탄부지)신축공사(대성 디큐브시티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주)대성산업 대표 정광우, 김영대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5-2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구로구 신도림동 360-51외 27 필지  
나. 사업부지면적 : 35,228.0㎡(대지면적 : 25,651.0㎡)  
다. 연면적 : 350,054.75㎡  
라. 규모 : 주택부분(A,A')- 지하8층 지상 51층 524세대, 120,062.81㎡ 복합시설부분(B)(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 지하 8층 지상 42층, 229,992.34㎡  
마. 용적률 : 749.72%
4.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월 ~ 2011년 04월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주요내용(※상세내용은 설계도서 참조)

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대지면적	변경없음	변경없음	
비주거동	○ 타워형	○ 타워형 판매 및 문화집회시설 (수직 동선 체계변경, 코아 변경 등)	
규모	지하8층, 지상51층(공동주택), 42층(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지하8층, 지상51층(공동주택), 42층(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건축면적	14,596.20㎡	14,596.20㎡	변동없음
건폐율	56.90%	56.90%	변동없음
연면적	350,055.15㎡	350,054.75㎡	▽0.4㎡ 감소
용적율	749.71%	749.72%	△0.01% 증가
조경면적	3,961.46㎡(15.44%)	3,961.46㎡(15.44%)	변동없음
주차대수	2,566대	2,532대	▽34대 감소

6.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공원	소공원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3,655	최초고시 서고제2006-157호(2006.5.4)	
변경	공원	문화공원	구로구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3,655		소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 나. 기타 :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07-14호(2007.3.7)) 및 구로구고시 제2008-49호(2008.7.16) 고시한 내용과 같음
7. 지형도면의 작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 및 열람
8. 기타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도서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는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전화번호 : 860-2941)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구로구고시 제2009-5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와룡소공원)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9호(2005.12.29.)로 도시관리계획(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2호(2008.7.3)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구로구고시 제2008-55호(2008.8.2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9-13호(2009.2.20)로 지형도면(변경)승인되고,
2. 구로구고시 제2009-31호(2009.4.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결정되고, 구로구공고 제2009-440호(2009.6.4)로 도시

- 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된 서울특별시 온수동 129번지 일대 와룡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푸른도시과(☎860~232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구 로 구 청 장

1.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온수동 129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와룡소공원  
 다. 사업의 면적 : 2,500㎡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 명 :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141번지 일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  
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이용 사항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의 권리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은수동 124	임야	8,660.5	795.24	노인정외	구로구	공유지				
2	은수동 142	대	1,124.8	542.74	대지	공유자전원지분전 부대지권	166동, 167동, 168동, 169동, 170동				
3	은수동 143	대	1,239.3	826.95	대지	서울시	은수동산12번지 172-101	서울시	172동, 101호건물	근저당설정	
						임태식	171동, 172동, 173동, 174동, 175동, 176동	국 (서울남부원호지청)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독산복지점)	175동, 202호건물 서울중구충정로1가길	근저당설정	
4	은수동 144	도로	15,169.6	720.74	도로	서울시	공유지				
5	은수동 145	대	2,015.1	314.33	대지	공유자전원 지분전부대지권	177동, 178동, 179동, 180동, 181동, 182동, 183동, 184동, 185동	국 (서울남부원호지청)	184동1층2호	근저당설정	
						서울시	183동2층1호건물	근저당설정			

◆ 구로구고시 제2009-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갈매소공원)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9호(2005.12.29.)로 도시관리계획(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22호(2008.7.3)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구로구고시 제2008-55호(2008.8.28)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9-13호(2009.2.20)로 지형도면(변경)승인되고,
2. 구로구고시 제2009-31호(2009.4.2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결정되고, 구로구공고 제2009-439호(2009.6.4)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된 서울특별시 온수동 142번지 일대 갈매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푸른도시과(☎860~232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구 로 구 청 장

1.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구로구 온수동 142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갈매소공원
  - 다. 사업의 면적 : 3,200㎡
  -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 명 :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141번지 일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지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이용 사항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 의 권리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온수동 124	임야	8,660.5	795.24	노인경외	구로구	공유지				
2	온수동 142	대	1,124.8	542.74	대지	공유자전원지분 전부대지권	166동, 167동, 168동, 169동, 170동				
3	온수동 143	대	1,239.3	826.95	대지	서울시 임태식	서울시 온수동산12번 지 172-101	서울시	172동, 101호건물	근저당설정	
4	온수동 144	도로	15,169.6	720.74	도로	서울시	공유지	국 (서울남부원호지청) 농협동조합중양회 (독산부지점)	175동, 202호건물 서울중구충정로177 5	근저당설정 근저당설정	
5	온수동 145	대	2,015.1	314.33	대지	공유자전원 지분전부대지권	177동, 178동, 179동, 180동, 181동, 182동, 183동, 184동, 185동	국 (서울남부원호지청)	184동1층2호	근저당설정	
								서울시	183동2층1호건물	근저당설정	



◆ 구로구고시 제2009-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жат절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465(1971.08.06)호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1 (1999.01.15)호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구로구 공고 제2008-365(2008.07.17)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жат절지구)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08-74(2008.10.30)호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08-86(2008.11.2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09-28(2009.04.0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09-41(2009. 05.07)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жат절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한 구로구 개봉동 46-2번지 일대 토지의 지장물 분묘 추가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жат절지구)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구 로 구 청 장

1.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구로구 개봉동 46-2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온수도시자연공원(жат절지구)조성
    -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
  - 다. 사업의 면적 : 총 87,903㎡중 42,504㎡
  -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사업대행자
  - 성 명 :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 340(구로본동 435)
- 마.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사. 사용·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42,504	42,504							
1	변경없음	개봉동 46-2	답	2,412	2,412	서울시 서울특별시 31번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기매수
2	변경없음	개봉동 46-4	답	420	420	서울시 서울특별시 31번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기매수
3	변경없음	개봉동 46-5	답	804	804	서울시 서울특별시 31번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기매수
4	변경없음	개봉동 46-17	답	640	640	서울시 서울특별시 31번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기매수
5	변경없음	개봉동 45-2	전	112	112	서울시 서울특별시 31번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기매수
6	변경없음	개봉동 46-3	답	933	933	서울시 서울특별시 31번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기매수
7	변경없음	공동 산10-53	임	9,530	9,530	서울시 서울특별시 31번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기매수
8	변경없음	공동 산10-51	임	7,625	7,625	서울시 서울특별시 31번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기매수
9	변경없음	개봉동 산2-64	임	860	860	서울시 서울특별시 31번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기매수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의 관리명세	
10	변경없음	개봉동 산2-48	임	204	20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기매수
11	변경없음	개봉동 산2-55	임	188	188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기매수
12	변경없음	개봉동 산2-56	임	105	10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기매수
13	변경없음	개봉동 산2-57	임	371	37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기매수
14	변경없음	개봉동 산2-59	임	9,819	9,819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기매수
15	변경없음	개봉동 산2-62	임	3,597	3,597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기매수
16	변경없음	개봉동 산2-65	임	2,500	2,500	용필순	서울 종로구 청운동 89-2 보림빌라 401호	연일기계 (주)	대구 달서구 월암동 914-8	가압류	개봉동 산2-15번지 에서 토지분할
								곽현테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9-8 남 동공단 2단지 16블럭 9롯데	가압류	
								함영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34-31	가처분	
								주식회사서어진 철강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22	가압류	
								주식회사동양 상호신용금고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1-6	가압류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명세		
16	변경없음	개봉동 산2-65	임	2,500	2,500	용필순	서울 종로구 청운동 89-2 보림빌라 401호	김승민	서울 구로구 개봉동 18-15	김명학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663-1 광아하이츠 가동 302호	가처분
								서울특별시(세무운영과)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압류		
								기술신용보증 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가압류		
								박진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82-3	가압류		
								신인철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07-4	가압류		
								광산김씨침의 공증관계인과 중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710호	가처분		
								종로세무서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압류		
								구로구 (세무1과)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압류		
								신인철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07-4	근저당권설정		
								도무상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94 문래동 현대홈타운(아) 113-1901	근저당권설정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관리명세	
16	변경없음	개봉동 산2-65	임	2,500	2,500	용필순	서울 종로구 청운동 89-2 보림빌라 401호	김원철	서울 강동구 둔촌동 85-2 삼 익빌라 2동 302호	근저당권설정	개봉동 산2-47면지 에서 토지분할
								구양모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 현대홈타운 5단지 501 동 2406호	근저당권설정	
								박중순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379-33 이화아파트 2-203	근저당권설정	
								박진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A동 2305호	근저당권설정	
17	변경없음	개봉동 산2-66	임	2,384	2,384	조성근	서울 서울 강서구 화곡동 391-63 미성빌라 3층 301호				
						이우용	서울 송파구 마천동 136-14				
						김생기	서울 강서구 등촌동 701 미주아파 트 105-703				

지장물 조서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물건의종류	내 용	편입내역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4,569㎡ (37기)						
1	변경없음	개봉동 46-2	답	영농	미나리밭	2,412㎡	최병춘	양천구 신정3동 1258 신트리@ 204동 1309호				
2	변경없음	개봉동 46-3	답	영농	미나리밭	933㎡	최병춘	양천구 신정3동 1258 신트리@ 204동 1309호				
3	변경없음	개봉동 46-4	답	영농	농작물경작	420㎡	최병춘	양천구 신정3동 1258 신트리@ 204동 1309호				
4	변경없음	개봉동 46-5	답	영농	농작물경작	804㎡	최병춘	양천구 신정3동 1258 신트리@ 204동 1309호				
5	추가	개봉동 산2-65		묘지	유연분묘	3기	김범수	구로구 개봉1동 108-13				

◆ **동작구고시 제2009-26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39호(2007.7.19)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된 “흑석동 2-27~2-8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같은법 제13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변경인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인 동작구청 토목과 (☎820-9904)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물건, 영업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동 작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흑석동 2-27~2-8간(변동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변동없음)
- 다. 사업명 : 흑석동 한강로변 도로개설공사(변동없음)
- 라. 면적 또는 규모 : B=6m, L=135m(변동없음)
-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작구 장승배기길16)
-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동내역별첨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 사업의 종류 : 흑석동 한강로변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의명세	
1~6	당초										
	변경										
연번 1~6번 변경사항없음											
7	당초	-	-	-	-	-	-	-	-	-	-
	변경	흑석동 2-34	공	3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	당초	-	-	-	-	-	-	-	-	-	-
	변경	흑석동 7-8	학	4	4	서울특별시 교육감	종로구 신문로2가 2-77				보상 추가



###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 사업의 종류 : 흑석동 한강로변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소유권이의 권리의명세	성 명	
1~3	당초	연번 1~3 변경사항없음									
	변경										

###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16
- 사업의 종류 : 흑석동 한강로변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 분	지 번	물건의 종류	상 호	수 량	영업권의 종류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2	당초	연번 1~2 변경사항없음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09-6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5호 도시  
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가 신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  
조 규정에 따라 서류의 공람공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25일  
광진구청장

1. 사업시행지 : 광진구 자양로 193(자양동 680-6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 2) 사업의 명칭 : 동서울 우15편집중국 건립공사(증축)
3. 사업의 규모
  - 1) 사업시행면적 : 44,726.41㎡
  - 2) 사업내역
    - 기존 규모 : 지하2층/지상3층, 56,142.87㎡
    - 증축후 규모 : 지하2층/지상4층, 71,491.25㎡(증축면적 : 15,348.38㎡)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국)지식경제부의 대리인 우정

1. 재열람 공고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양재대로 변경내용 추가	•사업지 연결 양재대로 일부구간 확폭 (50m → 55m)	서울시 의견 반영

- 사업조달사무소장
- 2)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년월일 : 2009. 03.
    - 2) 준공예정일 : 2011. 06. 30.
  6. 위치도 및 인가도면 : 광진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해당사항없음
  8. 공람공고 기간 : 2009.06.22. ~ 2009.07.12.
  9. 공고방법 : 시보 및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
  10. 관계도서 : 생략
    - ※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건축과(☎450-7723)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기간내 열람이 가능하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09-540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재열람**

서초구 양재동225번지의 6필지 한국트럭 터미널 복합화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처리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유통업무설비, 도로, 녹지)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 초 구 청 장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녹지면적 표기 착오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 기 결정면적 정정 (21,170㎡ → 21,016㎡)</li> <li>• 녹지 금회 결정면적 정정 (21,229㎡ → 21,033㎡)</li> </ul>	양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녹지면적 착오 정정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시설 명칭 변경 (화물터미널 → 물류터미널)</li> </ul>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

2.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28	50	주 간 선 도로	13,000 (1,648)	천호동 광6	과천시계	일반도로		87.06.09 (서고406)	양재대로 일부구간 도로확폭
변경	광로	1	28	50	주 간 선 도로	13,000 (1,648)	천호동 광6	과천시계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	35	집산 도로	380	양재동 222 광1-28	양재동 224 지구계	일반 도로	화 물 터미널	01.09.22 (서초구 고시312)	시도
변경	광로	3	-	41 ~ 47	집산 도로	380	양재동 222 광1-28	양재동 224 지구계	일반 도로	화 물 터미널		

※ 주) ( )내는 양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 변경결정 사유서

변 경 전 도로명	변 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1-28	광로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재대로 일부구간 폭원 확장 - B : 50m → 55m</li> <li>- L : 변경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영향평가상의 양재대로 지하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대상지 연결구간 일부 도로 폭원 확장(안화차선 설치)</li> </ul>
대로 1-	광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릉로 연결도로 폭원 확장 - B : 35m → 41~47m</li> <li>- L : 변경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영향평가상의 현릉로 연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현릉로 연결도로 폭원을 확장</li> </ul>

## 나. 공간시설

## 1) 녹지

## ○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③	녹 지	완충 녹지	양재대로변	21,016	증)18	21,034 (1,069)	-	위치이동 및 면적증가

※ ( )는 사업대상지내 면적임

## ○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③	완충녹지 (양재대로변)	• 위치이동 및 면적증가 - 증) 18㎡	• 교통영향평가상의 양재대로 확폭 계획에 따른 완충녹지 의 위치이동 및 면적증가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1)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세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유통 업무 설비	-	서초구 양재동 214번지일대	340,261.28	감)10,014.90	330,246.38	841.9 (건고1호)	

## ○ 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유통업무설비	• 유통업무설비 전체 면적 변경 - 340,261.28㎡ → 330,246.38㎡ 감) 10,014.90㎡	• 양재동225외6필지(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에 연결한 도로 확폭 및 녹지 추가 확보로 전체 유통업무설비의 면적 감소

○ 양재동 유통업무설비 전체 세부시설조성계획 조서

구분	시설명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유통 업무 설비	사무소	양재동 214	15,355.20	-	15,355.20		
		대규모점포 (도매센터, 대형점), 집배송시설	양재동 215	28,972.30	-	28,972.30		
		간이주유소	양재동 216외1	8,151.90	-	8,151.90		
		화물터미널	양재동 217-7외2	3,768.50	-	3,768.50		
		자동차매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자동차 경매장	양재동 217외3	12,858.90	-	12,858.90		
		대규모 점포	양재동 217-6	9,598.50	-	9,598.50		
		집배송시설	양재동 222외1	17,477.20	-	17,477.20		
		도매시장	양재동 223외1	32,803.00	-	32,803.00		
		화물자동차정류장	양재동 224	10,342.70	-	10,342.70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양재동 225외6	96,017.40	감)10,014.90	86,002.50		금회 변경
		생활물자저장소	양재동 229외2	17,539.30	-	17,539.30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양재동 230외2	64,438.40	-	64,438.40		
		자동차매매업 및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양재동 231	22,937.98	-	22,937.98		

2) 금회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조서

○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조서

구분	도시 계획 시설	위 치	면 적 (㎡)	세부시설	건축규모			비 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유통 업무 설비	양재동 225외 6필지	96,017.40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60% 이하	400% 이하	해발190m 이하 (단,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 제한 적용)	서울특별시 고시 2006-168호
			대지 : 89,834.4㎡ 도로 : 6,183.0㎡					
변경	유통 업무 설비	양재동 225외 6필지	86,002.50	물류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60% 이하	400% 이하	해발190m 이하 (단,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 제한 적용)	-

##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유통업무설비 면적 변경 - 96,017.40㎡ → 86,002.50㎡ - 감)10,014.90㎡ ○세부시설명칭변경 - 화물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 물류터미널, 대규모점포, 창고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도로 확폭 및 녹지 추가 확보 면적을 유통업무 설비 면적에서 제척 - 전체 10,014.90㎡(도로 : 8,945.90㎡, 녹지 : 1,069.00㎡)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세부시설 명칭을 화물터미널에서 물류터미널로 변경

3.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02-2155-6784)
  -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제2동주민센터(☎02-2155-7871)
5.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6.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9-9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주)씨앤한강랜드 대표 임종정
3. 점용자의 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4. 점 용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19
5. 점 용 척 수 : 동력보트 2척(잠실2척)
6. 점 용 목 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7. 점 용 기 간 : 2009. 6. 16. ~ 2009.10.31.

**사업소공고**

◆ **광진소방서공고 제2009-34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소방시설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광진소방서장

업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제광진2009-14호 (2009.6.16)	주식회사 성지이앤씨 (110111-2652455)	김진환 (1962.11.03)	서울 광진구 광장동 247, 2층	02-2201-560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02-452-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소방서공고 제2009-26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강남소방서장

○ 등록대상

업종 (등급및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공사감 리업	제강남2009-12호 (2009.06.22)	주식회사 진전기엔지니어링 (110111-1253741)	정순봉 (361210-1*****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1-4 민서빌딩 3층	501-7855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568-11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09-16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

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송파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제서울송파 2009-3호	소방시설관리업	주식회사 일일구마스터방재	선영희 (650610-2*****)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97-42 에프엠빌딩 1층	2009.6.16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02-431-4105)로 연락바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09-18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송 파 소 방 서 장

업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제송파2009-10호 (2009.06.22)	주식회사 다인파워텍 (110111-4054097)	김도윤 (70.12.10)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6-5 (201호)	(02) 417-3961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02-431-4109)로 연락바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09-19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

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송 파 소 방 서 장

업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전기)	제송파2009-11호 (2009.06.22)	주식회사 아우딘엔지니어링 (110111-2004218)	김지호 (62.03.11)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5-20	(02) 3431-7086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02-431-4109)로 연락바랍니다.

## 정 정

### ◆ 정 정

서울시보 제2914호(2009. 6. 18) 113쪽 중랑구 고시 제2009-24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공용지, 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좌측 1~3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전	정정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120번지 및 신내동 278-8일 대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동 120번지 및 신내동 278-8일 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